



F T A 저작권

FREE TRADE AGREEMENT

내 용 해설서

해외저작권센터 연락처

중국 북경사무소

주소 | Korea Copyright Commission Beijing Office
4F, Korea Center, No 1, Guanghuaxi Li, Guanghua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20
北京市朝陽區光華路光華西里1號 韓國文化院

전화 | + 86-10-6501-5437, 5737

팩스 | + 86-10-6501-7137

태국 방콕사무소

주소 | Korea Copyright Commission Bangkok Office
Unit No 3803, 38th Floor, The Offices at Central World, 999/9 Rama 1 Rd., Patumwan,
Bangkok 10330, Thailand

전화 | + 66-2-613-1722

팩스 | + 66-2-613-1724

필리핀 마닐라사무소

주소 | Korea Copyright Commission Manila Office
12/F New Jaka Building, 6780 Ayala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전화 | + 63-2-804-2441

팩스 | + 63-2-846-6383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주소 |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noi Office
17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 | + 84-24-3232-3586

F T A 저작권

FREE TRADE AGREEMENT

내 용 해설서



차례

 우리나라 FTA의 저작권 내용 요약표 02

 일러두기 05

01 저작권과 FTA   

008 저작권이란?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 저작권이란?
- 저작권의 특징
- 콘텐츠 활용과 저작권의 관계

011 FTA란?

- FTA 개념
- FTA와 국내법의 관계
- FTA의 일반적 구성
- FTA 추진 및 체결현황

020 저작권과 FTA의 관계

- FTA를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
- 저작권 무역수지 변화

02 우리나라 FTA의 저작권 조항 내용

024
I. 미국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088
II. 유럽연합(EU)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138
III. 칠레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162
IV. 싱가포르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184
V.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194
VI. 인도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204
VII. 페루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220
VIII. 터키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248
IX. 콜롬비아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286 X. 호주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326 XI. 캐나다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370 XII. 뉴질랜드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388 XIII. 중국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426 XIV. 베트남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일러두기

- 이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를 FTA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대신에 TRIPS로 약칭한다.
- 국문 협정문마다 같은 의미를 두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해설에서는 국문 협정문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 용어를 좇아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한다.
- 달리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FTA 관련 각종 정보(협상 경과, 채택일, 발효일 등)는 우리나라 FTA 공식 홈페이지(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에 나온 것을 따랐다.
- 협정문은 FTA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국문본과 영문본)을 인용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일부 문장이나 구절을 생략하기도 한다. 협정문 각주, 저작권 이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 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 해설은 2019년 9월 말 기준 발효한 15개의 FTA 중 아세안과의 FTA를 제외한 14개를 대상으로 한다. 아세안과의 FTA에는 지식재산권을 경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이 해설에서 다룰 만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FTA는 대부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조문상 표현과 구절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FTA에서는 다른 FTA 규정 해설을 참조하도록 한다.
- FTA는 거의 대부분 양 당사자가 모두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해설에서는 독자의 관점에서, 즉 상대방의 의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본문에서는 이를 "차례는 ... 해야 한다."는 형식의 문장 등으로 표현된다. 이런 문장은 해당 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관련 의무를 국내법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자 주: '우리나라 FTA의 저작권 조항 내용'은 개인 저술로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 해설은 내용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내용상 오류가 있거나 오해할 만한 표현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 새로운 협상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협정문에 그 결과를 담았다. 협상 주역들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01



저작권과 FTA



01 저작권이란?



01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이외 것으로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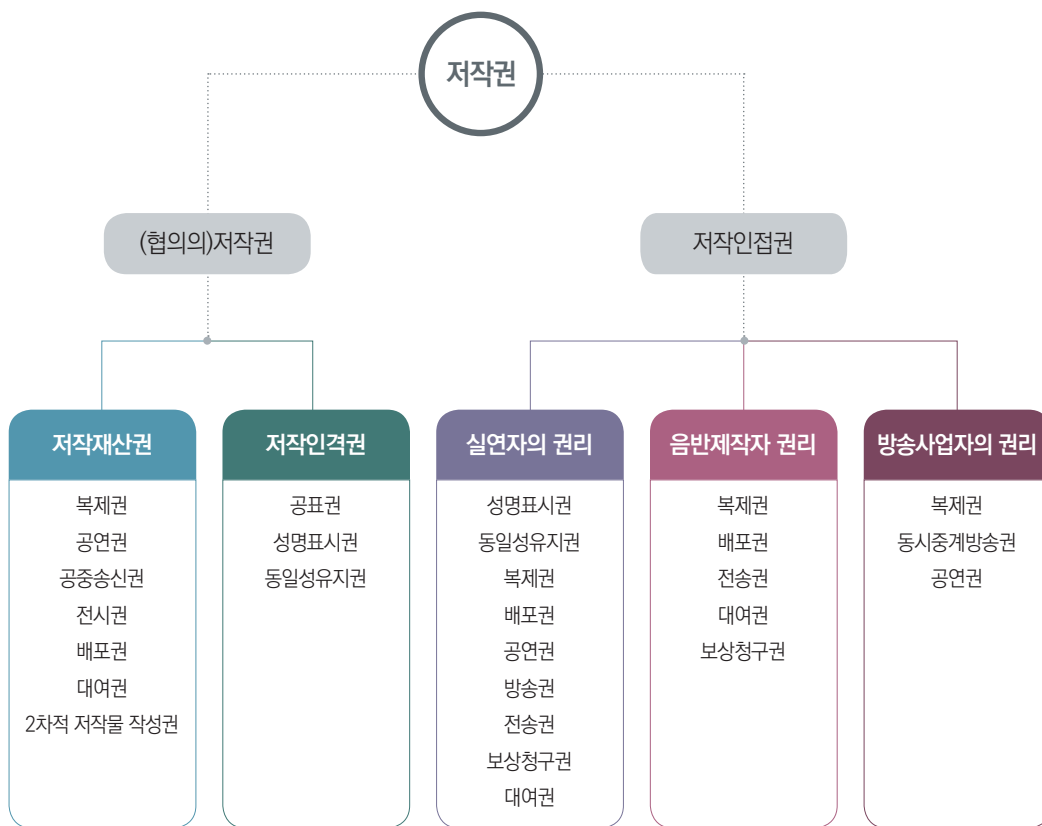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별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에는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02 저작권이란?

저작물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그리고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세부적인 권리들로 구분된다.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재산권과 구분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이 존재한다.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자기가 쓴 소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다.

저작권도 제한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이러한 콘텐츠는 각종 매체가 최종 소비자(end user)에게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콘텐츠가 제작, 유통, 이용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문제이다.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고 콘텐츠 활용을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필수적이다.

02 FTA란?



01 FTA 개념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다. 현재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로 국가와 국제기구만이 인정된다. 조약의 명칭은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 헌장(charter), 규약(statute) 등 다양하며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조약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그런데 조약은 명칭이 무엇이든지 국제법적 효력은 동일하다.

FTA는 협정(agreement)에 속하는 조약으로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서로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TA는 WTO협정과 같이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FTA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체결 당사국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간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주요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02 FTA와 국내법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FTA는 국회의 동의를 통해 승인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FTA 협정문은 체결 국가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상품무역

상품 챗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비스

서비스 챗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며,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한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챗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한다.

■ 투자

투자 챗터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는 양허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 무역구제

무역구제 챗터는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챗터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협정문과 함께 HS코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원산지 절차 및 통관

원산지 절차와 관세행정 관련 챗터로 이루어지며,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관과 무역원활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TBT 챗터는 양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SPS

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FTA에서는 무역자유화 촉진이라는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따라, SPS 조치 관련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국관계의 맥락에서 SPS 조치가 무역 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된다.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챗터는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충실하게 구성된 지재권 챗터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세계 각국 GDP의 약 10-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이러한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개방은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FTA에서의 정부조달 협정은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한 조건과 규칙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이다. 정부조달 협정은 보통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의 준수의무를 다루는 협정문 부분과 시장개방 대상과 개방 하한금액을 명시하는 양허표로 구성된다.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챗터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 (예, 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한다.

■ 경쟁

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정책이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FTA의 체결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분야이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관련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 노동

노동 챕터는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메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 환경

환경챕터는 협정 당사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 환경협의회 설치, 대중참여 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 경제협력

경제협력 챕터는 FTA 협정 당사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개도국과의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경제협력의 범위·방법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경제협력 챕터에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

■ 분쟁해결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당사국간 협의, 패널 판정, 판정 이행의 순서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협정문 내 모든 챕터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대상이며, 분쟁해결절차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 해당 챕터의 말미에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 총칙 : 최초조항 / 최종조항 / 제도조항 / 투명성 / 예외

협정 전체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챕터로서, 통상 최초조항 챕터는 목적·다른 협정과의 관계·정의, 최종조항 챕터는 개정·발효·탈퇴 및 해지, 제도조항 챕터는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투명성 챕터는 공표·정보교환·행정절차, 예외 챕터는 일반예외·안보예외·과세예외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04 FTA 추진 및 체결현황

2019년 10월기준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칠레	1999. 12. 협상 개시 2003. 02. 서명 2004. 04.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 01. 협상 개시 2005. 08. 서명 2006. 03. 발효	ASEAN 시장 교두보
	EFTA (4개국)	2005. 01. 협상 개시 2005. 12. 서명 2006. 09. 발효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 시장 교두보
	아세안 (10개국)	2005. 02. 협상 개시 2006. 08. 상품 무역 협정 서명, 2007. 06. 발효 2007. 11. 서비스 협정 서명, 2009. 05. 발효 2009. 06. 투자 협정 서명, 2009. 09. 발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2006. 03. 협상 개시 2009. 08. 서명 2010. 01. 발효	BRICs국가, 거대 시장
	미국	2006. 06. 협상 개시 2007. 06. 서명 2010. 12. 추가 협상 타결 2011. 02. 추가 협상 서명 2012. 03. 발효 2018. 12.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9. 01. 01. 개정의정서 발효	거대 선진 경제권
	유럽연합 (28개국)	2007. 05. 협상 개시 2010. 10. 서명 2011. 07. 잠정 발효 *지재권 집행 조항 미발효 2015. 12. 13. 전체 발효	세계 최대 경제권 (2015년 GDP 기준)
	페루	2009. 03. 협상 개시 2011. 03. 서명 2011. 08. 발효	자원 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터키	2010. 04. 협상 개시 2012년 3월 가서명 2012. 08. 정식 서명 2013. 05.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 발효 2018. 08. 서비스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발효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 05. 한-호주 FTA 협상 개시 선언 2009. 05.~2013. 12. 총 7차례 협상 2013. 12. 04. 협상 타결 선언 2014. 02.10. 가서명 2014. 04. 08. 공식서명 2014. 12. 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12. 12. 발효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의 주요 시장
	캐나다	2005. 07. 협상 개시 선언 2005. 07.~2013. 11. 총 14차례 협상 2014. 03. 11. 협상타결 선언 2014. 06. 12. 가서명 2014. 09. 23. 정식서명 2014. 12. 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 01. 01. 발효	북미 선진 시장
	중국	2007. 03.~2010. 05.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 2012. 05. 02. 협상 개시 선언 2012. 05.~2014. 11. 총 14차례 협상 개최 2014. 11. 10. 협상타결 선언 2015. 02. 25. 가서명 2015. 06. 01. 정식서명 2015. 08. 31.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2015. 11. 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 12. 20. 발효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 (2015년 기준)
	뉴질랜드	2007. 02.~2008. 03.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2009. 06.~2010. 05.) 후 잠정중단 2013. 12. 03. 공식 협상 개시 선언 2014. 02.~10. 총 5차례 협상 2014. 11. 15. 협상 타결 선언 2014. 12. 22. 가서명 2015. 03. 23. 정식서명 2015. 11. 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 12. 20.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베트남	2011. 11.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 08. 06. 협상 개시 선언 2012. 09.~2014. 12. 총 9차례 협상 2014. 12. 10. 협상 타결 선언 2015. 03. 28. 가서명 2015. 05. 05. 정식서명 2015. 11. 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 12. 20. 발효	우리의 제3위 투자 대상국 (2015년 기준)
	콜롬비아	2009. 03.~09. 민간공동연구 2009. 12.~2012. 04. 총 6차례 공식 협상 2012. 06. 25. 협상 타결 선언 2012. 08. 31. 가서명 2013. 02. 21. 정식서명 2016. 07. 15. 발효	자원 부족, 중남미의 신흥 시장
	중미 (5개국)	2010. 10. 공동연구 개시 2011. 04.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2015. 06. 협상개시 공식 선언 2015. 07. 한중미FTA 예비협약 2015. 09.~2016. 10. 총 7차례 협상 2016. 11. 실질 타결 선언 2017. 03. 10. 가서명 2018. 02. 21. 정식서명 2018. 05. 국회보고 2019. 10. 01. 발효 * 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 *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중미 신시장 창출
서명 타결	영국	2016. 12.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계기 2017. 02.~2019. 05. 총 7차례 한-영 FTA 무역작업반 개최 2019. 06. 10. 원칙적 타결 선언 2019. 08. 22. 한-영 FTA 정식 서명	브렉시트 이후 한-영 간 통상관계 연속성 유지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 타결	이스라엘	2009. 08.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 08. 완료 2016. 05. 협상 개시 합의 6차례 협상 개최(2016. 06, 12./ 2017. 03, 04, 05./ 2018. 03.) 2019. 08. 21. 한-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	창조경제 모델국가
	인도네시아	2011. 05.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1. 11. 공청회 개최 2019. 02. 19. 한인니 CEPA 협상재개 선언 10차례 협상 개최 (2012. 07, 12./ 2013. 05, 07, 09, 11./ 2014. 02./ 2019. 04, 08, 10.) 2019. 10. 16. 실질 타결 선언	신남방정책 핵심국 (세계 인구 4위)
협상 진행	한중일	2012. 11. 협상 개시 선언 2013. 03. 협상 개시(제1차 협상) 2018. 12. 까지 총 15차례 공식 협상 개최 및 총 5차례 실무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16개국)	2013. 05. 협상 개시(제1차 협상 개최) 2018. 12. 까지 총 2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16개국: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10개국)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에콰도르 SECA	2012. 04. 통상교섭본부장,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한-에콰도르 TA 타당성연구 진행 합의 2012. 09~2013. 06.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5. 02. 한-에콰도르 TA 추진 가능성 검토 회의 2015. 04. 한-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2015. 08. 25.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 선언 2015. 12. 예비협의를 개최, 5차례 협상 개최(2016. 01, 03, 08, 10, 11.)	자원 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MERCOSUR	2017. 03. 예비협의를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2017. 04. 공청회 개최 2017. 12. 신속한 협상 개시 중요성에 합의 2018. 05. 협상 개시 공식 선언 4차례 협상 개최 (2018. 09./ 2019. 04, 07, 10.) 회원국 자격 정치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 진행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남미 최대시장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진행	필리핀	2019. 04. 17. 추진 합의 2019. 05. 공청회 개최 2019. 06. 협상 개시, 4차례 협상 개최(2019. 06, 07, 08, 09.)	동서양이 조화된 젊은시장
	러시아	2019. 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선언 2차례 협상 개최(2019. 06, 10.)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2019. 06. 한-말레이시아 FTA 개시 선언 3차례 협상 개최(2019. 07, 08, 09.)	한·말 교역, 투자확대의 제도적 틀 마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총 8차례 개선협상 개최 (2016. 10./ 2017. 02, 09, 12./ 2018. 05, 06, 12./ 2019. 06.)	교역확대를 위한 주력수출 품목양허 및 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개선협상	2016. 11. 개선협상 개시 선언 3차례 개선협상 개최 (2018. 11./ 2019. 07, 10.)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총 5차례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 (2018. 03, 07./ 2019. 01, 03, 07.)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협상 재개, 개시, 여건 조성 (3건)	멕시코	2007. 12. 기존의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을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 06. 제2차 협상 개최 2016. 11. 예비협의를 개최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2008. 07. 협상 개시 2009. 07.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 (2015년 기준)
	EAEU	2016. 08. 민간공동연구 완료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 (2016. 10. 11./ 2017. 04.) 2017. 09. 한러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03 저작권과 FTA의 관계



01 FTA를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 인식이 낮은 국가의 경우 FTA를 통해 선진화된 저작권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체결국은 FTA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분야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저작권 보호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규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의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저작권 보호 인식이 낮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체결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FTA 이행 협정 점검을 통해 체결국에게 저작권 보호의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02 저작권 무역수지 변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7		2018p		2019p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수지	-16.9	-7.2	-8.3	-8.6	-5.3	-1.9	-8.8
산업재산권	-21.5	-16	-9.2	-12.2	-9.7	-6.3	-14.3
저작권	5.9	14	1.7	4.3	6.9	7.2	7.4
문화예술저작권	-4.1	-3.5	-1.5	-2.6	-1.7	-1.7	-0.9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	17.5	3.1	6.9	8.6	8.9	8.2
기타지식재산권	-1.4	-5.3	-0.7	-0.6	-2.5	-2.8	-1.8
수출	122.7	135.2	56.1	66.6	67.1	68.1	76.4
산업재산권	63.4	68.2	28.8	34.6	33.6	34.6	34
저작권	58.4	66	26.7	31.7	33	33.1	41.7
문화예술저작권	11.8	13.5	6	5.7	6.4	7.1	7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46.7	52.5	20.7	26	26.6	25.9	34.8
기타지식재산권	0.9	1	0.6	0.3	0.5	0.4	0.7
수입	139.6	142.4	64.4	75.1	72.4	70	85.2
산업재산권	84.9	84.1	38.1	46.8	43.3	40.9	48.3
저작권	52.5	52	25	27.5	26.1	25.9	34.4
문화예술저작권	15.8	17	7.5	8.4	8.1	8.9	7.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36.7	35	17.5	19.1	18	17	26.6
기타지식재산권	2.2	6.3	1.3	0.9	3.1	3.2	2.5

(한국은행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보도자료, 2019. 09. 20.)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주요 통계 추이

	〈2010년 이후, 연간〉		〈최근 4년, 반기별〉	
유형별	<p>(억달러)</p> <p>■ 산업재산권 □ 저작권 ■ 기타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p> <p>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p>(억달러)</p> <p>■ 산업재산권 □ 저작권 ■ 기타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p> <p>15.상 하 16.상 하 17.상 하 18.상 하 19.상</p>	
권리 유형	음악·영상 저작권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뮤지컬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드라마 콘텐츠 제작업체인 K사는 미국 L사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드라마를 방영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	책, 원고, 간행물, 그림, 조각, 설계도면 등의 인쇄, 출판, 발행, 복사, 전시, 배포 등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국내 건설업체인 M사는 중국 N사의 신규 산업단지 설계		
	연구개발 저작권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작성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제약업체인 O사는 스위스 P사와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독창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국내 게임업체인 Q사는 중국 R사와 자사의 신작게임에 대한 퍼블리싱(판권) 계약을 체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국내 자료 처리업체 S사는 국내주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미국의 T사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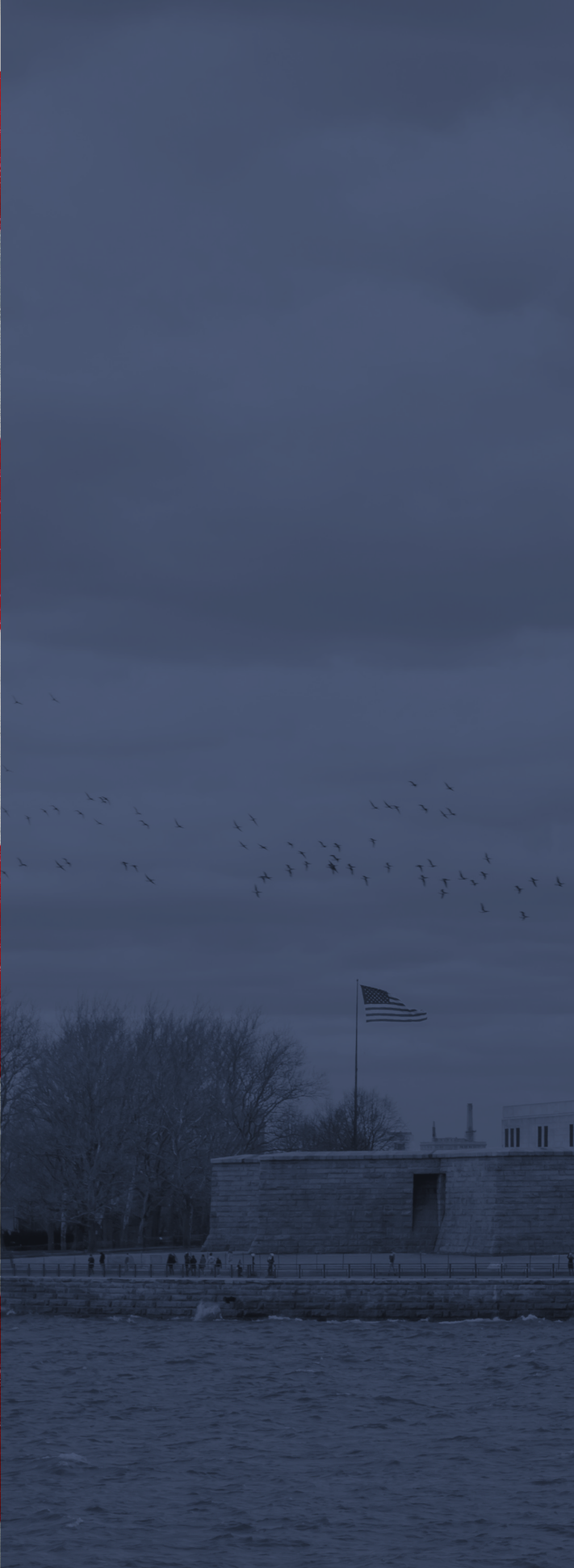
〈한국은행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보도자료, 2019. 09. 20.〉

02



우리나라 FTA의 저작권 조항 내용







미국편



한·미 FTA 체결 경과

- 2019. 01. 01.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 2018. 03. 24. :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
- 2017. 08. 22. :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서울)
- 2012. 03. 15. : 한·미 FTA 발효
- 2011. 11. 22.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07. 06. 30. : 한·미 FTA 서명(워싱턴 D.C)
- 2007. 04. 02. : 협상 실질적 타결
- 2006. 02. 03. : 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2004. 11. : 한·미국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한·미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미 FTA 제18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칙(제18.1조), 실체규정(제18.2조~제18.9조), 집행규정(제18.10조), 경과 규정(제18.11조) 및 부속서한(Confirmation Letter 1~4)의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다.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가 권장하는 조약의 준수를 의무화하였고, 내국민대우와 상호주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복제권 개념에 일시적 복제 포함, 기술적 조치·권리관리정보·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의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집행규정에는 정보제공명령 권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비친고죄, 도찰 금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8.1조

2. 제1.2조(다른 협정과와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다.
 - 다.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 (베른협약)
 - 라.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년)
 - 자.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 차.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1996년)

2. Further to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the TRIPS Agreement.
3. Each Party shall ratify or accede to the following agreements by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c)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the Berne Convention);
 - (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1974);
 - (i)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Copyright Treaty (1996); and
 - (j)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01 의미

- 양 당사국은 TRIPS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 미국은 이 조항에서 명시한 조약들을 비준·가입해야 한다. 명시된 조약으로는 베른협약, 워싱턴협약, WCT 및 WPPT가 있다.

02 설명

- 권리·의무 확인 조항(제2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그럼에도, FTA에서 TRIPS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규정(예를 들어, FTA에서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FTA상의 의무와는 단절된, 단순한 확인에 그치고 있다.
- 미국과의 FTA가 TRIPS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이 FTA에서는 이른바 TRIPS 플러스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더욱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추구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존재한다. TRIPS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규정도 있고, TRIPS와 같은 취지의 유사한 규정도 있다. 어떤 것이든 모두 TRIPS 플러스에 해당한다.
- 조약 비준·가입 조항(제3항)에서 요구한 대로, 미국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 WCT 및 WPPT 등 네 가지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해야 한다. 미국은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기준으로 이들 조약에 모두 비준·가입했으므로 FTA를 이행했다.
 - 미국은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개별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FTA 위반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FTA는 단지 이들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미국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8.1조

5.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다만,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수단에 의한 음반의 이차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5. A Party may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ts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6.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s derived from such rights. With respect to secondary uses of phonograms by means of analog communications, analog free over-the-air radio broadcasting, and analog free over-the-air television broadcasting, however, a Party may limit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of the other Party to the rights its persons are accord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01 의미

미국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저작권/저작권접권 보호와 보호로 인한 혜택을 우리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는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아날로그 방식의 무료 공중파 방송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미국이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미국은 이른바 '방송 보상청구권'을 제외하고는, FTA에서 저작권/저작권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내용의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에는 베른협약, TRIPS, WCT, WPPT에 있는 규정과 같은 취지의 유사한 규정도 있고, 이들 조약에도 없는 규정도 있다. 이런 규정들은 모두 TRIPS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런 규정들에 적용된다.
 - 둘째, FTA에서는 당사국(미국)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한편, 미국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 WCT,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미국은 이들 조약상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권리의 향유와 행사, 집행 등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권리의 발생과 향유, 권리의 취득과 유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로 인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복제권·배포권



제18.4조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2. Each Party shall provide to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01 의미

- 미국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일시적 복제 포함)을 부여해야 한다.
- 미국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제1항에 따라,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을 가진다. 이런 복제권은 배타적인 것으로, 해당 권리자만이 저작물, 실연, 음반의 복제를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다.
 - 배타적 권리의 대상인 이용형태는 복제로서, 그것이 유형물에 고정되든 디지털 파일로 고정되든 묻지 않는다. 이런 복제물을 통해 저작물, 실연, 음반을 지각하게 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 복제는 영속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아날로그 복제는 인쇄물이나 필름에서 보듯이 영속적인 것이지만, 디지털 복제는 일시적인 것도 있다. 일시적 복제는 컴퓨터 램(RAM)이나 비디오 버퍼와 같은 곳에서 이뤄진다. 기술적으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또는 웹사이트 접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런 복제가 다른 복제와 기술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디지털 환경에서 일시적 복제를 이용한 영업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제2항에 따라,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배포권을 가진다. 이런 배포권은 배타적인 것으로, 해당 권리자만이 저작물, 실연, 음반의 배포를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다.
 - 배포란 '원본과 복제물'을 판매나 소유권 이전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배포는 유형물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방송이나 공중전달과 같은 무형의 이용 제공은 FTA에서 말하는 배포가 아니다.

04 저작자의 권리



제18.5조

베른협약 제11조제1항2호, 제11조의2제1항1호 및 2호, 제11조의3제1항2호, 제14조제1항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11(1)(ii), 11bis(1)(i) and (ii), 11ter(1)(ii), 14(1)(ii), and 14bis of the Berne Conven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to authors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01 의미

미국은 우리 저작자에게 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베른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작물이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이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공중전달권)를 가진다. 공중전달의 예로는 방송과 유선송신, 그리고 이용제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권리는 주문형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미친다. 이런 예로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 우리 저작자는 FTA에서 정한 권리 외에, 베른협약에서 규정한 여러 권리도 향유한다. FTA에서 TRIPS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TRIPS는 베른협약상의 권리 부여 규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베른협약상 권리로는 번역권과 각색권이 있다.

05 실연자의 권리



제18.6조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3. 가.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 및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또는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 나. 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의 아날로그 송신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행위를 위한 이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이다.
 - 다. 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0항에 따라 그 밖의 비쌍방향적 송신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공평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 (a)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except where the performance is already a broadcast performance; and
 - (b) the fixation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3. (a)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the broadcasting and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or phonogram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ose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d Article 18.4.10, the application of this right to analog transmissions and free over-the-air broadcasts, and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this right for such activity, shall be a matter of each Party's law.
- (c) Each Party may adopt limitations to this right in respect of other noninteractive transmi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10, provided that the limitations do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performer or producer of phonograms to obtain equitable remuneration.

01 의미

- 미국은 우리 실연자에게 생실연(비고정실연)에 대한 방송권과 공중전달권, 고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미국은 우리 실연자에게 고정실연에 대한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은 국내법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 아날로그 송신, 무료 지상파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예외나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02 설명

- 제2항에서 실연자에게 비고정실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세 가지 배타적인 권리, 즉 방송권, 공중전달권 및 고정권은 미국이 비준·가입한 TRIPS(금지권으로 하고 있다.), WPPT(배타적인 권리로 하고 있다.)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방송이란 무선 송신을 말하며, 컴퓨터네트워크 통신은 제외된다. 방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중파 방송을 떠올리지만 위성방송이나 암호화방송도 생각할 수 있다.
 - 공중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송신을 말한다. 우리가 유선방송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유선 송신이 대표적이다. 송신에 국한하므로, 현장 실황 공연의 경우는 공중전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 고정이란 실연을 최초로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음반 제작을 위한 마스터테이프를 염두에 둔 것이다.

- 제3항에서 실연자에게 고정실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미국이 비준·가입한 WPPT에서 보상청구권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협정상 배타적 권리는 형식상 그러할 뿐, 실제 국내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 즉, 이들 권리의 부여 여부, 권리의 성격,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 등과 관련해 계약국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아날로그 송신과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권리 자체를 부인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비쌍방향 디지털 송신(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송신 관련 FTA 규정

	구분	FTA 규정
아날로그 송신	지상파 방송	권리 부인/제한 가능
	유선 송신	권리 부인/제한 가능
디지털 송신	지상파 방송	권리 부인/제한 가능
	비쌍방향 송신 쌍방향 송신	보상청구권 배타적 권리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8.6조 제3항

가.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 및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또는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나. 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의 아날로그 송신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행위를 위한 이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이다.

다. 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0항에 따라 그 밖의 비쌍방향적 송신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공평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the broadcasting and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or phonogram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ose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d Article 18.4.10, the application of this right to analog transmissions and free over-the-air broadcasts, and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this right for such activity, shall be a matter of each Party's law.

(c) Each Party may adopt limitations to this right in respect of other noninteractive transmi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10, provided that the limitations do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performer or producer of phonograms to obtain equitable remuneration.

01 의미

미국은 우리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에 대한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은 국내법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 아날로그 송신, 무료 지상파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예외나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02 설명

- FTA에서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미국이 비준·가입한 WPPT에서 보상청구권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과 공중전달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실연자의 권리 참조). 그러나 협정상 배타적 권리는 형식상 그러할 뿐, 실제 국내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 즉, 이들 권리의 부여 여부, 권리의 성격,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 등과 관련해 체약국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아날로그 송신과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권리 자체를 부인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비쌍방향 디지털 송신(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

07 보호 기간



제18.4조 제4항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the term of protection of a work (including a photographic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s to be calculated:

- (a) on the basis of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not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70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 and
- (b) on a basis other than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 (i)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authorized publ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 (ii) failing such authorized publication within 25 year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01 의미

미국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를 70년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물, 실연, 음반 모두 70년간 보호된다. 보호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로부터, 실연의 경우 실연한 때로부터, 음반의 경우 고정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FTA에서는 국내법으로 고정을 보호의 요건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연도 음반과 마찬가지로 고정한 때로부터 보호가 시작될 수도 있다.
- 보호 기간의 계산 기준은 보호 시점과는 다르다.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인접물과 자연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행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작을 기준으로 한다.
-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보호 기간은 사망 후 70년간, 발행 후 70년간, 창작 후 25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간이다. 보호 기간은 사망, 발행, 창작 해당 연도 말(다음 해 1월 1일)부터 산정한다.
- 종합해보면, 70년이란 보호 기간은 그 기준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호 시점으로부터 최소 70년간(권리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같은 해 사망하는 경우), 최대 95년간(법인저작물이 창작한 지 25년이 지나 발행되는 경우) 또는 그 이상(권리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2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 보호될 수도 있다.

08 인터넷 재송신 금지



제18.4조 제10항 나호

가호와 제18.6조제3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그리고 신호 그 자체에 대하여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d Article 18.6.3(b), neither Party may permit the retransmission of television signals (whether terrestrial, cable, or satellite) on the Internet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or right holders of the content of the signal and, if any, of the signal.

01 의미

미국은 우리 권리자의 허락 없이 텔레비전 신호의 인터넷 재송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02 설명

- 미국 내에서 텔레비전 신호가 인터넷으로 재송신되고, 그런 재송신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FTA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신호 어떤 것이든(지상파 신호이든, 케이블 신호이든, 아니면 위성 신호이든) 재송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FTA에서는 재송신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텔레비전 신호는 이용제공의 방법으로도, 그 밖의 방법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이용제공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FTA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배타적인 권리(이용제공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그렇다면 이 규정의 취지는 이용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인터넷 재송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특히 국내법으로 강제허락을 통해 인터넷 재송신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셋째, 다른 국제규범(로마협약, TRIPS)상의 재방송 개념에 비춰 보면, 본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다른 서비스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는 송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렇게 이해할 때 인터넷 재송신 금지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보아 무방하다. 권리의 성격은 금지권이고, 권리의 내용은 텔레비전 신호의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동시 송신이라 할 수 있다. IPTV를 통해 텔레비전 신호를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금지권이 미치지 않는다. IPTV는 의무재송신 의무에 따라 텔레비전 신호를 송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송신이 국내에 한정하는 서비스라면 허용되는 것이다.
- 금지권 행사 주체는 텔레비전 신호에 담긴 저작물, 실연, 음반상의 권리자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신호의 소유자(방송사업자를 상정했다 할 수 있다.) 또한 권리 행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09 기술조치



제18.4조 제7항

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8.10조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 1)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한 없이 우회하는 인, 또는
- 2) 다음의 장치·제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인, 또는
 -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협력하여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것
 -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 벌을 규정한다. 그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대로 제18.10조제2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전자·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각 당사국은 이 항을 이행하는 조치의 위반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독립적인 별개의 소송 원인임을 규정한다.

라.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로 한정하되, 이는 마호에 따라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

-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참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또는 현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하였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하여 정보의 스크랩 및 디스크랩을 위한 기술의 훔칠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수행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 3)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 하에서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것
- 4)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에 의하여 허락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 5)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 식별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 6)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
- 7) 취득 여부의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 8)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성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있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 다만, 이 목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외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갱신가능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마.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은 라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와 제한이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정성 또는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 1) 가호1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라호에 규정된 각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2)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 라호1목·2목·3목·4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3)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라호 1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효과적인 기술조치라 함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보호되는 대상물체의 접근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보호하는 기술·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a)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us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that restrict unauthorized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

(i) knowingly, or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circumvents without authority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that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other subject matter; or

(ii) manufactures, imports, distributes, offers to the public, provides, or otherwise traffics in devices, products, or components, or offers to the public or provides services, that:

(A) are promoted, advertised, or marketed by that person, or by another person acting in concert with, and with the knowledge of, that person,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B)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or

(C) are primarily designed, produced, or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or facilitating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shall be liable and subject to the remedies set out in Article 18.10.13.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when any person, other than a nonprofit library, archive, educational institution, or public noncommercial broadcasting entity, is found to have engaged willfully and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 in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Such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shall include the application to such activities of the remedies and authorities listed in subparagraphs (a), (b), and (e) of Article 18.10.27 as applicable to infringements, *mutatis mutandis*.

(b) In implementing subparagraph (a), neither Party shall be obligated to require that the design of, or the design and selection of parts and components for, a consumer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or computing product provide for a response to any particular technological measure, so long as the product does not otherwise violate any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

(c)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violation of a measure implementing this paragraph is a separate cause of action, independent of any infringement that might occur under the Party's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d) Each Party shall confin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 to the following activities, which shall be applied to releva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e):
- (i) noninfringing reverse engineering activities with regard to a lawfully obtained copy of a computer program, carried out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particular elements of that computer program that have not been readily available to the person engaged in those activities, for the sole purpose of achieving interoperability of an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with other programs;
 - (ii) noninfringing good faith activities, carried out by an appropriately qualified researcher who has lawfully obtained a copy, unfixed performance, or display of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and who has made a good faith effort to obtain authorization for such activitie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sole purpose of research consisting of identifying and analyzing flaws and vulnerabilities of technologies for scrambling and descrambling of information;
 - (iii) the inclusion of a component or part for the sole purpose of preventing the access of minors to inappropriate online content in a technology, product, service, or device that itself is not prohibited under the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ii);
 - (iv) noninfringing good faith activities that are authorized by the owner of a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for the sole purpose of testing, investigating, or correcting the security of that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 (v) noninfringing activities for the sole purpose of identifying and disabling a capability to carry out undisclosed collection or dissemination of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reflecting the online activities of a natural person in a way that has no other effect on the ability of any person to gain access to any work;
 - (vi) lawfully authorized activities carried out by government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for the purpose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essential security, or similar governmental purposes;
 - (vii) access by a nonprofit library, archive, or educational institution to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otherwise available to it, for the sole purpose of making acquisition decisions; and
 - (viii) noninfringing uses of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n a particular class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when an actual or likely adverse impact on those

noninfringing uses is demonstrated in a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by substantial evidence, provided that any limitation or exception adopted in reliance on this clause shall have effect for a renewable period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proceeding concludes.

- (e)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 for the activities set forth in subparagraph (d) may only be applied as follows, an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impair the adequacy of legal protection or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 (i)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i) may be subject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with respect to each activity set forth in subparagraph (d).
 - (ii)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ii), as they apply to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control access to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may be subject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with respect to activities set forth in subparagraph (d)(i), (ii), (iii), (iv), and (vi).
 - (iii)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ii), as they apply to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protect any copyright or any rights related to copyright, may be subject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with respect to activities set forth in subparagraph (d)(i) and (vi).
- (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means any technology, device, or component that, in the normal course of its operation,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other protected subject matter, or protects any copyright or any rights related to copyright.

01 의미

미국은 우리 국민에게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기술조치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각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고(접근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이용 통제 기술조치). FTA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보호한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
- 이런 기술조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된다. 하나의 방법은 접근 통제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고의로 우회할 수도 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실로 우회할 수도 있다. FTA에서는 이용 통제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우회는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원용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지 행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 다른 하나의 방법은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기술조치(접근 통제 기술조치와 이용 통제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우회를 주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일 경우 그런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기술조치 그 자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비침해적 이용’에 대해서 기술조치 보호를 무조건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FTA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정하고 이 경우 기술조치를 우회하거나 우회하는 장치나 서비스의 제작이나 제공을 허용한다. FTA에서는 특히 다음 여덟 가지의 경우 접근 통제 기술조치 우회 그 자체를 허용한다: 역분석, 암호화 연구, 미성년에 의한 부적절한 정보 접근 방지, 컴퓨터 보안 검사, 개인식별정보 수집 방지, 국가의 법집행,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구입 여부 결정, 정기적인 입법·행정 절차로 정하는 그 밖의 비침해적 이용.
-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이 있다.

10 권리관리정보



제18.4조 제8항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를 유인·가능·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은 제18.10조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 1)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 2)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 3)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또는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이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대로 제18.10조 제2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범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로 한정한다.

다.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다.

-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3)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to protect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a)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 without authority, and knowing, or, with respect to civil remedies,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it would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
 - (i) knowingly removes or alters any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ii) distributes or imports for distribution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knowing that th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or
 - (iii) distributes, imports for distribution, broadcasts, communicates or makes available to the public copies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knowing that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shall be liable and subject to the remedies set out in Article 18.10.13.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when any person, other than a nonprofit library, archive, educational institution, or public noncommercial broadcasting entity, is found to have engaged willfully and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 in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These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shall include the application to such activities of the remedies and authorities listed in subparagraphs (a), (b), and (e) of Article 18.10.27 as applicable to infringements, mutatis mutandis.

- (b) Each Party shall confin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 to lawfully authorized activities carried out by government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for the purpose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essential security, or similar governmental purposes.
- (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 (i) information that identifies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he author of the work, the performer of the performance, or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or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 (ii)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se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 (iii)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when any of these items is attached to a copy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of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the public.

(d)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obligate a Party to require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attach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copies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to caus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appear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the public.

01 의미

미국은 우리 국민에게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FTA에서는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뿐만 아니라 비전자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만을 보호하고 있는 WCT와 WPPT보다는 넓은 보호대상을 설정한 것이다.
-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고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고 그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실연,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권리관리정보가 수록된 복제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FTA에만 있는 규정으로, WCT와 WPPT 보다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예정한 것이다.
-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법적 책임에 따른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는 잠정조치, 손해배상, 폐기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이 있다.

11 권리자 추정



제18.10조 제3항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제작자·실연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as the author, producer, performer, or publisher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n the usual manner is the designated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copyright or related right subsists in such subject matter.

01 의미

미국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성명·명칭이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에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민사, 행정, 형사 절차상 그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베른협약에도 입증 편의를 위한 추정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저작자 추정에 그친 것이다. FTA에서는 베른협약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추정의 이익 주체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있다. 둘째,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성명·명칭이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단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대상의 권리자로 추정된다. 저작자 추정과 저작(재산)권자 추정은 크게 다르다. 전자는 저작권의 최초 귀속자라는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실제 저작(재산)권자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추정이란 상대방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이 가능한 추정을 말한다. 추정의 이익은 모든 법적 절차, 즉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누릴 수 있다. 권리자에게는 매우 긴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2 손해배상



제18.10조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추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다.

6.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13. 제18.4조제7항 및 제8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나.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배상액과 법정 손해배상액 중 하나의 지급을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어떠한 당사국도 그 행위가 금지된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믿었을 만한 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한 비영리 도서관·기록보관소·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없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i)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or

(ii) at least in the case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the profits of the infringer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which may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s referred to in clause (i); and

(b) in determining damag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consider, inter alia, the value of the infringed good or service, measured by the market price, the suggested retail price, or other legitimate measure of value submitted by the right holder.

6.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each Party shall, at least with respect to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stablish or maintain pre-established damages, which shall be available on the election of the right holder. Pre-established damages shall be in an amount sufficient to constitut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and to compensate fully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13.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acts described in paragraphs 7 and 8 of Article 18.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at the least, have the authority to:

(b)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right holder to elect award of either actual damages it suffered or pre-established damages;

Neither Party may make damages available under this paragraph against a nonprofit library, archives, educational institution, or public noncommercial broadcasting entity that sustains the burden of proving that it was not aware and had no reason to believe that its acts constituted a prohibited activity.

01 의미

- 미국은 민사 절차상 우리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미국은 권리자의 선택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손해배상은 대표적인 민사 구제 수단이다. FTA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에 갈음해 가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원 등 사법당국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침해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시장가격으로 측정된 가치, 권장 소매가 또는 권리자가 제시하는 가치 측정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 FTA에서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으나 이들 특칙은 모두 실손해배상 제도의 틀 안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무형의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수집이 곤란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FTA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손해액으로 정해놓고(예를 들어, 저작물 1건당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다.) 권리자가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보전하기에 충분하고, 장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이어야 한다. 권리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통상적인 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에 갈음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권리자에게 실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공공방송이 그런 금지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13 침해물의 압류·폐기



제18.10조

8.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
 - 나.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 제18.4조제7항 및 제8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라.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장치 및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8.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allegedly infringing goods, materials, and implements relevant to the act of infringement, and, at least for trademark counterfeiting,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at the right holder's request, goods that have been found to be pirated or counterfeit shall be destroye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or creation of such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be,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promptly destroyed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ze the risks of further infringements;

13.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acts described in paragraphs 7 and 8 of Article 18.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at the least, have the authority to:

(d) order the destruction of devices and products found to be involved in the prohibited activity.

01 의미

- 미국은 민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미국은 민사 절차상 침해가 판정된 상품을 폐기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폐기나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TRIPS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가 판명된 경우 침해 상품이나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제도는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처분이나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FTA는 TRIPS 플러스 요소로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 TRIPS는 사법당국에 처분이나 폐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협정상의 의무로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재량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FTA에서는 침해 상품으로 판정되면 반드시 폐기하는 국내법 규정을 두도록 하고,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의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폐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TRIPS에서는 침해 상품이나 재료와 도구의 처분과 폐기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FTA에서는 침해 상품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폐기를 의무화하고, 재료와 도구의 경우 폐기를 우선적인 의무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재료와 도구의 경우 단지 사법당국에 처분에 대한 권한만을 부여해서는 FTA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TRIPS에 의하면, 재료와 도구의 처분은 침해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FTA에는 그런 요건상의 제약도 없다.
-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가 사법 절차상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압류할 수 있다면 민사 구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FTA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침해 의심 상품이나 이런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TRIPS 플러스에 해당한다.
- 사법당국은 또한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장치나 제품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4 정보청구권



제18.10조 제10항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rovide,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 any information that the infringer possesses or controls regarding any person or persons involved in any aspect of the infringement and regarding the means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 channel of such goods or servic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ird person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or in their channels of distribution, an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right holder or the judicial authorities.

01 의미

미국은 민사 절차상 침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정보로서, 침해에
관여한 사람에 관한 정보,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무형의 재산으로서 저작권/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에 관한 정보는
통상적인 민사 절차로는 획득하기 어렵다. FTA에서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이른바 정보청구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권리자의 정보청구권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침해자가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FTA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침해자에게 이런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정보에는 침해에 관여한 사람에 관한 정보와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가 있다. 후자의 정보에는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유통 경로에 관여한 제3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15 비밀유지명령



제18.10조 제11항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b) impose sanctions on parties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their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a proceeding.

01 의미

미국은 민사 절차상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내리진 사법명령 위반에 대해 제재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민사 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에는 당사자들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당사자들은 이런 비밀정보를 소송상 공격이나 방어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FTA에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민사 절차상 생산되거나 주고받은 비밀정보를 보호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고, 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6 잠정조치



제18.10조

13. 제18.4조제7항 및 제8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치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17. 각 당사국은 일반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8.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3.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acts described in paragraphs 7 and 8 of Article 18.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at the least, have the authority to:

(a) impose provisional measures, including seizure of devices and products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the prohibited activity;

17. Each Party shall act on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expeditiously.

1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plaintiff'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plaintiff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et at a level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and so as not to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such procedures.

01 의미

미국은 일방적 잠정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협정상의 의무로 일방적 잠정조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 잠정조치란 상대방의 진술을 듣지 않고 내려지는, 사법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을 말한다.
 - 일방적 잠정조치는 통상적인 잠정조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FTA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TRIPS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FTA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RIPS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잠정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 FTA에서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건에 대해서 역시 침묵하고 있으나, TRIPS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TRIPS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절차의 지연으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일방적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FTA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 사법당국은 또한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치나 제품의 압류를 포함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7 형사 처벌



제18.10조

26.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 그리고

나.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

27. 제26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도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28. 각 당사국은, 또한 최소한 다음에 대하여 알면서 행한 밀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문학 저작물의 복제물,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나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 그리고

나.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품목에 대한 위조 서류 또는 포장

29.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 절차를 또한 규정한다.

26.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Willful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includes:

- (a) significant willful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s that have no direct or indirect motivation of financial gain; and
- (b) willful infringements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

Each Party shall treat willful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s unlawful activitie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27. Further to paragraph 26, each Party shall provide:

- (a) penalties that include sentences of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consistent with a policy of removing the infringer's monetary incentive. Each Party shall further encourage judicial authorities to impose those penalties at level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including the imposition of actual terms of imprisonment when criminal infringement occurs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

28.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even absent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piracy, at least in cases of knowing trafficking in:

- (a) counterfeit labels or illicit labels affixed to, enclosing, or accompanying, or designed to be affixed to, enclose, or accompany: a phonogram,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or other literary work, a copy of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or documentation or packaging for such items; and
- (b) counterfeit documentation or packaging for items of the type described in subparagraph (a).

29.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to be applied against any person who,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holder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 an audiovisual recording device to transmit or make a copy of the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or any part thereof, from a performance of the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in a public motion picture exhibition facility.

01 의미

- 미국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미국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동봉된 위조 또는 불법 라벨의 유통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미국은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송신하거나 복제하기 위한 녹화장치 사용에 대해 형사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형사 처벌은 고의로,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저작권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FTA에서는 상업적 규모의 침해를 영리 목적의 침해와 영리 목적을 불문한 상당한 규모의 침해로 나누고 있다.
 - 이런 침해행위로 인해 제작된 상품을 고의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이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장래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미국은 영리 목적의 경우 사법당국이 실제 금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이 처벌 규정이 준용된다.
- FTA에서는 위조 라벨이나 불법 라벨의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라벨은 상표, 압인, 홀로그램, 워터마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동봉되는 표지, 또는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 형사 처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라벨 등을 유통해야 한다. 라벨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동봉되는 것, 또는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것을 말한다. 라벨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관한 서류와 포장물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뒤야 한다. 대상 저작물/저작권접물은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에 한정한다. 셋째, 라벨이 위조되거나 불법적이어야 하고, 서류와 포장은 위조된 것이어야 한다. 위조 라벨이란 진정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고, 불법 라벨이란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 FTA는 또한 영상저작물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 대상행위는 녹화장치를 사용하는 것,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
 - 녹화장치 사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복제행위는 국가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법으로 복제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녹화장치 사용이 곧 복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FTA에서는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 침해물의 압수·몰수



제18.10조

27. 제26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라.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한다.

-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와 다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마.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27. Further to paragraph 26, each Party shall provide:

- (b)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y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any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offense, and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such orders need not individually identify the items that are subject to seizure, so long as they fall within general categories specified in the order;

(c)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mong other measures, the forfeiture of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d)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except in exceptional cases, order

(i) the forfeiture and destruction of all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d any articles consisting of a counterfeit mark; and

(ii) the forfeiture and/o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reation of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Each Party shall further provide that forfeiture and destruction under this subparagraph and subparagraph (c) shall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kind to the defendant;

(e) that, in criminal cases, its judicial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shall keep an inventory of goods and other material proposed to be destroyed, and shall have the authority temporarily to exempt these materials from the destruction order to facilitate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on notice by the right holder that it wishes to bring a civil or administrative case for damages;

01 의미

- 미국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미국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와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미국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에도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상 이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FTA에서는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고 있다.
 - 당사국은 사법당국에게 압수와 몰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압수 대상은 침해 의심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이다.
 - 몰수와 폐기 대상은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이다.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은 몰수 대상이다. 몰수와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압수 규정이 준용된다.

19 OSP 책임 제한



제18.10조 제30항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지하는 형사 및 민사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 나. 이 호에서 규정된 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 1) 이러한 책임제한은 금전적 구제를 배제하며, 다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강제 또는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다음의 기능에 한정된다.
 - 가)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
 - 나)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 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그리고
 - 라)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 2) 이러한 책임제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의 전송 체인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다만, 1목라에 기술된 기능이 그 자체로서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1목가 내지 1목라의 각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4목 내지 7목에 규정된

자격 조건에 따라, 각 다른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과는 별도로 고려된다.

- 4) 1목나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서비스 제공자가, 캐싱된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만 상당 부분 캐싱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 나)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이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표준 정보통신규약에 따라 명시한 때에, 캐싱된 자료의 새로고침, 리로딩 또는 그 밖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 사이트에서 사용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산업 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사용자에게 전송시 수정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라)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원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 5) 1목다 및 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 나)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9목에 따른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통해서와 같이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그리고
 - 다)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하는 대표자를 공개적으로 지정할 것
- 6)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상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그리고
 - 나)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보호하고 확인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개방되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택된 표준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7)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은, 그러한 기술 조치와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 8) 서비스 제공자가 1목가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 명령은 특정한 계정을 해지시키거나 특정한 국외 온라인상의 장소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1목의 그 밖의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은, 침해 자료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로 제한된다.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과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구제의 실효성, 그리고 부담이 보다 적고 비슷하게 효과적인 집행 방법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증거 보전을 보장하는 명령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에 중요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그 밖의 명령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 호에 언급된 법원 명령절차의 통보를 받고 사법당국에 출두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그러한 구제가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9) 1목다 및 1목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통보와 중단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의 효과적인 통보를 위하여, 그리고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된 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위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통보 또는 대응통보에서 알면서 중요한 허위 표기를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그 허위 표기에 의존한 결과로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인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규정한다.

10)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주장 또는 의견상 명백한 침해에 기초하여 선의로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자료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한 인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인이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하고 침해소송에서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유효한 일차 통보를 한 인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법적 구제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온라인상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

12) 1목가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시키는 제공자를 말하고, 1목나 내지 1목라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nforcement procedures that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including expeditious remedies to prevent infringements and criminal and civil remedies that constitute a deterrent to further infringements, each Party shall provide, consistent with the framework set out in this Article:

- (a) legal incentives for service providers to cooperate with copyright owners in deterring the unauthorized storage and transmission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 (b) limitations in its law regarding the scope of remedies available against service providers for copyright infringements that they do not control, initiate, or direct, and that take place through systems or networks controlled or operated by them or on their behalf, as set forth in this subparagraph (b).
 - (i) These limitations shall preclude monetary relief and provide reasonable restrictions on court-ordered relief to compel or restrain certain actions for the following functions, and shall be confined to those functions:
 - (A) transmitting, routing, or providing connections for material without modification of its content, or the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such material in the course thereof;
 - (B) caching carried out through an automatic process;
 - (C) storage at the direction of a user of material residing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and
 - (D) referring or linking users to an online location by using information location tools, including hyperlinks and directories.
 - (ii) These limitations shall apply only where the service provider does not initiate the chain of transmission of the material, and does not select the material or its recipients (except to the extent that a function described in clause (i)(D) in itself entails some form of selection).
 - (iii) Qualification by a service provider for the limitations as to each function in clauses (i)(A) through (D) shall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qualification for the limitations as to each other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qualification set forth in clauses (iv) through (vii).
 - (iv) With respect to functions referred to in clause (i)(B), the limitations shall be conditioned on the service provider:
 - (A) permitting access to cached material in significant part only to users of its system or network who have met conditions on user access to that material;
 - (B) complying with rules concerning the refreshing, reloading, or other updating of the cached material when specified by the person making the material available online in accordance with a generally accepted industry standard data communications protocol for the system or network through which that person makes the material available;

- (C) not interfering with technology consistent with industry standards accepted in the Party's territory used at the originating site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material, and not modifying its content in transmission to subsequent users; and
 - (D) expeditiously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on receipt of an effective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to cached material that has been removed or access to which has been disabled at the originating site.
- (v) With respect to functions referred to in clauses (i)(C) and (D), the limitations shall be conditioned on the service provider:
- (A) not receiving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circumstances where it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 (B) expeditiously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the material residing on its system or network on obtaining actual knowledge of the infringement or becoming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nfringement was apparent, such as through effective notifications of claimed infringement in accordance with clause (ix); and
 - (C) publicly designating a representative to receive such notifications.
- (vi) Eligibility for the limitations in this subparagraph shall be conditioned on the service provider:
- (A) adopting and reasonably implementing a policy that provides for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the accounts of repeat infringers; and
 - (B) accommodating and not interfering with standard technical measures accepted in the Party's territory that protect and identify copyrighted material, that are developed through an open, voluntary process by a broad consensus of copyright owners and service providers, that are available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that do not impose substantial costs on service providers or substantial burdens on their systems or networks.
- (vii) Eligibility for the limitations in this subparagraph may not be conditioned on the service provider monitoring its service, or affirmatively seeking facts indicating infringing activity, excep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such technical measures.
- (viii) If the service provider qualifies for the limitations with respect to the function referred to in clause (i)(A), court-ordered relief to compel or restrain certain actions shall be limited to terminating specified accounts, or to taking reasonable steps to block access to a specific, non-domestic online location. If the service provider qualifies for the limitations with respect to any other function in clause (i), court-ordered relief to compel or restrain

certain actions shall be limited to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the infringing material, terminating specified accounts, and other remedies that a court may find necessary, provided that such other remedies are the least burdensome to the service provider among comparably effective forms of relief.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such relief shall be issued with due regard for the relative burden to the service provider and harm to the copyright owner, the technical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medy and whether less burdensome, comparably effective enforcement methods are available. Except for orders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or other orders having no material adverse effect on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provider's communications network,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such relief shall be available only where the service provider has received notice of the court order proceedings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and an opportunity to appear before the judicial authority.

- (ix) For purposes of the notice and take down process for the functions referred to in clauses (i)(C) and (D), each Party shall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in its law or in regulations for effective notifications of claimed infringement, and effective counter-notifications by those whose material is removed or disabled through mistake or misidentification.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monetary remedies against any person who makes a knowing material misrepresentation in a notification or counter-notification that causes injury to any interested party as a result of a service provider relying on the misrepresentation.
- (x) If the service provider removes or disables access to material in good faith based on claimed or apparent infringe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service provider shall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any resulting claim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material residing on its system or network, it takes reasonable steps promptly to notify the person making the material available on its system or network that it has done so and, if such person makes an effective counter-notification and is subject to jurisdiction in an infringement suit, to restore the material online unless the person giving the original effective notification seeks judicial relief within a reasonable time.
- (xi) Each Party shall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 enabling copyright owners who have given effective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to obtain expeditiously from a service provider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identifying the alleged infringer.
- (xii) For purposes of the function referred to in clause (i)(A), service provider means a provider of transmission, routing, or connections for digital online communications without modification of their content between or among points specified by the user of material of the user's choosing, and for purposes of the functions referred to in clauses (i)(B) through (D) service provider means a provider or operator of facilities for online services or network access.

01 의미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통제, 개시, 지시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가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복제나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서비스제공자에는 단순 도관 서비스, 캐싱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검색 서비스가 있다. 이들은 저작물 등의 송신을 개시하지도 않고, 저작물 등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도 않는다(검색 서비스에는 예외적으로 선택 기능이 있다).
 - 도관 서비스란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라우팅하거나 연결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캐싱 서비스란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저작물 등을 컴퓨터(캐싱 서버)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호스팅 서비스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 저작물 등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검색 서비스란 정보검색도구를 사용해 온라인상의 위치 정보를 가리키거나 링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책임 제한의 조건은 서비스 유형마다 다르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특정 서비스가 책임 제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FTA에서 정의한 유형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한다. 둘째,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반복 침해자의 계정 정지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하고, 권리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자발적으로 발전시킨 저작물 보호와 식별 목적의 표준 기술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 도관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자적인 조건이 없으나, 다른 3종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붙는다.

- 캐싱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접근 조건을 수용하는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 저작물 등에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둘째, 산업계의 표준 통신프로토콜에 따라, 임시저장 저작물의 업데이트(리프레시, 리로드)를 위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산업계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저작물 등이 원사이트에서 제거되거나 접근 금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임시저장 저작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 호스팅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고, 침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 둘째,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침해 주장 통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이 생기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 책임 제한의 내용 또한 서비스 유형마다 다르다.
 - 도관 서비스의 경우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계정의 정지, 특정 온라인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 방지에 한해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다.
 - 다른 3종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침해 저작물 등의 제거 또는 접근 방지, 특정 계정의 정지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권리자는 다른 구제 수단, 예를 들어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와 검색 서비스제공자가 침해 주장 통지를 받고 저작물 등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 경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저작물 등을 이용제공한 사람에게 통지하여 그 사람이 다시 이용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18.10조 제30항 나호 6목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지하는 형사 및 민사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한다.

나. 이 호에서 규정된 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6)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상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nforcement procedures that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including expeditious remedies to prevent infringements and criminal and civil remedies that constitute a deterrent to further infringements, each Party shall provide, consistent with the framework set out in this Article:

(b) limitations in its law regarding the scope of remedies available against service providers for copyright infringements that they do not control, initiate, or direct, and that take place through systems or networks controlled or operated by them or on their behalf, as set forth in this subparagraph (b).

(vi) Eligibility for the limitations in this subparagraph shall be conditioned on the service provider:

(A) adopting and reasonably implementing a policy that provides for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the accounts of repeat infringers;

01 의미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건의 하나로, 서비스제공자에게 반복 침해자의 계정 정지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 즉 서비스 이용자들 중에는 반복 침해자들도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개인정보나 이용정보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1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FTA에서는 이 점에 주목해,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반복 침해자의 계정 정지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서비스제공자가 신중적으로 정책 채택을 결정할 수도 있다. FTA에서는 '적절한 경우'에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제18.7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형사 범죄로 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1. Each Party shall make it a criminal offense:

(a) to manufacture, assemble, modify, import, export, sell, lease, or otherwise distribute a tangible or intangible device or system,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that the device or system is primarily of assistance in decoding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or cable signal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such signal; and

(b) willfully to receive and make use of, or further distribute, a program-carrying signal that originated as an encrypted satellite or cable signal knowing that it has been decod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or if the signal has been decoded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willfully to further distribute the signal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knowing that the signal originated as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ignal and that such further distribution i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signal distributor.

2.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ivil remedies, including compensatory damages, for any person injured by any activity described in paragraph 1, including any person that holds an interest in the encrypted programming signal or its content.

01 의미

미국은 암호화된 위성신호와 케이블신호의 복호화용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 무단으로 복호화된 신호를 수신·이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허락을 받아 복호화된 신호라도 무단으로 재배포하는 것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이에 대해 민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방송사업자는 신호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위성신호와 케이블신호는 암호화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신호의 도용은 이 분야 산업을 크게 위협한다. FTA는 각종 신호 도용과 도용에 사용되는 장치나 시스템의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대상 신호는 암호화된 위성신호와 케이블신호에 국한한다.
- FTA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 수정, 수출입, 판매, 대여, 기타 배포하는 것이다. 둘째, 신호가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여 시청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재배포하는 것이다. 셋째, 신호 배포자가 신호의 복호화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그 신호가 본래 암호화되었다는 사실과 허락없이 재배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락 없이 고의로 재배포하는 것이다.
- 금지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지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호나 프로그램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2 중앙정부의 정품 사용 의무



제18.4조 제9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laws, orders, regulations, government-issued guidelines, or administrative or executive decrees providing that it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not use infringing computer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only use computer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s authorized by the relevant license. These measures shall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for government use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01 의미

미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와 저작물 등 보호대상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정부기관은 저작물 등을 대량으로 이용한다. 정부기관의 정품 사용은 저작권 보호와 정품 사용 환경 조성의 효과가 있다. FTA에서는 정품 사용을 위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첫째, FTA상의 의무는 모든 정부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부기관에 한정한다. 지방정부나 주정부를 강제하지는 못한다. 둘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FTA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소프트웨어이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셋째, 제도 시행을 위해 저작권법에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위 법령으로도 할 수 있고, 단순히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II

유럽연합 (EU)편



한·EU FTA 체결 경과

- 2015. 12. 13. : 한·EU FTA 전체 발효
*2011. 07. 01 이래 만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 2011. 07. 01. : 한·EU FTA 잠정 발효
- 2011. 05. 04. : 한·EU FTA 국회 본회의 통과
- 2010. 10. 06. : 한·EU FTA 정식서명
- 2009. 10. 15. : 한·EU FTA 가서명
- 2009. 07. 13. : 한·EU FTA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 2007. 05. 06. :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한·EU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산업재산권과 함께 한·EU FTA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규정(제1절), 실체규정(제2절, 제1관), 집행규정(제3절)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및 WPPT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방송사업자의 권리 규정, 기술적 조치·권리관리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집행규정에는 정보제공명령 권한, 중개자에 대한 중간 금지명령 및 금지명령, 법정손해배상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등의 내용이 담겼다.

EU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0.2조 및 제10.5조

제10.2조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지적재산에 다루는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이 장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제10.5조

양 당사자는 다음을 준수한다.

-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61)(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 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 다.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라 한다) 저작권 조약(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 라.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Article 10.2

1. The Parties shall ensure an adequat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aling with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they are party including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ained in Annex 1C to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IP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complement and spec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under the TRIPS Agreement.

Article 10.5

The Parties shall comply with:

- (a) Articles 1 through 2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me Convention”);
- (b) Articles 1 through 18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rne Convention”);
- (c) Articles 1 through 14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IPO”) Copyright Treaty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CT”); and
- (d) Articles 1 through 23 of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PPT”).

01 의미

- 양 당사자는 자신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TRIPS를 포함하는 저작권 조약들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 양 당사자는 로마협약, 베른협약, WCT, WPPT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 설명

- 제10.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저작권 조약들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행 보장'이란 조약 이행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이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즉 TRIPS를 포함한 저작권 조약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FTA를 위반하는 것이다. FTA 다른 규정들을 위반하더라도 물론 FTA를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이 조항에서는 FTA 저작권 규정이 TRIPS상의 권리·의무를 보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FTA가 TRIPS 플러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FTA 발효일(2015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베른협약(회원국), 로마협약(회원국), TRIPS(유럽연합), WCT(유럽연합), WPPT(유럽연합)를 비준·가입했다.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은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제 FTA에 이들 조약 이행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이중의 조약 준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우리 국민은 유럽연합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유럽연합은 국제법 주체로서 외국과 통상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협상 결과는 개별 회원국에 효력을 미친다. FTA는 유럽연합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협상한 것이다. FTA에서는 뒤에서 보듯이, 효과적인 사법 구제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어느 당사자든(유럽연합이든 한국이든) 사법권과 사법 절차를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국제법상의 의무는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에 미친다. 유럽연합은 제한된 국제법 주체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은 이런 FTA상의 의무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제 수단을 우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10.5조는 로마협약, 베른협약, WCT, WPPT 실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베른협약과 WCT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로마협약과 WPPT는 저작권점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모두 저작권 분야 기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약에서는 일정한 기준들을 정해놓고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저작권점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해 당사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체규정이란 이런 기준들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제10.5조에서 열거한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 실체규정 준수 의무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이들 조약 비준·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조약상의 실체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유럽연합(WCT, WPPT)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베른협약, 로마협약)은 FTA 발효일 기준으로 이들 조약을 모두 비준·가입했으므로 일견 실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 국내법에 조약 실체규정과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으로 FTA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이들 조약 실체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FTA 위반이 된다. 단지 조약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02 내국민대우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유럽연합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지켜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는 유럽연합에 베른협약, TRIPS, WCT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들 조약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하므로, 유럽연합은 이들 조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베른협약, TRIPS, WCT는 이들 조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유럽연합 회원국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FTA는 저작권접권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에 로마협약, TRIPS(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WPPT 이행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들 조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조약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들 조약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한다.
- 셋째, 유럽연합은 FTA상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TRIPS 플러스 요소일뿐만 아니라 WCT, WPPT에도 없는,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작자든 다른 권리자든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 이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 국가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권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복제권·배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유럽연합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유럽연합이 비준·가입한 여러 조약에서는 권리자에게 각기 성격이 다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복제권과 관련한 규정들에 따르면, 저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베른협약, TRIPS, WCT), 실연자는 금지권(로마협약과 TRIPS) 또는 배타적인 권리(WPPT)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배타적인 권리(로마협약) 또는 금지권(TRIPS)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로마협약, TRIPS, WPPT).
- 일부 조약에서는 배포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하고(WCT),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WPPT).
-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체약국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조약에서 금지권을 부여하더라도 체약국이 이를 배타적 권리로 변경할 수도 있다.

- 복제란 유형의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쇄, 복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종이책에 인쇄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디지털 방식)도 있다.
- 배포란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복제물이 유형의 앨범으로 거래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포권을 주장할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유럽연합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 WC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베른협약, TRIPS). 또한 방송권뿐만 아니라 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향유한다(WCT).
- 베른협약과 TRIPS상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WCT에서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했다. 첫째, 공중전달의 개념에 유선 송신도 포함시키고 있고, 둘째,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권리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즉 이용제공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주문형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제공의 예로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05 실연자의 권리



제10.9조

2. 각 당사자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한다.
3. 각 당사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사용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자신의 법령에 규정한다. 양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2.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the broadcasting by wireless means and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except where the performance is itself already a broadcast performance or is made from a fixation.
3.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if a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or a reproduction of such phonogram is used for broadcasting by wireless means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4. Each Party shall establish in its legislation that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shall be claimed from the user by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or by both. The Parties may enact legislation that,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between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ets the terms according to which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share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01 의미

- 유럽연합은 우리 실연자에게 생실연(비고정실연)에 대한 방송권과 공중전달권, 고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유럽연합은 우리 실연자에게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제2항에서 실연자에게 비고정실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세 가지 배타적인 권리, 즉 방송권, 공중전달권 및 고정권은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금지권으로 하고 있다.), TRIPS(금지권으로 하고 있다.), WPPT(배타적인 권리로 하고 있다.)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방송이란 무선 송신을 말하며, 컴퓨터네트워크 통신은 제외된다. 방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중파 방송을 떠올리지만 위성방송이나 암호화방송도 생각할 수 있다.
 - 공중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송신을 말한다. 우리가 유선방송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유선 송신이 대표적이다. 송신에 국한하므로, 현장 실황 공연의 경우는 공중전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 고정이란 실연을 최초로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음반 제작을 위한 마스터테이프를 염두에 둔 것이다.
- 제3항에서 실연자에게 고정실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모두 보상청구권이다. 보상청구권은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이나 그런 음반의 복제물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실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유럽연합은 또한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권리 외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실연자는 WPPT상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 실연자는 WPPT상 배타적인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다. 이에 관해서는 위에서 다룬 바 있다.
 - 실연자는 WPPT상 이용제공권도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로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0.9조

3. 각 당사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사용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자신의 법령에 규정한다. 양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3.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if a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or a reproduction of such phonogram is used for broadcasting by wireless means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4. Each Party shall establish in its legislation that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shall be claimed from the user by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or by both. The Parties may enact legislation that,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between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ets the terms according to which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share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01 의미

유럽연합은 우리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모두 보상청구권이다. 보상청구권은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이나 그런 음반의 복제물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음반제작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유럽연합은 또한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방송권과 공중전달권 이외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음반제작자는 WPPT상 배타적인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다. 이에 관해서는 위에서 다룬 바 있다.
 - 음반제작자는 WPPT상 이용제공권도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로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10.9조 제5항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

Each Party shall provide broadcasting organisation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 the re-broadcasting of their broadcasts;

(b) the fixation of their broadcasts; and

(c)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television broadcasts if such communication is made in places accessible to the public against payment of an entrance fee. It shall be a matter for the domestic law of the State where protection of this right is claimed to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may be exercised.

01 의미

유럽연합은 우리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권, 고정권 및 공중전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FTA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재방송권, 고정권 및 공중전달권이다. 로마협약은 이들 세 가지 권리뿐만 아니라 복제권도 부여하고 있다. FTA에서나 로마협약에서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것이다.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로마협약에 의하면,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FTA에는 재방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FTA에 복제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과 TRIPS에는 복제권이 존재하므로 방송사업자는 여전히 이들 조약에 의해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FTA상 공중전달권은 다소 의미가 다르다. FTA에서 인정되는 권리 범위는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좁다. 즉, '텔레비전' 방송이 입장료를 받는 장소에서 전달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로마협약에서는 당사국이 유보를 통해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FTA에서는 단지 권리의 행사 조건만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8 보호 기간



제10.6조 및 제10.7조

제10.6조

각 당사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10.7조

1.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최초 송신 50년 이후에 만료된다.

Article 10.6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the term of protection of a work is to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not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70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

Article 10.7

1. The right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shall expire not less than 50 years after the first transmission of a broadcast, whether this broadcast is transmitted by wire or over the air, including by cable or satellite.

01 의미

- 유럽연합은 우리 저작자를 70년간 보호해야 한다.
- 유럽연합은 우리 방송사업자를 50년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보호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된다. FTA에서는 저작권 일부와 저작인접권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 기간을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은 사망 후 70년간이다. 베른협약상 50년간을 20년 연장한 것이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50년간 보호된다. 로마협약상 20년의 보호 기간을 30년 연장한 것이다.
- FTA에서 정하지 않은 보호 기간은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이 비준·가입한 조약에 따른다. 유럽연합은 FTA에 따라,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발행 또는 창작 후 50년간이다(TRIPS).
 - 실연에 대한 보호 기간은 20년간(로마협약) 또는 50년간(TRIPS와 WPPT)이다.
 - 음반에 대한 보호 기간은 20년간(로마협약) 또는 50년간(TRIPS와 WPPT)이다.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기간과 관련해, 다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보호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실연의 경우 실연한 때부터, 음반의 경우 고정된 때부터, 방송의 경우 방송한 때부터 시작한다. 둘째, 보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별도의 계산 기준이 있다. 저작물의 경우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때에는 사망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발행 또는 창작을 기준으로 한다(TRIPS). 실연의 경우 실연이나 고정(로마협약) 또는 고정(WPPT)을 기준으로 한다. 음반의 경우 고정(로마협약) 또는 고정이나 발행(WPPT)을 기준으로 한다. 실연 대신 고정으로 하거나, 고정 대신 발행으로 할 경우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보호 기간은 이런 기준(사망, 발행, 창작) 해당 연도 말(다음 해 1월 1일)부터 산정한다.

09 인터넷 재송신 금지



제10.7조 제2항

어떠한 당사자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Neither Party may permit the retransmission of television signals (whether terrestrial, cable or satellite) on the Internet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right holder or right holders, if any, of the content of the signal and of the signal.

01 의미

유럽연합은 우리 권리자의 허락 없이 텔레비전 신호의 인터넷 재송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02 설명

- 유럽연합 내에서 텔레비전 신호가 인터넷으로 재송신되고, 그런 재송신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FTA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신호 어떤 것이든(지상파 신호이든, 케이블 신호이든, 아니면 위성 신호이든) 재송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FTA에서는 재송신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텔레비전 신호는 이용제공의 방법으로도, 그 밖의 방법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이용제공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FTA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배타적인 권리(이용제공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그렇다면 이 규정의 취지는 이용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인터넷 재송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특히 국내법으로 강제허락을 통해 인터넷 재송신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셋째, 다른 국제규범(로마협약, TRIPS)상의 재방송 개념에 비춰 보면, 본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다른 서비스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는 송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렇게 이해할 때 인터넷 재송신 금지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보아 무방하다. 권리의 성격은 금지권이고, 권리의 내용은 텔레비전 신호의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동시 송신이라 할 수 있다. IPTV를 통해 텔레비전 신호를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금지권이 미치지 않는다. IPTV는 의무재송신 의무에 따라 텔레비전 신호를 송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송신이 국내에 한정하는 서비스라면 허용되는 것이다.
- 금지권 행사 주체는 텔레비전 신호에 담긴 저작물, 실연, 음반상의 권리자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신호의 소유자(방송사업자를 상정했다 할 수 있다.) 또한 권리 행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10 집중관리단체



제10.8조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rrangements between their respective collecting societies for the purposes of mutually ensuring easier access and delivery of content between the Parties, as well as ensuring mutual transfer of royalties for use of the Parties' works or other copyright-protected subject matters.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chieve a high level of rationalisation and to improve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of the task of their respective collecting societies.

01 의미

양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장려해야 하고,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2 설명

-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단체는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증가할수록 그 필요성이 커진다. 이 조항은 단체의 존재/활동이 미약한 국가에게 설립 장려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FTA에서는 저작물의 유통을 위해, 사용료의 송금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설립을 장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리단체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단체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한 경영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사용료 분배를 위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11 기술조치



제10.12조

1. 각 당사자는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령과 제10.5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which the person concerned carries out in the knowledge,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such person is pursuing that objective.

2.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gainst the manufacture, import, distribution, sale, rental, advertisement for sale or rental, or possession for commercial purposes, of devices, products or component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which:
 - (a) are promoted, advertised or market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on of;
 - (b)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or
 - (c) are primarily designed, produced, adapted or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or facilitating the circumvention of,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3.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echnological measure means any technology, device or component that, in the normal course of its operation, is designed to prevent or restrict acts, in respect of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which are not authorised by the right holder of any copyright or any right related to copyright as provided for by each Party's legislation. Technological measures shall be deemed effective where the use of a protected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is controlled by the right holde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 access control or protection process, such as encryption, scrambling or other transformation of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or a copy control mechanism, which achieves the objective of protection.
4. Each Party may provide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s 1 and 2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0.5.

01 의미

유럽연합은 우리 국민에게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기술조치란 저작권자나 저작권접권자가 자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기술조치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 해당 조항은 실연과 음반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 방송도 염두에 두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고(접근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이용 통제 기술조치). FTA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보호한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
- 이런 기술조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된다. 하나의 방법은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고의로 우회할 수도 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실로 우회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우회를 주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일 경우 그런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기술조치 그 자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비침해적 이용’에 대해서 기술조치 보호를 무조건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FTA에서는 국내법으로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당사자(유럽연합)에게 강제할 뿐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2 권리관리정보



제10.13조

1. 각 당사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점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without authority any of the following acts:

(a) the removal or alteration of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or

(b) the distribution, importation for distributi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protected under this Agreement from which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if such person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by doing so it is inducing, enabling, facilitating or concealing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any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levant Part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provided by right holders which identifies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the author or any other right holder,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3. Paragraph 2 shall apply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a copy of,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01 의미

유럽연합은 우리 국민에게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권리관리정보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 해당 조항은 실연과 음반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 방송도 염두에 두고 규정하고 있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FTA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당사자(유럽연합)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체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3 권리자 추정



제10.53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접권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한다.

In civi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or entity whose name is indicated as the author or related right holder of the work or subject matter in the usual manner is the designated right holder in such work or subject matter.

01 의미

유럽연합은 우리 저작자나 권리자의 성명·명칭이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권접물에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민사 절차상 그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베른협약에도 입증 편의를 위한 추정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저작자 추정에 그친 것이다. FTA에서는 베른협약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추정의 이익 주체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있다. 둘째,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의 성명·명칭이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단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대상의 권리자로 추정된다. 저작자 추정과 저작(재산)권자 추정은 크게 다르다. 전자는 저작권의 최초 귀속자라는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실제 저작(재산)권자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추정이란 상대방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이 가능한 추정을 말한다. 추정의 이익은 민사 절차에서 누릴 수 있다. 권리자에게는 매우 긴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4 손해배상



제10.50조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사법당국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 나. 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다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에 관여 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전설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damages:
 -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 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 (b) as an alternative to subparagraph (a), they may, i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question.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engage in infringing activity, the Parties may provide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3.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each Party, at least with respect to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may establish or maintain pre-established damages, which shall be available on the election of the right holder.

01 의미

유럽연합은 민사 절차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손해배상은 대표적인 민사 구제 수단이다. TRIPS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FTA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무형의 재산인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는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둘째, 첫째에 갈음해, 권리자가 이용허락했다면 받을 수 있는 사용료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런 특별 규정은 실손해배상을 거스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충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 유럽연합은 저작물, 실연, 음반과 관련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둘 수도 있다. 당사자(유럽연합)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법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손해액으로 정해놓고(예를 들어, 저작물 1건당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다.) 권리자가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침해물의 압류·폐기



제10.47조

1.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간의 비례성의 필요가 고려된다.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damages to the right holder by reason of the infringement, and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estruction of goods that they have found to be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any other measures to definitively remove those goods from the channels of commerce. If appropriat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also orde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implements principally used in the creation or manufacture of those goods.
2.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order that those measures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of the infringer, unless particular reasons are invoked for not doing so.
3. In considering a request for corrective measures, the need for proportionality between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and the remedies ordered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01 의미

유럽연합은 민사 절차상 사법당국이 침해가 판정된 상품의 폐기 또는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침해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TRIPS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판명된 경우 침해 상품이나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제도는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FTA는 TRIPS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 TRIPS 플러스로 보이는 것으로, 폐기나 처분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법당국은 침해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므로(비례성의 원칙), 이 규정이 실효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처분이나 폐기 대상은 침해 상품이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판정되지 않으면 처분이나 폐기를 할 수 없다. 처분이나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수반하지 않는다. 적절한 경우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해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도 폐기 대상이 된다.

16 정보청구권



제10.45조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이 항의 “그 밖의 인”이란 다음의 인을 말한다.

- 1) 상업적 규모로 침해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2) 상업적 규모로 침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3) 침해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하는 것으로 발견된 인, 또는
- 4)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배포나 서비스의 공급에 연루된 것으로 이 호에 언급된 인에 의하여 지목된 인

나. 정보는 적절한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의도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 및 그 밖의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 2) 문제가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획득된 정보로서, 생산, 제조, 배달, 수령 또는 주문된 양과 가격에 관한 것

2. 이 조는 다음의 그 밖의 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가. 권리자에게 더 완전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정

나. 이 조에 따라 전달된 정보를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규정

다. 정보권의 오용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

라. 제1항에 언급된 인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규정, 또는

마. 정보원의 비밀성의 보호 또는 개인자료의 처리를 규율하는 법규정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during civil proceedings concerning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 response to 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quest of the claiman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e infringer and/or any other person which is party to a litigation or a witness therein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origin and distribution networks of the goods or services which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a) “Any other person” in this paragraph means a person who:
 - (i) was found in possession of the infringing goods on a commercial scale;
 - (ii) was found to be using the infringing services on a commercial scale;
 - (iii) was found to be providing on a commercial scale services used in infringing activities; or
 - (iv) was indicated by the person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as being involved in the production, manufacture or distribution of the goods or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 (b) Information shall, as appropriate, comprise:
 - (i)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roducers,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and other previous holders of the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the intended wholesalers and retailers; or
 - (ii) information on the quantities produced, manufactured, delivered, received or ordered, as well as the price obtained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question.
2. This Article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other statutory provisions which:
 - (a) grant the right holder rights to receive fuller information;
 - (b) govern the use in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ed pursuant to this Article;
 - (c) govern responsibility for misuse of the right of information;
 - (d) afford an opportunity for refusing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would force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admit his own participation or that of his close relatives in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 (e) govern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sources 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01 의미

유렵연합은 민사 절차상 사법당국이 침해자, 소송 당사자, 증인에게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02 설명

- 무형의 재산으로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에 관한 정보는 통상적인 민사 절차로는 획득하기 어렵다.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이른바 정보청구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권리자의 정보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침해자가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FTA에서는 정보 제공 의무자와 제공 정보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 정보 제공 의무자로 침해자 이외에도 소송 당사자, 증인이 있다. 이런 사람으로, 상업적 규모로 침해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사람,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에 관여한 사람 등이 있다.
 - 제공 정보는 주로 침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겐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자, 공급자, 도매상의 성명(명칭)과 주소가 있고,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주문, 공급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보가 있다.

17 잠정조치



제10.46조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임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신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침해행위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계속에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간금지명령은 제3자에 의하여 중개자의 서비스가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그중개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다.
2. 중간금지명령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상거래로 유입되거나 상거래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의 압류를 명령하기 위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3.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을 위협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사법당국이 은행계정 및 그 밖의 자산의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행위자의 동산 및 부동산의 예방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may,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issue an interlocutory injunction intended to prevent any imminent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forbid, on a provisional basis and subject, where appropriate, to a recurring penalty payment where provided for by its legislation, the continuation of the alleged infringements of that right, or to make such continuation subject to the lodging of guarantees intended to ensure the compensation of the right holder. An interlocutory injunction may also be issued against an intermediary whose services are being used by a third party to infringe copyright, related rights, trademarks or geographical indications.
2. An interlocutory injunction may also be issued to order the seizure of the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o as to prevent their entry into or movement within the channels of commerce.

3.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f the applicant demonstrates circumstances likely to endanger the recovery of damages, the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e precautionary seizure of the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of the alleged infringer, including the blocking of bank accounts and other assets.

01 의미

유럽연합은 민사 절차상 급박한 침해 예방을 위하여 또는 현존하는 침해를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당국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02 설명

- 잠정조치는 신청에 의해 사법당국이 내리는 잠정명령을 말한다. 잠정조치는 침해의 예방이나 침해의 정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FTA에 따르면, 세 가지 목적의 잠정조치가 있다. 첫째는 침해가 급박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잠정조치이고, 둘째는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 이를 정지하기 위한 목적의 잠정조치이고, 셋째는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 침해 정지 대신 손해배상 담보 제공 목적의 잠정조치이다.
- 사법당국은 잠정조치로서, 침해 의심 상품을 압류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손해를 회복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은행계좌 동결 등 재산을 압류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 잠정조치는 중개자,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 여기서 중개자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TRIPS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8 형사 처벌



제10.54조, 제10.56조, 제10.57조 및 제10.59조

제10.54조

각 당사자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10.56조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원칙에 합치하게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수립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2. 그러한 책임은 그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0.57조

이 관의 규정은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방조 및 교사에 적용된다.

제10.59조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 선고를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Article 10.54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and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Article 10.56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consistent with its legal principl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10.54.
2. Such liability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natural persons who have committed the criminal offences.

Article 10.57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apply to aiding and abetting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10.54.

Article 10.59

Fo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10.54,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penalties that include sentences of imprisonment and/or monetary fines that ar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01 의미

유럽연합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 따르면, 모든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로,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처벌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되, 효과적이고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금고형과 벌금형을 포함해야 한다.
- 법인도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서 법인 처벌을 허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인 처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 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교사범 또는 방조범도 처벌한다.

19 침해물의 압수·몰수



제10.58조 및 제10.60조

제10.58조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의심상품, 위법혐의행위 수행에 주로 사용된 관련 재료 및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증거,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0.60조

1.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과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및/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몰수된 상표위조 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지 아니하다는 조건하에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나아가 이 조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Article 10.58

In case of an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10.5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any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predominantly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alleged offence,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alleged offence and any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infringing activity.

Article 10.60

1. Fo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10.5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confiscation and/or destruction of all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materials and implements predominantly used in the creation of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and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infringing activity.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unterfeit trademark goods and pirated copyright goods that have been confiscated under this Article shall, if not destroyed, be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goods are not dangerous for the health and security of persons.
3. Each Party shall further ensure that confiscation and destruc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kind of the defendant.
4. Each Party may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confiscation of assets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such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infringing activity.

01 의미

- 유럽연합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유럽연합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와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유럽연합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에도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상 이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FTA에서는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고 있다.
 - 유럽연합은 사법당국에게 압수와 몰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압수 대상은 침해 의심 상품, 침해 의심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이다.
 - 몰수와 폐기 대상은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이다.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은 몰수 대상이다. 몰수된 상품은 폐기 대신 유통 경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몰수와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20 OSP 책임 제한



제10.62조부터 제10.66조까지

제10.62조

양 당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0.63조부터 제10.66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10.63조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

나.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제공 행위는, 저장에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아니하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4조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 가.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할 것
 - 나.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 다. 제공자가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라.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마.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 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5조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 가.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또는
 - 나.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가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6조

1. 양 당사자는, 제공자가 제10.63조부터 제10.65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행해진 불법행위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려줄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의무를 수립할 수 있다.

Article 10.62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services of intermediaries may be used by third parties for infringing activities. To ensure the free movement of information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enfo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measures set out in Articles 10.63 through 10.66 for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where they are in no way involved with the information transmitted.

Article 10.63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communication network,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transmitted,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
 - (a) does not initiate the transmission;
 - (b) does not select the receiver of the transmission; and
 - (c) does not select or mod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
2. The acts of transmission and of provision of ac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e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the information transmitted in so far as such storage takes place for the sol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transmission in the communication network, and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s not stored for any period longer than is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transmission.
3.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legal systems, of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Article 10.64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that information, performed for the sole purpose of making more efficient the information's onward transmission to other recipients of the service upon their request,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
 - (a) does not modify the information;
 - (b) complies with conditions on access to the information;
 - (c) complies with rules regarding updating of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 manner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
 - (d)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awful use of technology,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 to obtain data on the use of the information; and
 - (e)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it has stored upon obtaining actual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at the initial source of the transmission has been removed from the network,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that a judicial or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ordered such removal or disablement.
2.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legal systems, of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Article 10.65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storage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
 - (a)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nt; or
 - (b)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n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is acting under the authority or the control of the provider.
3.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legal systems, of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nor does it affect the possibility of the Parties establishing procedures governing the removal or disabling of access to information.

Article 10.66

1. The Parties shall not impose a general obligation on providers, when providing the services covered by Articles 10.63 through 10.65, to monitor the information which they transmit or store, nor a general obligation to actively seek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ing illegal activity.
2. The Parties may establish obligations for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to promptly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lleged illegal activities undertaken or information provided by recipients of their service, or to communicat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their request,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recipients of their service with whom they have storage agreements.

01 의미

양 당사자는 일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복제나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정보(저작물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서비스제공자에는 단순 도관 서비스, 캐싱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가 있다.
 - 도관 서비스란 정보(저작물 등)를 송신하거나 라우팅하거나 연결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캐싱 서비스란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정보를 컴퓨터(캐싱 서버)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호스팅 서비스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책임 제한의 조건은 서비스 유형마다 다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 도관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송신을 개시하지 않고, 둘째, 송신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고, 셋째, 송신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 캐싱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정보 접근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셋째,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정보 업데이트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정보 이용에 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정보가 원사이트에서 제거되거나 접근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사법·행정당국이 그러한 제거 또는 금지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침해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침해 주장 통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이 생기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칠레편



한·칠레 FTA 체결 경과

- 2004. 04. 01. : 한·칠레FTA 발효
- 2004. 02. 16. : 한·칠레 FTA 국회 본회의 통과
- 2003. 02. 15. : 한·칠레 FTA 서명(서울)
- 2003. 02. 15. : 한·칠레 FTA 정식 서명(서울)
- 2002. 10. 25. : 한·칠레 FTA 협상 타결(서울 및 산티아고)
- 1999. 09. : 한·칠레 FTA 추진에 합의

한·칠레 FTA의 특징

- 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정하였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칠레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 해야한다.
- 또한, 칠레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의무와 TRIPS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2019. 10. 현재 FTA 개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칠레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6.1조 제2항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지적 재산권에관한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To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ach Party shall faithful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has acceded to, including the TRIPS Agreement.

01 의미

칠레는 자신이 가입한 TRIPS를 포함하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02 설명

-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칠레는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칠레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즉 TRIPS 등 자신이 비준·가입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FTA를 위반하는 것이다. FTA 다른 규정들을 위반하더라도 물론 FTA를 위반하는 것이다.
 - 칠레는 FTA 발효일(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비준·가입했다. 칠레는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제 FTA에 이들 조약 이행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이중의 조약 준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우리 국민은 칠레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6.2조

당사국은 국내법으로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Party may implement in its domestic law more exten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i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protection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d the TRIPS Agreement.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지켜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는 칠레에 TRIPS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TRIPS는 베른협약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칠레는 베른협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베른협약은 협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칠레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칠레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약이므로 그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TRIPS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고,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들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칠레는 이 협정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협정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한다.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칠레)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칠레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넷째, 칠레는 FTA상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TRIPS 플러스 요소일뿐만 아니라 WCT, WPPT에도 없는,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작자든 다른 권리자든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 한편, 칠레가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WCT,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칠레는 이들 조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칠레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칠레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칠레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규정은 없다.

03 복제권·배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 등 여러 조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칠레가 비준·가입한 여러 조약에서는 권리자에게 각기 성격이 다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복제권과 관련한 규정들에 따르면, 저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베른협약, TRIPS, WCT), 실연자는 금지권(로마협약과 TRIPS) 또는 배타적인 권리(WPPT)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배타적인 권리(로마협약) 또는 금지권(TRIPS)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로마협약, TRIPS, WPPT).
- 일부 조약에서는 배포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하고(WCT),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WPPT).
-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체약국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조약에서 금지권을 부여하더라도 체약국이 이를 배타적 권리로 변경할 수도 있다.
- 복제란 유형의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쇄, 복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종이책에 인쇄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디지털 방식)도 있다.
- 배포란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복제물이 유형의 앨범으로 거래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포권을 주장할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 WC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들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베른협약, TRIPS). 또한 방송권뿐만 아니라 이용 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향유한다(WCT).
- 베른협약과 TRIPS상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WCT에서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했다. 첫째, 공중전달의 개념에 유선 송신도 포함시키고 있고, 둘째,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권리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즉 이용제공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주문형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제공의 예로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05 실연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실연자는 WPPT상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 실연자는 재산적 권리로서 로마협약, TRIPS 및 WPPT에 따라 여러 종류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실연자는 생실연(비고정 실연)의 경우와 고정 실연의 경우에 따라 다른 권리를 향유한다.
- 실연자는 생실연의 경우 고정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TRIPS, WPPT). 로마협약과 TRIPS에서는 권리의 성격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 반면 고정 실연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을 가지고(로마협약, TRIPS, WPPT), 배포권과 이용제공권(WPPT)도 가진다. 로마협약과 TRIPS에서는 복제권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WPPT상으로 배포권과 이용제공권도 배타적인 권리이다. 실연자는 또한 실연이 담긴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 실연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이들 조약은 음반제작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복제권(로마협약, TRIPS, WPPT), 배포권(WPPT), 이용제공권(WPPT)을 가진다.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 음반제작자는 또한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 음반제작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로마협약과 TRIPS는 방송사업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고정권, 복제권, 재방송권을 가진다. 로마협약상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지만, TRIPS에서는 금지권에 불과하다. 로마협약에 의하면,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08 보호 기간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베른협약, TRIPS, WCT).
- 실연자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실연이나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와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다. WPPT는 계산 기준을 고정으로 단일화했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제작(고정)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와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다. WPPT는 계산 기준을 발행 또는 고정으로 변경했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방송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

09 기술조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대로,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WCT와 WPPT는 체약국에 대해, 저작자(WCT)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WPPT)가 강구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기술조치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각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WCT와 WPPT는 체약국에게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뿐 어떤 종류의 기술조치를 보호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용 통제에 한정해 기술조치를 보호하는 국가도 있고, 접근 통제 기술조치와 이용 통제 기술조치를 모두 보호하는 국가도 있다.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조치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하겠다.

10 권리관리정보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대로,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WCT와 WPPT는 체약국에 대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이 제거·변경된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11 집행 일반



제16.5조

양 당사국은 자국 법에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중 특히 제41조 내지 제61조에 합치하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규정한다.

The Parties shall provide in their respective law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stent with the TRIPS Agreement, in particular, Articles 41 to 61 thereof.

01 의미

양 당사국은 TRIPS상 집행규정 이행을 위해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TRIPS 집행규정(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지 지식재산권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TRIPS 집행규정에 합치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FTA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권리자 추정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저작자 추정 규정을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베른협약은 입증 편의를 위해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자는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저작자로 추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런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입증 책임의 전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긴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한편, TRIPS는 저작권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저작권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TRIPS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TRIPS는 또한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속한다.

14 침해물의 압류·폐기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상의 침해 상품의 처분 및 폐기 규정을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침해 상품의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사법당국은 어떤 상품을 침해 상품으로 판단하면 침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협정은 또한 침해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15 정보청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TRIPS에서 규정한 정보청구권을 민사, 행정 절차상 부여할 수 있다.

02 설명

- TRIPS는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권리자가 침해자로부터 침해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제3자에 관한 정보,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임의 규정으로, 회원국은 재량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규정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상습 침해와 불법 복제물의 대량 유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16 잠정조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에서 규정한 잠정조치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 TRIPS는 사법당국에 일방적 잠정조치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절차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가 회복할 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사법당국에 적지않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TRIPS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7 형사 처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상의 형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처벌은 저작권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과 벌금형을 포함한다.

18 침해물의 압수·몰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칠레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에서 규정한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침해 상품이나 침해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또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는 그 재료와 도구가 침해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IV

싱가포르편



한·싱가포르 FTA 체결 경과

- 2006. 03. 02. : 한·싱가포르 FTA 발효
- 2005. 12. 01. : 한·싱가포르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05. 08. 04. : 한·싱가포르 FTA 정식서명
- 2005. 04. 16. : 한·싱가포르 FTA 가서명(싱가포르)
- 2004. 11. 29. :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 2003. 10. 23. : 한·싱가포르 FTA 협상개시 선언(서울)

한·싱가포르 FTA의 특징

- 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다.
- 다만, TRIPS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싱가포르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7.2조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Each Party re-affirms its obligations under TRIP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상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이 조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 싱가포르의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즉, 그 보호수준은 적어도 TRIPS 실체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싱가포르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7.2조 및 제17.4조

제17.2조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17.4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Article 17.2

Each Party re-affirms its obligations under TRIP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Article 17.4

Each Party may implement in its domestic laws more exten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i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protection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d the TRIPS Agreement.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싱가포르로 하여금 우리 국민에게 TRIPS에 따른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TRIPS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TRIPS는 베른협약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는 베른협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베른협약은 협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싱가포르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약이므로 그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TRIPS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고,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들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이 협정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협정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한다.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싱가포르)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한편, 싱가포르가 비준·가입한 WCT,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싱가포르는 이들 조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싱가포르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더 광범위한 보호’ 규정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정은 없다.

03 복제권·배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베른협약 실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베른협약은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자는 베른협약에 따라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진다. 실연자와 방송사업자는 TRIPS에 따라, 복제에 대해 금지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 협정상의 권리는 체약국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조약에서 금지권을 부여하더라도 체약국이 이를 배타적 권리로 변경할 수도 있다.
- 복제란 유형의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쇄, 복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종이책에 인쇄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디지털 방식)도 있다.
- 배포란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복제물이 유형의 앨범으로 거래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포권을 주장할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공중전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베른협약 실제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베른협약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 여기서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05 실연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이 협정에서 규정한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실연자는 생실연(비고정 실연)의 경우와 고정 실연의 경우에 따라 다른 권리를 향유한다. 생실연의 경우 고정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고정 실연의 경우 복제권을 가진다. 이들 권리는 금지권에 지나지 않는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이 협정에서 규정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TRIPS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을 가진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이 협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방송사업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 협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고정권, 복제권, 재방송권을 가진다. 이들 권리는 금지권에 불과하다.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고 본다.

08 보호 기간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이 협정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베른협약 실제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베른협약은 실제규정의 하나로 보호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
- TRIPS에 따르면, 저작권접권자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실연자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실연이나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제작(고정)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방송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

09 집행 일반



제17.3조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게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한다.

The Parties shall, consistent with the TRIPS Agreement,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ir respective laws.

01 의미

양 당사국은 TRIPS상 집행규정 이행을 위해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TRIPS 집행규정(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지 지식재산권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TRIPS 집행규정에 합치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FTA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권리자 추정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에서 규정한 저작자 추정 규정을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베른협약 실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베른협약 실체규정의 하나로 '저작자 추정' 규정이 있다. 이는 소송상 입증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저작자는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저작자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런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입증 책임의 전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1 손해배상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한편, TRIPS는 저작권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저작권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TRIPS는 또한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속한다.

12 침해물의 압류·폐기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상의 침해 상품의 처분 및 폐기 규정을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침해 상품의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사법당국은 어떤 상품을 침해 상품으로 판단하면 침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협정은 또한 침해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13 정보청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이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청구권을 민사, 행정 절차상 부여할 수 있다.

02 설명

- TRIPS는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권리자가 침해자로부터 침해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제3자에 관한 정보,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임의 규정으로, 회원국은 재량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규정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상습 침해와 불법 복제물의 대량 유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14 잠정조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에서 규정한 잠정조치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 TRIPS는 사법당국에 일방적 잠정조치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절차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사법당국에 적지 않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TRIPS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5 형사 처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상의 형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처벌은 저작권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과 벌금형을 포함한다.

16 침해물의 압수·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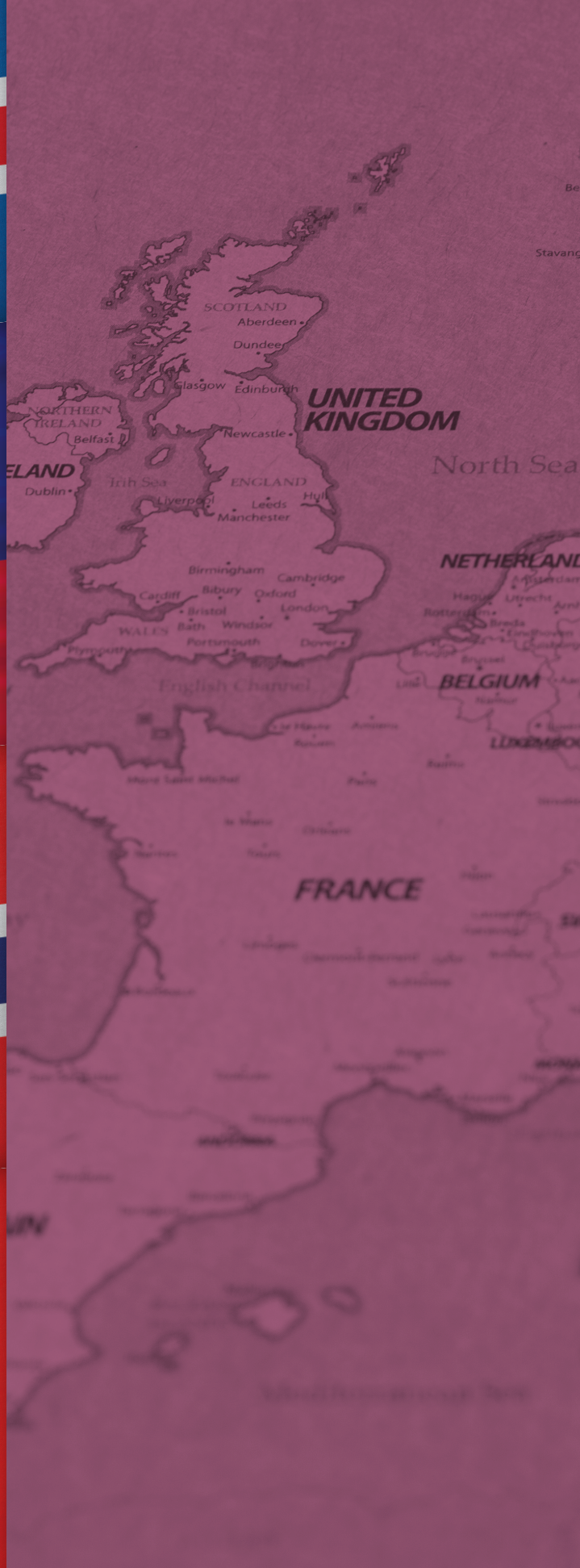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싱가포르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에서 규정한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침해 상품이나 침해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또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는 그 재료와 도구가 침해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V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편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 경과

- 2005. 12. 15. : 한·유럽자유무역연합 양국 통상 장관 간 공식 서명
- 2005. 09. 13. :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가서명
- 2004. 12. 16. :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협상개시 공동선언(제네바)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특징

- 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다.
- 다만, TRIPS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TRIPS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국가명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스위스	○	○	○	○	○	-	-
	노르웨이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리히텐슈타인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부속서 XIII 제1조

1. 당사국들은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특히 다음의 다자 협정에서 규정된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 가. 「1994년 4월 15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TRIPS)」
 - 다. 「1886년 9월 9일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도 파리 의정서)
2. 아래에 기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들은 늦어도 2008년도까지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의 실제적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제네바 1996년도)
 -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제네바 1996년도). 그리고
 - 다. 「1961년 10월 26일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조직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로마 협약)

1. The Parties reaffirm their obligation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ultilateral agreements:
 - (a) WTO Agreement of 15 April 1994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c) Berne Convention of 9 September 1886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Paris Act, 1971).
2. The Parties that are not party to one or more of the multilateral agreements listed below, shall ratify or accede to them, or shall apply their substantive standards, at the latest by 2008:

(a)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Geneva 1996);

(b) WIPO Copyright Treaty (Geneva 1996); and

(c) International Convention of 26 October 1961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Rome Convention).

01 의미

- 양 당사자는 자신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TRIPS, 베른협약 등 저작권/저작인접권 조약상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 양 당사자는 2008년까지 WCT, WPPT, 로마협약을 비준·가입하거나 이들 조약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 설명

- 제1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은 외국과 독자적으로 통상 협상을 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다. 공식 명칭(“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것이다.
 - FTA에서 ‘당사자’라고 할 때에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FTA에 참여한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 등 4개국이 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모두 FTA 발효일(2006년 9월 1일) 기준으로 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베른협약, TRIPS를 비준·가입했다. 이들 회원국의 비준·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게되고 동의했으므로, FTA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조약 비준·가입 조항(제2항)에서 요구한 대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2008년까지 WCT, WPPT 및 로마협약을 비준·가입하거나 이들 조약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TA에서는 비준·가입이나 실체규정 준수를 선택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는 2008년까지 이들 3개 조약을 모두 비준·가입했으나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로마협약만을 비준·가입했다.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는 이들 조약을 비준·가입했으므로 그것으로 FTA를 이행한 것이지만,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WCT와 WPPT의 실체규정을 준수해야만 FTA를 이행한 것이 된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유럽자유무역연합(정확하게는 그 회원국)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1. 당사국들은 이 조·부속서 XIII과 부속서 XIII에서 규정된 국제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RIPS"이라 한다)의 제3조 및 제5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The Parties shall grant and ensure adequate, effective and non-discriminator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vide for measures for the enforcement of those rights against infringement, including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as well as Annex XIII and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therein.
2. The Parties shall accord to each other's national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treatment they accord to their own nationals. Exemptions from this obligation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Articles 3 and 5 of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IPS Agreement").

01 의미

양 당사자는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에 따라,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당사자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TRIPS, 베른협약, WCT, WPPT, 로마협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베른협약, TRIPS, WCT에는 모두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한다. 이들 조약은 조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저작권접권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TRIPS(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한다. 이들 조약에서는 조약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해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 국가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권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규정은 없다.

03 복제권·배포권

칠레편 '복제권·배포권' 참조.

04 저작자의 권리

칠레편 '저작자의 권리' 참조.

05 실연자의 권리

칠레편 '실연자의 권리' 참조.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칠레편 '음반제작자의 권리' 참조.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칠레편 '방송사업자의 권리' 참조.

08 보호 기간

칠레편 '보호 기간' 참조.

09 기술조치

칠레편 '기술조치' 참조.

10 권리관리정보

칠레편 '권리관리정보' 참조.

11 집행 일반



부속서 XIII 제7조

당사국들은 TRIPS, 특히 그 협정 제41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에 집행규정을 규정한다.

The Parties shall provide for enforcement provisions under their nation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in particular Articles 41 to 61 thereof.

01

칠레편 '집행 일반' 참조.

의미 및 설명





VI

인도편



한·인도 FTA 체결 경과

- 2010. 01. 01. : 한·인도 FTA 발효
- 2009. 11. 06. : 한·인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09. 08. 26. : 한·인도 FTA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 2009. 08. 07. : 한·인도 FTA 정식서명
- 2009. 02. 09. : 한·인도 FTA 가서명
- 2008. 09. 25. : 협상 실질적 타결
- 2006. 02. 07. : 한·인도 FTA 협상개시 선언

한·인도 FTA의 특징

- 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다.
- 다만, TRIPS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인도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2.2조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Each Party reaffirm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at Agreement,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national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01 의미

인도는 TRIPS상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이 조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 인도는 TRIPS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즉, 그 보호수준은 적어도 TRIPS 실체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인도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2.2조 및 제12.3조

제12.2조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12.3조

각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부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과 불합치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2.2

Each Party reaffirm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at Agreement,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national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Article 12.3

Each Party may provide in its laws more exten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is accorded under the TRIPS Agreement, provided that it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01 의미

인도는 TRIPS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인도로 하여금 우리 국민에게 TRIPS에 따른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TRIPS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TRIPS는 베른협약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도는 베른협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베른협약은 협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결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인도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인도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약이므로 그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TRIPS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고,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들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 협정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협정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한다.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인도)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한편, 인도가 비준·가입한 WCT,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인도는 이들 조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인도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인도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인도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인도와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더 광범위한 보호’ 규정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정은 없다.

03 복제권·배포권

싱가포르편 '복제권·배포권' 참조.

04 저작자의 권리

싱가포르편 '저작자의 권리' 참조.

05 실연자의 권리

싱가포르편 '실연자의 권리' 참조.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싱가포르편 '음반제작자의 권리' 참조.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싱가포르편 '방송사업자의 권리' 참조.

08 보호 기간

싱가포르편 '보호 기간' 참조.

09 집행 일반



제12.4조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게 자국 법률에 규정한다.

The Parties shall provide in their respective law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stent with the TRIPS Agreement.

01 의미

양 당사국은 TRIPS상 집행규정 이행을 위해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TRIPS 집행규정(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지 지식재산권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TRIPS 집행규정에 합치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FTA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과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10 권리자 추정

싱가포르편 '권리자 추정' 참조.

11 손해배상

싱가포르편 '손해배상' 참조.

12 침해물의 압류·폐기

싱가포르편 '침해물의 압류·폐기' 참조.

13 정보청구권

싱가포르편 '정보청구권' 참조.

14 잠정조치

싱가포르편 '잠정조치' 참조.

15 형사 처벌

싱가포르편 '형사 처벌' 참조.

16 침해물의 압수·몰수

싱가포르편 '침해물의 압수·몰수' 참조.





VII

페루편



한·페루 FTA 체결 경과

- 2011. 08. 01. : 한·페루 FTA 발효
- 2011. 06. 07. :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 2011. 03. 21. : 한·페루 FTA 서명(서울)
- 2010. 11. 15. : 한·페루 FTA 가서명(서울)
- 2010. 08. 30. : 한·페루 FTA 협상 타결
- 2009. 03. 16. : 제1차 한·페루 FTA 협상 개최(서울)

한·페루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페루 FTA 제17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규정(제17.1~17.4조), 실체규정(제17.7조) 집행규정(제17.8~제17.9조), 경과 규정(제17.10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및 WPPT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방송사업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집행규정은 구체적 내용 없이 TRIPS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페루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7.2조 및 제17.7조

제17.2조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 관장하는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 관련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17.7조

8. 양 당사국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 따른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Article 17.2

1. The Parties affirm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s well as under any other multilateral agree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he agreements administer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PO"), that are in forc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7.7

8. The Parties shall affirm the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the Rome Convention,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01 의미

양 당사국은 자신들에게 효력이 있는 TRIPS 및 다른 저작권/저작권접권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02 설명

- 권리·의무 확인 조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그럼에도, FTA에서 TRIPS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규정(예를 들어, FTA에서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FTA상의 의무와는 단절된, 단순한 확인에 그치고 있다.
- 페루는 FTA 발효일(2011년 8월 1일) 기준으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비준·가입했다. 페루는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고 동의했으므로, FTA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페루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7.3조 및 제17.4조

제17.3조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양국 각각의 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7.4조

3.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지적재산의 보호에 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Article 17.3

The Parties may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ir respective laws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Article 17.4

3. The Parties shall accord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bject to the exceptions provided in Articles 3 and 5 of the TRIPS Agreement.

01 의미

양 당사국은 TRIPS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상대 당사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페루가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페루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페루는 FTA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내용의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에는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에 있는 규정과 같은 취지의 유사한 규정도 있고, 이들 조약에도 없는 규정도 있다. 이런 규정들은 모두 TRIPS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런 규정들에 적용된다.
 - 둘째, FTA에서는 당사국(페루)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루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한편, 페루가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페루가 이들 조약상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페루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권리의 향유와 행사, 집행 등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권리의 발생과 향유, 권리의 취득과 유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로 인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페루와의 FTA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17.7조 제6항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broadcasting organizations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 (a) the re-broadcasting of their broadcasts;
- (b) the fixation of their broadcasts; and
- (c) the reproduction of fixations, made without their consent, of their broadcasts.

01 의미

페루는 우리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권, 고정권 및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FTA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재방송권, 고정권, 복제권으로, 로마 협약상 같은 성격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들 권리의 내용도 같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04 보호 기간



제17.7조 및 제17.7조

제17.7조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송신부터 50년 이후에 만료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 1)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 2)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Article 17.7

4. The rights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shall expire not less than 50 years after the transmission of a broadcast, whether this broadcast is transmitted by wire or over the air, including by cable or satellite.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the term of protection of a work (including a photographic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s to be calculated:
 - (a) on the basis of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not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70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 and

(b) on a basis other than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 (i)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authorized publ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 (ii) failing such authorized publication within 50 year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01 의미

- 페루는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를 70년간 보호해야 한다.
- 페루는 우리 방송사업자를 50년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물, 실연, 음반 모두 70년간 보호된다. 보호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로부터, 실연의 경우 실연한 때로부터, 음반의 경우 고정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 보호 기간의 계산 기준은 보호 시점과는 다르다.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인접물과 자연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행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작을 기준으로 한다.
-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보호 기간은 사망 후 70년간, 발행 후 70년간, 창작 후 50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간이다. 보호 기간은 사망, 발행, 창작 해당 연도 말(다음 해 1월 1일)부터 산정한다.
- 종합해보면, 70년이란 보호 기간은 그 기준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호 시점으로부터 최소 70년간(권리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같은 해 사망하는 경우), 최대 120년간(법인저작물이 창작한 지 50년이 지나 발행되는 경우) 또는 그 이상(권리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5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 보호될 수도 있다.
- 방송은 50년간 보호된다. 보호는 방송한 때부터 시작한다.

05 인터넷 재송신 금지



제17.7조 제5항

어느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Neither Party may permit the retransmission of television signals (whether terrestrial, cable, or satellite) on the Internet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or right holders, if any, of the content of the signal and of the signal.

01 의미

페루는 우리 권리자의 허락 없이 텔레비전 신호의 인터넷 재송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02 설명

- 페루 내에서 텔레비전 신호가 인터넷으로 재송신되고, 그런 재송신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FTA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신호 어떤 것이든(지상파 신호이든, 케이블 신호이든, 아니면 위성 신호이든) 재송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FTA에서는 재송신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 규정의 취지는 이용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인터넷 재송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특히 국내법으로 강제허락을 통해 인터넷 재송신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둘째, 다른 국제규범(로마협약, TRIPS)상의 재방송 개념에 비추어 보면, 본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다른 서비스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는 송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렇게 이해할 때 인터넷 재송신 금지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보아 무방하다. 권리의 성격은 금지권이고, 권리의 내용은 텔레비전 신호의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동시 송신이라 할 수 있다. IPTV를 통해 텔레비전 신호를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금지권이 미치지 않는다. IPTV는 의무재송신 의무에 따라 텔레비전 신호를 송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송신이 국내에 한정하는 서비스라면 허용되는 것이다.
- 금지권 행사 주체는 텔레비전 신호에 담긴 저작물, 실연, 음반상의 권리자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신호의 소유자(방송사업자를 상정했다 할 수 있다.) 또한 권리 행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06 집중관리단체



제17.7조 제9항

양 당사국은 사용료가 각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우수한 영업 관행 체제에서 양 당사국 권리자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사용에 비례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The Parties will endeavor to promote the activities of collective management associations of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for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royalties, so that they may be fair and proportional to the use of the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or broadcasts of the right holders of the Parties, in a transparent and good business practices frame,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egislation.

01 의미

양 당사국은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02 설명

-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해 긴요한 조직이다. 이런 단체는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증가할수록 그 필요성이 커진다. 이 조항은 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국가에서 그 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관련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FTA에서는 집중관리단체의 활동과 관련해, 두 가지를 페루에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단체가 투명성에 입각해 업무를 하도록 단체를 독려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용료의 분배는 비례성과 공정성에 합당하도록 단체를 독려해야 한다. 이런 단체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한 경영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사용료 분배를 위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07 집행 일반



제17.8조 제1항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The Parties shall establish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ir domestic laws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in particular Articles 41 through 61.

01

싱가포르편 '집행 일반' 참조.

의미 및 설명

08 권리자 추정

싱가포르편 '권리자 추정' 참조.

09 손해배상

싱가포르편 '손해배상' 참조.

10 침해물의 압류·폐기

싱가포르편 '침해물의 압류·폐기' 참조.

11 정보청구권

싱가포르편 '정보청구권' 참조.

12 잠정조치

싱가포르편 '잠정조치' 참조.

13 형사 처벌

싱가포르편 '형사 처벌' 참조.

14 침해물의 압수·몰수

싱가포르편 '침해물의 압수·몰수' 참조.





VIII

터키편



한·터키 FTA 체결 경과

- 2018. 08. 01. : 한·터키 FTA 발효
- 2015. 11. 30.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 02. 26. : 한·터키 FTA 정식서명(서울)
- 2014. 09. 18. : 한·터키 FTA 가서명(앙카라)
- 2014. 07. 04. :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 2010. 03. 19. : 한·터키 FTA 협상 출범(앙카라)

한·터키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터키 FTA 제2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규정(제2.1조), 실체 규정(제2.2조), 집행 규정(제2.5조), 협력 규정(제2.6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및 WPPT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 규정에는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TRIPS에 따라 집행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도록 하고,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터키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2.1조 및 제2.2조

제2.1조

2.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국인 지식재산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이 장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제2.2조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61)(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항
 - 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항
 -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항, 그리고
 -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항

Article 2.1

2. The Parties shall ensure an adequat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aling with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they are party, including the TRIPS Agreement. This Chapter shall complement and spec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under the TRIPS Agreement.

Article 2.2

1. The Parties shall comply with:

- (a) Articles 1 through 2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me Convention”);
- (b) Articles 1 through 18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rne Convention”);
- (c) Articles 1 through 14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IPO”) Copyright Treaty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CT”); and
- (d) Articles 1 through 23 of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PPT”).

01 의미

- 양 당사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TRIPS를 포함하는 저작권 조약들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 양 당사국은 로마협약, 베른협약, WCT, WPPT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 설명

- 제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터키는 자신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조약들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행 보장’이란 조약 이행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터키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즉 TRIPS를 포함한 저작권 조약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FTA를 위반하는 것이다. FTA 다른 규정들을 위반하더라도 물론 FTA를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이 조항에서는 FTA 저작권 규정이 TRIPS상의 권리·의무를 보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FTA가 TRIPS 플러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터키는 저작권 규정이 포함된 기본협정 발효일(2013년 5월 1일) 기준으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비준·가입했다. 터키는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제 FTA에 이들 조약 이행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이중의 조약 준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우리 국민은 터키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제2.2조 제1항은 로마협약, 베른협약, WCT, WPPT 실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베른협약과 WCT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로마협약과 WPPT는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모두 저작권 분야 기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약에서는 일정한 기준들을 정해놓고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해 당사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체규정이란 이런 기준들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제2.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 실체규정 준수 의무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터키는 이들 조약 비준·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조약상의 실체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터키는 기본협정 발효일 기준으로 이들 조약을 모두 비준·가입했으므로 일견 실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 국내법에 조약 실체규정과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으로 FTA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이들 조약 실체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FTA 위반이 된다. 단지 조약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02 내국민대우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지켜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는 터키에 베른협약, TRIPS, WCT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들 조약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하므로, 터키는 이들 조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베른협약, TRIPS, WCT는 이들 조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터키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FTA는 저작권접권 보호를 위해, 터키에 로마협약, TRIPS(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WPPT 이행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는 이들 조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조약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들 조약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한다.
- 셋째, 터키는 FTA상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TRIPS 플러스 요소일뿐만 아니라 WCT, WPPT에도 없는,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작자든 다른 권리자든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 이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터키가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터키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권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터키와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복제권·배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터키가 비준·가입한 여러 조약에서는 권리자에게 각기 성격이 다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복제권과 관련한 규정들에 따르면, 저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베른협약, TRIPS, WCT), 실연자는 금지권(로마협약과 TRIPS) 또는 배타적인 권리(WPPT)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배타적인 권리(로마협약) 또는 금지권(TRIPS)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로마협약, TRIPS, WPPT).
- 일부 조약에서는 배포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하고(WCT),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WPPT).

-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체약국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조약에서 금지권을 부여하더라도 체약국이 이를 배타적 권리로 변경할 수도 있다.
- 복제란 유형의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쇄, 복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종이책에 인쇄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디지털 방식)도 있다.
- 배포란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복제물이 유형의 앨범으로 거래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포권을 주장할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 WC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베른협약, TRIPS). 또한 방송권뿐만 아니라 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향유한다(WCT).
- 베른협약과 TRIPS상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WCT에서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했다. 첫째, 공중전달의 개념에 유선 송신도 포함시키고 있고, 둘째,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권리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즉 이용제공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주문형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제공의 예로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05 실연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실연자는 WPPT상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 실연자는 재산적 권리로서 로마협약, TRIPS 및 WPPT에 따라 여러 종류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실연자는 생실연(비고정 실연)의 경우와 고정 실연의 경우에 따라 다른 권리를 향유한다.
- 실연자는 생실연의 경우 고정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TRIPS, WPPT). 로마협약과 TRIPS에서는 권리의 성격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 반면 고정 실연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을 가지고(로마협약, TRIPS, WPPT), 배포권과 이용제공권(WPPT)도 가진다. 로마협약과 TRIPS에서는 복제권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WPPT상으로 배포권과 이용제공권도 배타적인 권리이다. 실연자는 또한 실연이 담긴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 실연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이들 조약은 음반제작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복제권(로마협약, TRIPS, WPPT), 배포권(WPPT), 이용제공권(WPPT)을 가진다.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 음반제작자는 또한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 음반제작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로마협약과 TRIPS는 방송사업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고정권, 복제권, 재방송권을 가진다. 로마협약상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지만, TRIPS에서는 금지권에 불과하다. 로마협약에 의하면,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08 보호 기간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베른협약, TRIPS, WCT).
- 실연자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실연이나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와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다. WPPT는 계산 기준을 고정으로 단일화했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제작(고정)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와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다. WPPT는 계산 기준을 발행 또는 고정으로 변경했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방송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

09 기술조치



제2.2조 제2항

각 당사국은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들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right holders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each Party's domestic laws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s, which are not authorised by the right holders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concerned or permitted by the law of a Party.

01 의미

터키는 우리 국민에게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이 조항들은 WCT와 WPPT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목적의, 유사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터키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WPPT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한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FTA는 방송사업자도 포함해 보호한다.)가 강구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기술조치란 저작자, 저작인접권자가 각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고(이용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접근 통제 기술조치). FTA 체결 당시의 기술조치 현황을 감안하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FTA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로 이해된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터키)에게 강제할 뿐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보호 방법으로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고,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양자를 모두 금지할 수도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0 권리관리정보



제2.2조

3. 각 당사국은 인이 권한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5. 제4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without authority any of the following acts:

(a) the removal or alteration of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or

(b) the distribution, importation for distributi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protected under the Korea-Turkey FTA from which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if such person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by doing so it is inducing, enabling, facilitating or concealing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any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levant Party.

4. For the purposes of the Korea–Turkey FTA,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provided by right holders which identifies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referred to in the Korea–Turkey FTA, the author or any other right holder,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5. Paragraph 4 shall apply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a copy of,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referred to in the Korea–Turkey FTA.

01 의미

터키는 우리 국민에게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권리관리정보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 해당 조항은 실연과 음반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 방송도 염두에 두고 규정하고 있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FTA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당사자(터키합)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체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1 집행 일반



제2.5조 제1항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에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Each Party shall establish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ts domestic laws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in particular Articles 41 through 61.

01 의미

터키는 TRIPS상 집행 규정 이행을 위해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TRIPS 집행 규정(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지 지식재산권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TRIPS 집행 규정에 합치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FTA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권리자 추정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저작자 추정 규정을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베른협약은 입증 편의를 위해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자는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저작자로 추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런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입증 책임의 전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긴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한편, TRIPS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TRIPS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TRIPS는 또한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속한다.

14 침해물의 압류·폐기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상의 침해 상품의 처분 및 폐기 규정을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침해 상품의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사법당국은 어떤 상품을 침해 상품으로 판단하면 침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TRIPS는 또한 침해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15 정보청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TRIPS에서 규정한 정보청구권을 민사, 행정 절차상 부여할 수 있다.

02 설명

- TRIPS는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권리자가 침해자로부터 침해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제3자에 관한 정보,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임의 규정으로, 회원국은 재량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규정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상습 침해와 불법 복제물의 대량 유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16 잠정조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에서 규정한 잠정조치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 TRIPS는 사법당국에 일방적 잠정조치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절차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가 회복할 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사법당국에 적지않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TRIPS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7 형사 처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상의 형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처벌은 저작권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과 벌금형을 포함한다.

18 침해물의 압수·몰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터키는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TRIPS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TRIPS에서 규정한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침해 상품이나 침해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또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는 그 재료와 도구가 침해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19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2.5조 제2항

자국의 국내법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Without prejudice to its domestic laws, each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to curtail repeated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01 의미

터키는 인터넷상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디지털 환경에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해 FTA에서는 당사국(터키)에 반복침해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FTA에서는 어떤 성격의 반복침해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표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규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IX

콜롬비아편



한·콜롬비아 FTA 체결 경과

- 2016. 07. 15. : 한·콜롬비아 FTA 발효
- 2014. 04. 29. : 한·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 2013. 02. 21. : 한·콜롬비아 FTA 서명(서울)
- 2012. 08. 31. :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서울)
- 2012. 06. 25. : 한·콜롬비아 FTA 타결(보고타)
- 2009. 12. 07. : 제1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서울)

한·콜롬비아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콜롬비아 FTA 제1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칙(제15.1~15.5조), 실체규정(제15.7조) 집행규정(제15.8~15.9조), 경과 규정(제15.9~제15.10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및 WPPT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등을 규정하였으며,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한편으로, 기술조치·권리관리정보·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 집행규정에는 권리 추정을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 제도와 온라인 상습 침해를 억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콜롬비아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5.2조 및 제15.7조

제15.2조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뿐 아니라 양 당사국 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관련 다자 협정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15.7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베른협약)
- 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 (로마협약)
-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 그리고
-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1996)

Article 15.2

The Parties 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s well as any other multilateral agree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greements administer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PO"), that are in forc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5.7

1.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 (a)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the Berne Convention);
- (b)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61) (the Rome Convention);
- (c) the WIPO Copyright Treaty (1996); and
- (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01 의미

- 양 당사국은 자신들에게 효력이 있는 TRIPS 및 다른 저작권/저작인접권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 콜롬비아는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 설명

- 제15.2조는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FTA에서 TRIPS와 연계하는 규정(예를 들어, FTA에서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구절)은 없으나, 다른 조약(로마협약, 베른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TRIPS와 간접적으로 연결시켰다. TRIPS는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의 실체규정을 거의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에는 이에 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조약들에 없는 새로운 규정도 있다.
 - 콜롬비아는 FTA 발효일(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비준·가입했다. 콜롬비아는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FTA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15.7조 제1항은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실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베른협약과 WCT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로마협약과 WPPT는 저작권접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모두 저작권 분야 기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약에서는 일정한 기준들을 정해놓고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저작권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해 당사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체규정이란 이런 기준들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제15.7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 실체규정 준수 의무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콜롬비아는 이들 조약 비준·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조약상의 실체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FTA 발효일 기준으로 이들 조약을 모두 비준·가입했으므로 일견 실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 국내법에 조약 실체규정과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으로 FTA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이들 조약 실체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FTA 위반이 된다. 단지 조약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콜롬비아는 이들 조약을 비준·가입했으므로, 이들 조약과 FTA에 의한 이중의 조약 준수 의무가 생긴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콜롬비아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5.3조 및 제15.4조

제15.3조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4조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Article 15.3

The Parties may, but shall not be obliged to,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ir laws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Article 15.4

1. The Parties shall grant and ensure adequate, effective, and non-discriminator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vide for measures for the enforcement of such rights.
2.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 derived from such rights.

01 의미

콜롬비아는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와 보호로 인한 혜택을 우리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천명하는가 하면,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콜롬비아는 베른협약, WCT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들 조약은 조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콜롬비아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콜롬비아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로마협약,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한다. 이들 조약에서는 조약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해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콜롬비아)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넷째, 콜롬비아는 FTA상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TRIPS 플러스 요소일뿐만 아니라 WCT, WPPT에도 없는,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작자든 다른 권리자든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콜롬비아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콜롬비아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복제권·배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FTA에 따라,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콜롬비아가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러 조약에서는 권리자에게 각기 성격이 다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복제권과 관련한 규정들에 따르면, 저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베른협약, WCT), 실연자는 금지권(로마협약) 또는 배타적인 권리(WPPT)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배타적인 권리(로마협약)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로마협약, WPPT).
- 일부 조약에서는 배포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하고(WCT),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WPPT).
-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체약국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조약에서 금지권을 부여하더라도 체약국이 이를 배타적 권리로 변경할 수도 있다.
- 복제란 유형의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쇄, 복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종이책에 인쇄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디지털 방식)도 있다.
- 배포란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복제물이 유형의 앨범으로 거래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포권을 주장할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FTA에 따라, 베른협약, WC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베른협약). 또한 방송권뿐만 아니라 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향유한다(WCT).
- 베른협약상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WCT에서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했다. 첫째, 공중전달의 개념에 유선 송신도 포함시키고 있고, 둘째,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권리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즉 이용제공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주문형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제공의 예로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05 실연자의 권리



제15.7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자국법령에 따라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01 의미

- 콜롬비아는 우리 실연자에게 음반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콜롬비아는 FTA에 따라, 로마협약,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실연자는 WPPT상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 실연자는 재산적 권리로서 로마협약과 WPPT에 따라 여러 종류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실연자는 생실연(비고정 실연)의 경우와 고정 실연의 경우에 따라 다른 권리를 향유한다.
- 실연자는 생실연의 경우 고정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로마협약에서는 권리의 성격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 반면 고정 실연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을 가지고(로마협약, WPPT), 배포권과 이용제공권(WPPT)도 가진다. 로마협약에서는 복제권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WPPT상으로 배포권과 이용제공권도 배타적인 권리이다.
- FTA에서는 실연이 고정된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실연자가 보상청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보상청구권이므로 실연자는 실연의 이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콜롬비아는 국내법으로 이 권리를 부정할 수도 있고, 권리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 실연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5.7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자국법령에 따라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01 의미

- 콜롬비아는 우리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콜롬비아는 FTA에 따라, 로마협약,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이들 조약은 음반제작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복제권(로마협약, WPPT), 배포권(WPPT), 이용제공권(WPPT)을 가진다.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 FTA에서는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음반제작자가 보상청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보상청구권이므로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이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콜롬비아는 국내법으로 이 권리를 부정할 수도 있고, 권리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 음반제작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15.7조 제4항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 다. 고정물의 복제, 그리고
- 라.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그 당사국의 법에 대한 사안이다.

Each Party shall provide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 (a) the re-broadcasting of their broadcasts;
- (b) the fixation of their broadcasts;
- (c) the reproduction of fixations; and
- (d)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television broadcasts if such communication is made in places accessible to the public against payment of an entrance fee. It shall be a matter for the law of the Party where protection of this right is claimed to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may be exercised.

01 의미

콜롬비아는 우리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권, 고정권,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FTA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재방송권, 고정권 및 공중전달권이다. 로마협약은 이들 세 가지 권리뿐만 아니라 복제권도 부여하고 있다. FTA에서나 로마협약에서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것이다.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로마협약에 의하면,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FTA에는 재방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FTA에 복제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콜롬비아가 비준·가입한 로마협약과 TRIPS에는 복제권이 존재하므로 방송사업자는 여전히 이들 조약에 의해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FTA상 공중전달권은 다소 의미가 다르다. FTA에서 인정되는 권리 범위는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좁다. 즉, '텔레비전' 방송이 입장료를 받는 장소에서 전달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로마협약에서는 당사국이 유보를 통해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FTA에서는 단지 권리의 행사 조건만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8 보호 기간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FTA에 따라,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베른협약, WCT).
- 실연자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실연이나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고, 계산 기준을 고정으로 단일화했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제작(고정)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고, 계산 기준을 발행 또는 고정으로 변경했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방송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09 집중관리단체



제15.7조 제3항

양 당사국은 집중관리단체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명성과 우수 관리 관행의 맥락에서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 fo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order to ensure an effective management of the rights entrusted to them, and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collected remunerations,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utilization of the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in a context of transparency and good management practice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each Party.

01 의미

양 당사국은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2 설명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해 긴요한 조직이다. 이런 단체는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증가할수록 그 필요성이 커진다. 이 조항이 당사국에게 단체의 존재/활동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이 조항은 사용료의 공평한 분배, 이를 위한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기술조치



제15.7조

5.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인이 행하는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허락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구제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수행되는 것
7. 이 장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암호화, 스크램블링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과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5항과 제6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us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that restrict unauthorized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committed by a person knowing, or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such person is pursuing that objective.

6.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manufacture, import, distribution, sale, rental, advertisement for sale or rental, or possession for commercial purposes, of devices, products, or component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which:

(a) are promoted, advertised, or market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on of;

(b)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or

(c) are primarily designed, produced, adapted, or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or facilitating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7.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technological measure means any technology, device, or component that, in the normal course of its operation, is designed to prevent or restrict acts, in respect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right holder of any copyright or any right related to copyright, as provided for by each Party's legislation. Technological measures shall be deemed effective when the use of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s controlled by the right holde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 access control or protection process, such as encryption, scrambling, or other transform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a copy control mechanism, which achieves the objective of protection.

8. Each Party may provide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s 5 and 6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it is a party to.

01 의미

콜롬비아는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기술조치란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가 각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기술조치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는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므로, 기술조치란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수단을 의미한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에 방송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조에서는 기술조치의 정의에서 방송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방송은 기술조치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고(접근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이용 통제 기술조치). FTA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보호한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
- 이런 기술조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된다. 하나의 방법은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고의로 우회할 수도 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실로 우회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우회를 주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일 경우 그런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기술조치 그 자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비침해적 이용'에 대해서 기술조치 보호를 무조건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FTA에서는 국내법으로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콜롬비아)에게 강제할 뿐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1 권리관리정보



제15.7조

9.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인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11. 제10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9.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without authority any of the following acts:

(a) the removal or alteration of any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or

(b) the distribution, importation for distributi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protected under this Chapter, from which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if such person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by doing so it is inducing, enabling, facilitating, or concealing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any right related to copyright a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levant Party.

10.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provided by right holders, which identifies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referred to in this Chapter, the author, the performer, or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11. Paragraph 10 shall apply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a copy of,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referred to in this Chapter.

01 의미

콜롬비아는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권리관리정보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는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므로, 권리관리정보란 실연과 음반과 관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에 방송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조항에서는 권리관리정보의 정의에서 방송과 관련한 정보를 제외하고 있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FTA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콜롬비아)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2 집행 일반



제15.8조 제1항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에 규정된 것과 같은 수준의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자국법에 제정한다.

The Parties shall establish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ir laws, of the same level as that provided in the TRIPS Agreement, in particular Articles 41 through 61.

01 의미

양 당사국은 TRIPS상 집행규정 이행을 위해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TRIPS 집행규정(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지 지식재산권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TRIPS 집행규정에 합치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FTA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권리자 추정



제15.8조 제2항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in the usual manner is the right holder in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as designated.

01 의미

콜롬비아는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에 통상적으로 해당 성명·명칭이 표시되는 경우 민사, 행정, 형사 절차상 그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베른협약에도 입증 편의를 위한 추정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저작자 추정에 그친 것이다. FTA에서는 베른협약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추정의 이익 주체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있다. 둘째,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성명·명칭이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단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대상의 권리자로 추정된다. 저작자 추정과 저작(재산)권자 추정은 크게 다르다. 전자는 저작권의 최초 귀속자라는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실제 저작(재산)권자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추정이란 상대방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이 가능한 추정을 말한다. 추정의 이익은 민사 절차에서 누릴 수 있다. 권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4 손해배상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TRIPS 집행규정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한편, TRIPS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TRIPS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TRIPS는 또한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속한다.

15 침해물의 압류·폐기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TRIPS 집행규정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상의 침해 상품의 처분 및 폐기 규정을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회원국에게 침해 상품의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사법당국은 어떤 상품을 침해 상품으로 판단하면 침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처분이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협정은 또한 침해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16 정보청구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TRIPS 집행규정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청구권을 민사, 행정 절차상 부여할 수 있다.

02 설명

- TRIPS는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권리자가 침해자로부터 침해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제3자에 관한 정보,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임의 규정으로, 회원국은 재량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규정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상습 침해와 불법 복제물의 대량 유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17 잠정조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TRIPS 집행규정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에서 규정한 잠정조치 제도를 민사, 행정 절차상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 등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 TRIPS는 사법당국에 일방적 잠정조치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절차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가 회복할 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사법당국에 적지않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TRIPS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8 형사 처벌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TRIPS 집행규정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상의 형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처벌은 저작권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과 벌금형을 포함한다.

19 침해물의 압수·몰수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콜롬비아는 TRIPS 집행규정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이 협정에서 규정한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TRIPS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침해 상품이나 침해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또한 재료와 도구의 압수와 몰수/폐기는 그 재료와 도구가 침해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20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15.5조 및 제15.8조

제15.5조

4. 양 당사국은 문학 및 예술작품, 예술 공연, 음반제작 및 방송의 사용에 대한 정보 및 통신기술의 영향을 인정하고,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15.8조

3.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Article 15.5

4.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 the use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rtistic performances, phonogram productions, and broadcasts and, therefore, the need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rticle 15.8

3.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curtail repetitive infringemen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01 의미

콜롬비아는 인터넷상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디지털 환경에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해 FTA에서는 당사국(콜롬비아)에 반복침해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정책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해당 정책 채택을 의무 사항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노력'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정부와 점검할 수 있다.
 - FTA에서는 어떤 성격의 반복침해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표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규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21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제15.7조 제12항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 그리고
-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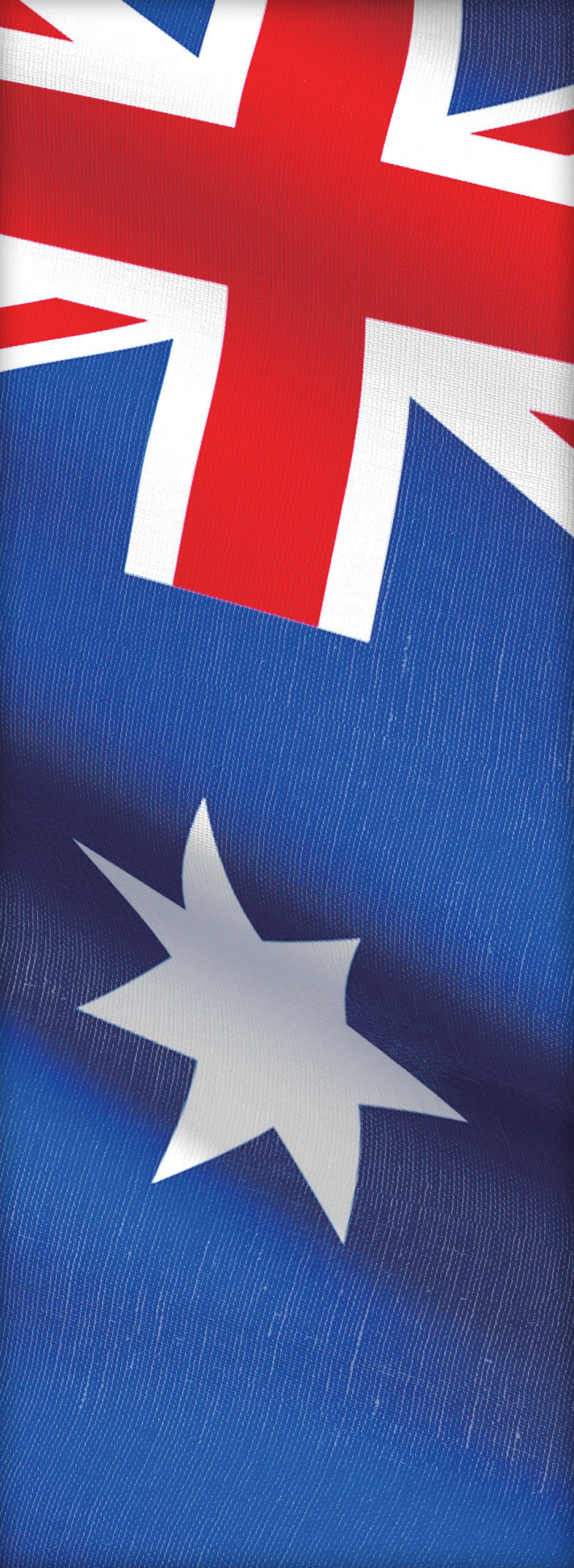
- (a) manufacturing, assembling, modification, importation, exportation, sale, leasing, or any other distribution of a tangible or intangible device or system,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that the device or system is primarily of assistance in decoding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such signal; and
- (b) willful reception or further distribution of a program-carrying signal that originated as an encrypted satellite signal, knowing that it has been decod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01 의미

콜롬비아는 암호화된 위성신호의 복호화용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 무단으로 복호화된 신호를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방송사업자는 신호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위성신호와 케이블신호는 암호화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신호의 도용은 이 분야 산업을 크게 위협한다. FTA는 각종 신호 도용과 도용에 사용되는 장치나 시스템의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대상 신호는 암호화된 위성신호에 국한한다.
- FTA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 수정, 수출입, 판매, 대여, 기타 배포하는 것이다. 둘째, 신호가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이다.
- FTA에서는 이런 금지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콜롬비아)에게 강제할 뿐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사 구제나 형사 제재를 생각할 수 있다.





호주편



한·호주 FTA 체결 경과

- 2014. 12. 12. : 한·호주 FTA 발효
- 2014. 12. 02. : 한·호주 FTA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 04. 08. : 한·호주 FTA 공식서명(서울)
- 2014. 02. 10. : 한·호주 FTA 가서명(캔버라)
- 2013. 12. 04. :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발리)
- 2009. 03. 05. : 한·호주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한·호주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호주 FTA 제13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규정(제13.1조), 실체규정(제13.5조~제13.7조), 집행규정(제13.9조), 경과 규정(제13.11조, 제13.12조), 정의 규정(제13.13조)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WIPO가 관장하는 협정들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복제권 개념에 일시적 복제 포함, 기술적 조치·권리관리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집행규정은 권리자 추정 조항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원칙을 마련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케 하였다. 영화도촬, 인터넷상 반복 침해를 제재하고, 정보제공명령과 비밀 유지명령 권한을 규정하도록 했다.

호주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3.1조 제3항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협정들,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식재산 관련 그 밖의 다자 협정들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Each Party affirm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the agreements administered by the WIPO and any other multilateral agree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the Parties are party.

01 의미

양 당사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TRIPS 및 다른 저작권/저작권접권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02 설명

- 이 조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다른 조약들도 언급하고는 있지만,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그럼에도, FTA에서 TRIPS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규정(예를 들어, FTA에서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FTA상의 의무와는 단절된, 단순한 확인에 그치고 있다.
 - 호주는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기준으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비준·가입했다. 호주는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FTA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호주와의 FTA가 TRIPS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이 FTA에서는 이른바 TRIPS 플러스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더욱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추구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존재한다. TRIPS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규정도 있고, TRIPS 규정과 같은 취지의 유사한 규정도 있다. 어떤 것이든 모두 TRIPS 플러스에 해당한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호주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3.1조

5.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체약당사국인 또는 체약당사국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 협정들에 규정된 예외들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5. A Party may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ts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6.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s derived from such rights, subject to the exceptions provided in multilateral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to which either Party is, or becomes, a contracting party.

01 의미

호주는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저작권/저작권접권 보호와 보호로 인한 혜택을 우리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호주가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호주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호주는 FTA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내용의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에는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에 있는 규정과 같은 취지의 유사한 규정도 있고, 이들 조약에도 없는 규정도 있다. 이런 규정들은 모두 TRIPS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런 규정들에 적용된다.
 - 둘째, FTA에서는 당사국(호주)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주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한편, 호주가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호주는 이들 조약상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호주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권리의 향유와 행사, 집행 등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권리의 발생과 향유, 권리의 취득과 유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로 인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호주와의 FTA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복제권·배포권



제13.5조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 have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2. Each Party shall provide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01

의미 및 설명

- 미국편 '복제권·배포권' 참조.
- 미국과의 FTA는 저작권접권자 중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보호에 한정하지만, 호주와의 FTA는 방송사업자도 보호한다. 이에 따라, 호주는 우리 방송사업자에게도 복제권(배포권 제외)을 부여해야 한다. 이 권리는 제13.7조 제5항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제13.6조

베른협약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의3제1항 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11(1)(ii), 11bis(1)(i) and 11bis(1)(ii), 11ter(1)(ii), 14(1)(ii), and 14bis of the Berne Conven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author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01

미국편 '저작자의 권리' 참조.

의미 및 설명

05 실연자의 권리



제13.7조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실연자에 대하여, 실연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 나. 실연자에 대해서는 음반에 고정된 그들의 실연이,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음반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이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2.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with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 (a)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except where the performance is already a broadcast performance; and
 - (b) the fixation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3.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 (a) with respect to performers,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sation by the performer, and with respect to producers of phonograms,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honogram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sation by the producer of phonogram; and
- (b)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with respect to performers, or their phonograms, with respect to producers of phonogram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4.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its law.

01 의미

- 호주는 우리 실연자에게 생실연(비고정실연)에 대한 방송권과 공중전달권, 고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호주는 우리 실연자에게 대여권과 이용제공권을 부여해야 한다.
- 호주는 우리 실연자에게 음반 사용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제2항에서 실연자에게 비교정실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세 가지 배타적인 권리, 즉 방송권, 공중전달권 및 고정권은 호주가 비준·가입한 TRIPS(금지권으로 하고 있다.), WPPT(배타적인 권리로 하고 있다.)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방송이란 무선 송신을 말하며, 컴퓨터네트워크 통신은 제외된다. 방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중파 방송을 떠올리지만 위성방송이나 암호화방송도 생각할 수 있다.
 - 공중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송신을 말한다. 우리가 유선방송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유선 송신이 대표적이다. 송신에 국한하므로, 현장 실황 공연의 경우는 공중전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 고정이란 실연을 최초로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음반 제작을 위한 마스터테이프를 염두에 둔 것이다.
- 제3항에서는 실연자에게 고정실연 중 음반 고정실연에 대해 두 가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호주가 비준·가입한 TRIPS에 등장하는 대여권으로서, 음반의 상업적 대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음반 대여 시장이 사라진 지금은 의미있는 권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는 호주가 비준·가입한 WPPT에서 도입된 이용제공권으로서, 주문형 방식으로 음반 고정실연을 전달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용제공의 예로는, 웹사이트에 실연을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연을 제공하는 것,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연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 제4항에서는 실연이 고정된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실연자가 보상청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보상청구권이므로 실연자는 실연의 이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호주는 국내법으로 이 권리를 부정할 수도 있고, 권리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3.7조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자에 대하여, 실연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나. 실연자에 대해서는 음반에 고정된 그들의 실연이,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음반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이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3.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 with respect to performers,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sation by the performer, and with respect to producers of phonograms,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honogram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sation by the producer of phonogram; and

(b)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with respect to performers, or their phonograms, with respect to producers of phonogram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4.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its law.

01 의미

- 호주는 우리 음반제작자에게 대여권과 이용제공권을 부여해야 한다.
- 호주는 우리 음반제작자에게 음반 사용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제3항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에 대해 두 가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대여권으로서, 음반의 상업적 대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이용제공권으로서, 주문형 방식으로 음반 고정실연을 전달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연자가 해당 음반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권리이다.
- 제4항에서는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음반제작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의 성격은 보상청구권이다. 실연자가 해당 음반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권리이다. 호주는 국내법으로 이 권리를 부정할 수도 있고, 권리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13.7조 제5항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 다. 고정물의 복제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broadcasting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 (a) their broadcasting of their broadcasts;
- (b) the fixation of their broadcasts; and
- (c) the reproduction of fixations.

01 의미

호주는 우리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권, 고정권,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FTA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재방송권, 고정권, 복제권으로, 로마협약상 같은 성격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들 권리의 내용도 같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08 보호 기간



제13.5조

5.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6. 각 당사국은 방송 보호 기간을 처음 방송이 된 이후로부터 5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the term of protection of a work (including a photographic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s to be calculated:

(a) on the basis of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not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70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 and

(b) on a basis other than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i)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authorised publ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ii) failing such authorised publication within 50 year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6.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term of protection of a broadcast shall not be less than 50 years after the first broadcast took place.

01 의미

- 저작물, 실연, 음반 모두 70년간 보호된다. 보호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로부터, 실연의 경우 실연한 때로부터, 음반의 경우 고정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 보호 기간의 계산 기준은 보호 시점과는 다르다.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인접물과 자연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행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작을 기준으로 한다.
-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보호 기간은 사망 후 70년간, 발행 후 70년간, 창작 후 50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간이다. 보호 기간은 사망, 발행, 창작 해당 연도 말(다음 해 1월 1일)부터 산정한다.
- 종합해보면, 70년이란 보호 기간은 그 기준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호 시점으로부터 최소 70년간(권리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같은 해 사망하는 경우), 최대 120년간(법인저작물이 창작한 지 50년이 지나 발행되는 경우) 또는 그 이상(권리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5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 보호될 수도 있다.
- 방송은 50년간 보호된다. 보호는 방송한 때부터 시작한다.

09 인터넷 재송신 금지



제13.5조 제14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와, 신호 그 자체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Notwithstanding paragraph 13, neither Party shall permit the retransmission of television signals (whether terrestrial, cable or satellite) on the Internet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right holder or right holders of the content of the signal and, if any, of the signal.

01

의미 및 설명

미국편 '인터넷 재송신 금지' 참조.

10 기술조치



제13.5조

9.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관련인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나. 다음의 장치·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것

1)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2)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3)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12. 각 당사국은 제9항 및 제10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자국법 및 제13.1조제3항에 언급된 관련 국제 협정들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와 제한은 그러한 조치의 법적 보호의 적정성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9.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control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broadcast or other subject matter, which the person concerned carries out in the knowledge,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such person is pursuing that objective;

- (b) the manufacture, import, distribution, offering to the public, provision, or otherwise trafficking of devices, products, or components, or the offering to the public, or provision of services, that:
- (i) are promoted, advertised, or market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 (ii)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or
 - (iii) are primarily designed, produced, or performed for the purposes of enabling or facilitating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12. Each Party may provide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s 9 and 10 in accordance with its law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3.1.3, provided that they do not significantly impair the adequacy of legal protection of those measures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medies against the acts prescribed in paragraphs 9 and 10.

01 의미

호주는 우리 국민에게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기술조치란 저작권자나 저작권접권자가 각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기술조치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 해당 조항은 실연과 음반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 방송도 염두에 두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고(접근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이용 통제 기술조치). FTA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보호한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
- 이런 기술조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된다. 하나의 방법은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고의로 우회할 수도 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실로 우회할 수도 있다. FTA에서는 이용 통제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우회는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사용과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원용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지 행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기술조치(접근 통제 기술조치와 이용 통제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우회를 주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일 경우 그런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기술조치 그 자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비침해적 이용’에 대해서 기술조치 보호를 무조건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FTA에서는 국내법으로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호주)에게 강제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가 있다. 잠정조치 외에는 국내법상 재량으로 폐기, 손해배상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 제재 수단으로 ‘형사 처벌’도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내법상 재량으로 침해물의 폐기나 몰수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1 권리관리정보



제13.5조 제10항

각 당사국은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저작물의 복사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 (a) the removal or alteration of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or
- (b) the distribution, importation for distributi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of works or copies of th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protected under this Chapter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if such person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by doing so it is inducing, enabling, facilitating or concealing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s provided by the law of the Party.

01 의미

호주는 우리 국민에게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권리관리정보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 해당 조항은 실연과 음반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 방송도 염두에 두고 규정하고 있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고 그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FTA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호주)의 의무로 하고 있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호주)에게 강제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가 있다. 잠정조치 외에는 국내법상 재량으로 폐기, 손해배상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 제재 수단으로 '형사 처벌'도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내법상 재량으로 침해물의 폐기나 몰수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권리자 추정



제13.9조 제4항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형사 그리고 적용가능할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제작자·실연자·방송사업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자국법에 따라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criminal, and if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as the author, producer, performer, broadcasting organisation or publisher of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in the usual manner is the designated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copyright or related right subsists in such subject matter in accordance with its law.

01

의미 및 설명

- 미국편 '권리자 추정' 참조.
- 미국과의 FTA는 저작권접권자 중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보호에 한정하지만, 호주와의 FTA는 방송사업자도 보호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권리자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13 손해배상



제13.9조 제6항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호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추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 (i)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or
 - (ii) at least in the case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the profits of the infringer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which may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and
- (b) in determining damag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may consider, inter alia, the value of the infringed good or service, measured by the market price, the suggested retail price, or other legitimate measure of value submitted by the right holder.

01 의미

호주는 민사 절차상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손해배상은 대표적인 민사 구제 수단이다. FTA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에 갈음해 가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원 등 사법당국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침해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시장가격으로 측정된 가치, 권장 소매가 또는 권리자가 제시하는 가치 측정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14 침해물의 압류·폐기



제13.9조

8.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
 -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2. 제13.5조제9항 및 제13.5조제10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을 명령 또는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다.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기기 및 제품의 폐기

8.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allegedly infringing goods, materials and implements relevant to the act of infringement, and, at least for trademark counterfeiting,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at the right holder's request, goods that have been found to be pirated or counterfeit shall be destroye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or creation of such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be,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promptly destroyed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se the risks of further infringements;

12.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acts described in Articles 13.5.9 and 13.5.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or award at least:

(c) the destruction of devices and products found to be involved in the proscribed activity.

01

의미 및 설명

- 미국편 '침해물의 압류·폐기' 참조.
- 미국과의 FTA는 저작권접권자 중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보호에 한정하지만, 호주와의 FTA는 방송사업자도 보호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침해물의 압류·폐기 규정이 적용된다.

15 정보청구권



제13.9조 제10항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 당국이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과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소송절차에서 권리자 또는 그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rovide, for the purposes of collecting evidence, any information that the infringer possesses or controls regarding any person or persons involved in any aspect of the infringement and regarding the means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 channel of the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an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right holder or the judicial authorities in the proceedings.

01

의미 및 설명

- 미국편 '정보청구권' 참조.
- 미국과의 FTA는 저작권접권자 중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보호에 한정하지만, 호주와의 FTA는 방송사업자도 보호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청구권 규정이 적용된다.

16 비밀유지명령



제13.9조 제11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 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그들의 변호인·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b) impose sanctions on parties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their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a proceeding.

01

의미 및 설명

- 미국편 '비밀유지명령' 참조.
- 미국과의 FTA는 저작권접권자 중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보호에 한정하지만, 호주와의 FTA는 방송사업자도 보호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17 잠정조치



제13.9조

12. 제13.5조제9항 및 제13.5조제10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을 명령 또는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

16. 각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7.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2.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acts described in Articles 13.5.9 and 13.5.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or award at least:

(a) provisional measures, including seizure of devices and products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the proscribed activity;

16. Each Party's judicial authorities shall act on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expeditiously.

17.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et at a level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and so as not to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such procedures.

01

의미 및 설명

- 미국편 '잠정조치' 참조.
- 미국과의 FTA는 저작권접권자 중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보호에 한정하지만, 호주와의 FTA는 방송사업자도 보호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규정이 적용된다.

18 형사 처벌



제13.9조

25.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

26. 제25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분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27. 각 당사국은 공중 상영 시설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영화저작물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공중에 전송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25.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Each Party shall treat wilful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s unlawful activitie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26. Further to paragraph 25, each Party shall provide:

(a) penalties that include sentences of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consistent with a policy of removing the infringer's monetary incentive. Each Party shall further encourage judicial authorities to impose those penalties at level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27.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gainst any person who, without authorisation of the holder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 a cinematographic work, knowingly makes a copy of or transmits to the public the cinematographic work, from a performance of the cinematographic work, in an exhibition facility open to the public.

01 의미

- 호주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호주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송신하거나 복제하는 데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형사 처벌은 고의로,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이런 침해행위로 인해 제작된 상품을 고의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이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장래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 FTA는 또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형사 처벌 규정, 즉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 침해물의 압수·몰수



제13.9조 제26항

제25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 다.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 라. 사법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 1) 모든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 2)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으로 대부분 구성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다호와 라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Further to paragraph 25, each Party shall provide:

- (a) penalties that include sentences of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consistent with a policy of removing the infringer's monetary incentive. Each Party shall further encourage judicial authorities to impose those penalties at level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 (b)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y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any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offense, and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such orders need not individually identify the items that are subject to seizure, so long as they fall within general categories specified in the order;
- (c)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mong other measures, the forfeiture of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and
- (d)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 (i) the forfeiture and destruction of all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d
 - (ii) at least with respect to wilful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iracy and counterfeiting on a commercial scale, the forfeiture and/o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predominantly used in the creation of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Each Party shall further provide that forfeiture and destruction under subparagraphs (c) and (d) shall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kind to the defendant.

01 의미

- 호주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호주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와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호주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에도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상 이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FTA에서는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고 있다.
 - 당사국은 사법당국에게 압수와 몰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압수 대상은 침해 의심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이다.
 - 몰수와 폐기 대상은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이다.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은 몰수 대상이다. 몰수와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20 OSP 책임 제한



제13.9조 제29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1조에 따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소유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nforcement procedures that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provide:

- (a) legal incentives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to cooperate with copyright owners in deterring the unauthorised storage and transmission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 (b) limitations in its law regarding the scope of remedies available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copyright infringements that they do not control, initiate or direct, and that take place through systems or networks controlled or operated by them or on their behalf.

01 의미

호주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통제, 개시, 지시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가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복제나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서비스제공자에는 단순 도관 서비스, 캐싱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검색 서비스가 있다. 이들은 저작물 등의 송신을 개시하지도 않고, 저작물 등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도 않는다(검색 서비스에는 예외적으로 선택 기능이 있다).
- 호주와의 FTA에서는 해당 서비스제공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과의 FTA에서 보듯이, 도관 서비스, 캐싱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를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 도관 서비스란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라우팅하거나 연결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캐싱 서비스란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저작물 등을 컴퓨터(캐싱 서버)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호스팅 서비스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 저작물 등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검색 서비스란 정보검색도구를 사용해 온라인상의 위치 정보를 가리키거나 링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책임 제한의 조건 및 내용은 서비스 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나, FTA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당사국(호주) 국내법상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13.9조 제28항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to curtail repeated copyright and related 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01 의미

호주는 인터넷상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디지털 환경에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해 FTA에서는 당사국(호주)에 반복침해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FTA에서는 어떤 성격의 반복침해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표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규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XI

캐나다편



한·캐나다 FTA 체결 경과

- 2015. 01. 01. : 한·캐나다 FTA 발효
- 2014. 12. 02. :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 09. 23. : 한·캐나다 FTA 정식서명(오타와)
- 2014. 06. 12. : 한·캐나다 FTA 가서명(서울)
- 2014. 07. 04. : 한·캐나다 협상 타결 선언
- 2005. 07. 11. : 한·캐나다 FTA협상 출범 합의(07. 15. 공식 발표)

한·캐나다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캐나다 FTA 제1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칙(제16.1조~제16.8조), 실체규정(제16.11조), 집행규정(제16.13조~제16.16조), 협력 규정(제16.17조~제16.19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및 WPPT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방송보상청구권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술조치·권리 관리정보·암호화된 위성신호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 집행규정에는 권리자 추정 조항과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책 규정과 인터넷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감소를 위한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캐나다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6.3조, 제16.11조

제16.3조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지식재산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16.11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 나.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채택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 다.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이하 “WCT”라 한다), 그리고
- 라. WPPT

Article 16.3

The Parties 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Article 16.11

1.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 (a)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done at Rome on 26 October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me Convention”);
- (b)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done at Paris on 24 July 197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rne Convention”);
- (c) the WIPO Copyright Treaty, done at Geneva on 20 December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CT”); and
- (d) the WPPT.

01 의미

- 양 당사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TRIPS 및 다른 저작권/저작인접권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 캐나다는 로마협약, 베른협약, WCT, WPPT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 설명

- 제16.3조는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FTA에서 TRIPS과 연계하는 규정(예를 들어, FTA에서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구절)은 없으나, 다른 조약(로마협약, 베른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TRIPS과 간접적으로 연결시켰다. TRIPS는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의 실체규정을 거의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에는 이에 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조약들에 없는 새로운 규정도 있다.
 - 캐나다는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를 비준·가입했다. 캐나다는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16.11조 제1항은 로마협약, 베른협약, WCT, WPPT 실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베른협약과 WCT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로마협약과 WPPT는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모두 저작권 분야 기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약에서는 일정한 기준들을 정해놓고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해 당사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체규정이란 이런 기준들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제16.11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 실체규정 준수 의무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캐나다는 이들 조약 비준·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조약상의 실체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캐나다는 FTA 발효일 기준으로 이들 조약을 모두 비준·가입했으므로 일견 실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 국내법에 조약 실체규정과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으로 FTA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이들 조약 실체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FTA 위반이 된다. 단지 조약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캐나다는 이들 조약을 비준·가입했으므로, 이들 조약과 FTA에 의한 이중의 조약 준수 의무가 생긴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캐나다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6.4조, 제16.6조

제16.4조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6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하 “WPPT”라 한다)에 따라 이 장에서 특별히 부여된 내국민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제1항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Article 16.4

Each Party may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at Party's domestic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Article 16.6

1.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ursuant to Articles 3 and 5 of the TRIPS Agreement.

2. In respect of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a Party may satisfy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by providing national treatment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specifically granted in this Chapter in accordance with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done 20 December 1996 at Genev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PPT”).

01 의미

캐나다는 TRIPS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캐나다로 하여금 우리 국민에게 TRIPS상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는가 하면, 로마협약, 베른협약, WCT, WPPT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캐나다는 베른협약, TRIPS, WCT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들 조약은 조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캐나다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캐나다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로마협약, TRIPS(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한다. 이들 조약에서는 조약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해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캐나다)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넷째, 캐나다는 FTA상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TRIPS 플러스 요소일뿐만 아니라 WCT, WPPT에도 없는,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작자든 다른 권리자든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캐나다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캐나다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캐나다와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복제권·배포권



제16.11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과 실연 및 음반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상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s including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01 의미

- 캐나다는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 캐나다는 FTA에 따라,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FTA에 따라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진다. 둘째, 우리 저작자는 베른협약과 WCT에 따라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지고, 우리 실연자는 로마협약(금지권)과 WPPT(배타적인 권리)에 의해 복제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로마협약과 WPPT에 따라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진다. 첫째와 둘째 권리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FTA가 우선 적용될 것이다. 셋째, FTA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방송사업자는 캐나다가 FTA에 따라 로마협약 준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협약에 따라 금지권으로서 복제권을 가진다.
- 일부 조약에서는 배포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하고(WCT),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WPPT). 캐나다는 FTA에 따라, 이들 조약 준수 의무를 지므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체약국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조약에서 금지권을 부여하더라도 체약국이 이를 배타적 권리로 변경할 수도 있다.
- 복제란 유형의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쇄, 복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종이책에 인쇄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디지털 방식)도 있다.
- 배포란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복제물이 유형의 앨범으로 거래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포권을 주장할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캐나다는 FTA에 따라, 베른협약, WC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베른협약). 또한 방송권뿐만 아니라 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향유한다(WCT).
- 베른협약상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WCT에서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했다. 첫째, 공중전달의 개념에 유선 송신도 포함시키고 있고, 둘째,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권리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즉 이용제공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주문형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제공의 예로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05 실연자의 권리



제16.11조 제3항

각 당사국은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01 의미

- 캐나다는 우리 실연자에게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캐나다는 FTA에 따라, 로마협약,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실연자는 WPPT상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 실연자는 재산적 권리로서 로마협약과 WPPT에 따라 여러 종류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실연자는 생실연(비고정 실연)의 경우와 고정 실연의 경우에 따라 다른 권리를 향유한다.
- 실연자는 생실연의 경우 고정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로마협약에서는 권리의 성격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 반면 고정 실연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을 가지고(로마협약, WPPT), 배포권과 이용제공권(WPPT)도 가진다. 로마협약에서는 복제권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WPPT상으로 배포권과 이용제공권도 배타적인 권리이다. 실연자는 또한 실연이 담긴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FTA에서 특별히 이 보상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규정은 WPPT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바, 캐나다는 WPPT 규정 적용을 유보했고, FTA에서도 이 유보를 그대로 인정받았다.
- 실연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6.11조 제3항

각 당사국은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01 의미

- 캐나다는 우리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캐나다는 FTA에 따라, 로마협약,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이들 조약은 음반제작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복제권(로마협약, WPPT), 배포권(WPPT), 이용제공권(WPPT)을 가진다.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 음반제작자는 또한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FTA에서 특별히 이 보상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규정은 WPPT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바, 캐나다는 WPPT 규정 적용을 유보했고, FTA에서도 이 유보를 그대로 인정받았다.
- 음반제작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캐나다는 FTA에 따라, 로마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 협약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로마협약은 방송사업자에게 고정권, 복제권, 재방송권을 부여한다. 로마협약상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 협약에 의하면,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08 보호 기간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캐나다는 FTA에 따라,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베른협약, WCT).
- 실연자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실연이나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고, 계산 기준을 고정으로 단일화했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제작(고정)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고, 계산 기준을 발행 또는 고정으로 변경했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방송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09 기술조치



제16.11조

4.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 가. 자국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 1)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해진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우회하는 것, 그리고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장치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공중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 나. 다음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치나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 1)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만 있는 것
6.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소비자 전자, 통신 또는 컴퓨터제품이 이 항들을 이행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법에 상호운용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즉,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장치, 제품, 구성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응하도록 설계할 의무는 없다.
7. 제4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
4.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in,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which are not authorised by the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5. In order to provide th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each Party shall provide protection against at least:
 - (a) to the extent provided by its law:
 - (i) the unauthorised circumvention of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carried ou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and
 - (ii) the offering to the public by marketing of a device or product, including computer programs, or a service, as a means of circumventing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and
 - (b) the manufacture, importation, or distribution of a device or product, including computer programs, or provision of a service that:
 - (i) is primarily designed or produc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or
 - (ii) has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ther than circumventing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6. In implementing paragraphs 4 and 5, a Party is not obligated to require that the design of, or the design and selection of parts and components for, a consumer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or computing product provide for a response to a particular technological measure, so long as the product does not otherwise contravene that Party's measures implementing these paragraphs. This Agreement does not require a Party to mandate interoperability in that Party's law, i.e., there is no obligation fo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to design devices, products, components, or services to correspond to certai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7. In providing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pursuant to paragraph 4,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ppropriat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s 4 and 5.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paragraphs 4 and 5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limitations, exceptions, or defences to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under a Party's domestic law.

01 의미

캐나다는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기술조치란 저작권자나 저작권접권자가 자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기술조치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는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므로, 기술조치란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수단을 의미한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에 방송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조에서는 기술조치의 정의에서 방송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방송은 기술조치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고(접근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이용 통제 기술조치). FTA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보호한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
- 이런 기술조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된다. 하나의 방법은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고의로 우회할 수도 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실로 우회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우회를 주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일 경우 그런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기술조치 그 자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비침해적 이용’에 대해서 기술조치 보호를 무조건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FTA에서는 국내법으로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캐나다)에게 강제할 뿐으로, 그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0 권리관리정보



제16.11조

8.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를 유인, 방조,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의 행위를 권한 없이 고의로 행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9. 제8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8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8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8. To protec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without authority any of the following acts knowing, or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 to remove or alter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b) 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broadcast, communicate,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copies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9. In providing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pursuant to paragraph 8,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ppropriat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 8.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8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limitations, exceptions, or defences to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under a Party's law.

01 의미

캐나다는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권리관리정보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는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므로, 권리관리정보란 실연과 음반과 관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에 방송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조항에서는 권리관리정보의 정의에서 방송과 관련한 정보를 제외하고 있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고 그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FTA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캐나다)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1 권리자 추정



제16.13조 제5항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제작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as the author, performer, or producer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n the usual manner is the designated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copyright or related rights subsist in such subject matter.

01 의미

캐나다는 우리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의 성명·명칭이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에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민사 절차상 그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베른협약에도 입증 편의를 위한 추정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저작자 추정에 그친 것이다. FTA에서는 베른협약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추정의 이익 주체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있다. 둘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의 성명·명칭이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단지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대상의 권리자로 추정된다. 저작자 추정과 저작(재산)권자 추정은 크게 다르다. 전자는 저작권의 최초 귀속자라는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실제 저작(재산)권자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추정이란 상대방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반복이 가능한 추정을 말한다. 추정의 이익은 민사 절차에서 누릴 수 있다. 권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2 손해배상



제16.13조

10.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상실된 이익 또는 시장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여 권리자가 제시하는 정당한 가치 측정 방법을 고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다.
11.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이익을 제10항에서 언급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최소한 저작물·음반 및 실연을 보호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 또는 유지한다.
 - 가. 법정손해배상액
 - 나. 침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 또는
 - 다. 적어도 저작권의 경우, 추가적 손해배상
13. 당사국이 제12항가호에 언급된 구제 또는 제12항나호에 언급된 추정을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 또는 권리자가 제10항과 제11항에 언급된 구제의 대안으로서 그러한 구제나 추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

holder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consider, inter alia, any legitimate measure of value the right holder submits, which may include lost profits or the value of the infringed goods or services measured by the market price or the suggested retail price.

11. At least in cases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the infringer's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A Party may presume those profits to be the amount of damage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12. At least with respect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rotecting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also establish or maintain a system that provides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pre-established damages;
 - (b) presumptions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sufficient to compensate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or
 - (c) at least for copyright, additional damages.
13. If a Party provides the remedy referred to in paragraph 12(a) or the presump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2(b), that Party shall ensure that either its judicial authorities or the right holder has the right to choose such a remedy or presumptions as an alternative to the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0 and 11.

01 의미

- 캐나다는 민사 절차상 우리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캐나다는 법정손해배상이나 추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손해배상은 대표적인 민사 구제 수단이다. FTA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에 갈음해 가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원 등 사법당국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침해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시장가격으로 측정된 가치, 권장 소매가 또는 권리자가 제시하는 가치 측정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 FTA에서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으나 이들 특칙은 모두 실손해배상 제도의 틀 안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무형의 재산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수집이 곤란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FTA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법정손해배상 및 추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법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손해액으로 정해놓고(예를 들어, 저작물 1건당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다.) 권리자가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추정손해배상 제도란 다음과 같은 요소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해 침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1) 침해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판매를 통해 얻었을 이익액에 제3자에게 실제 이전된 침해 상품의 수량을 곱한 액수, 2) 합리적인 사용료액, 3)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할 경우 지급했어야 할 금액.
- 법정손해배상과 추정손해배상은 실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으로,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은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3 침해물의 압류·폐기



제16.13조

15. 최소한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과 상표위조상품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사법당국이 가지도록 규정한다.
16.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에 대하여서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17. 당사국은 제15항 및 제16항에서 기술된 구제가 침해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15. At least with respect to pirated copyright goods and counterfeit trademark good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at the right holder's request,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the infringing goods be destroye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16. Each Party shall further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or creation of such infringing goods, be, without undue delay and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estroyed or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a manner so as to minimise the risks of further infringements.
17. A Party may provide for the remedies described in paragraphs 15 and 16 to be carried out at the infringer's expense.

01 의미

캐나다는 민사 절차상 침해가 판정된 상품을 폐기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폐기나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TRIPS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판명된 경우 침해 상품이나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제도는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처분이나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FTA는 TRIPS 플러스 요소로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 TRIPS는 사법당국에 처분이나 폐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협정상의 의무로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재량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FTA에서는 침해 상품으로 판정되면 반드시 폐기하는 국내법 규정을 두도록 하고,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의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폐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TRIPS에서는 침해 상품이나 재료와 도구의 처분과 폐기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FTA에서는 침해 상품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폐기를 의무화하고, 재료와 도구의 경우 폐기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TRIPS에 의하면, 재료와 도구의 처분은 침해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FTA에는 그런 요건상의 제약도 없다.

14 정보청구권



제16.13조 제18항

면책 특권, 정보원에 대한 기밀보호 또는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침해자 또는, 그 대안으로서 침해 혐의자에게 최소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규정된, 침해자 또는 침해 혐의자가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침해 또는 침해 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및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 또는 침해혐의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침해 또는 침해혐의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Without prejudice to each Party's domestic law governing privilege,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sources, 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to order the infringer or, in the alternative, the alleged infringer, to provide to the right holder or to the judicial authorities, at leas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 relevant information as provided for in that Party's applicable domestic law that the infringer or alleged infringer possesses or controls. This information may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a person involved in any aspect of the infringement or alleged infringement and regarding the means of production or the channels of distribution of the infringing or allegedly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ird persons alleged to be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uch goods or services and of their channels of distribution.

01 의미

캐나다는 민사 절차상 침해가 판정된 상품을 폐기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폐기나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무형의 재산으로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에 관한 정보는 통상적인 민사 절차로는 획득하기 어렵다.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이른바 정보청구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권리자의 정보청구권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침해자가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FTA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침해자에게 이런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정보에는 침해에 참여한 사람에 관한 정보와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가 있다. 후자의 정보에는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유통 경로에 참여한 제3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15 비밀유지명령



제16.13조 제19항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 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당국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relation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arty's judicial or other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on a party,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connection with that proceeding.

01 의미

캐나다는 민사 절차상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내려진 사법명령 위반에 대해 제재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민사 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에는 당사자들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당사자들은 이런 비밀정보를 소송상 공격이나 방어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FTA에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민사 절차상 생성되거나 주고받은 비밀정보를 보호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고, 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6 잠정조치



제16.13조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가. 당사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의 방지,
2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것을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잠정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수행된 소송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부당한 지연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의심상품과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 및 도구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조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서는 침해와 관련된 원본 또는 사본 형태의 증거서류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당국이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러한 잠정조치를 위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4.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또는, 추후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
2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 (a) against a party or, if appropriate, a third party over whom the relevant judicial authority exercises jurisdiction, to prevent an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occurring, and in particular, to prevent goods that involve the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entering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2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adopt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if appropriate, in particular where any delay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right holder, or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risk of evidence being destroyed. In proceedings conducted *inaudita altera part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with the authority to act expeditiously on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to make a decision without undue delay.
22. At least in cases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r other taking into custody of suspect goods, and of materials and implements relevant to the act of infringement, and, at least for trademark counterfeiting, documentary evidence, either originals or copies thereof,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2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a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such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does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procedures for such provisional measures.
24. Each Party may provide that if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revoked, if they lapse due to any act or omission by the applicant, or if it is subsequently found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applicant, upon request of the defendant, to provide the defendan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any injury caused by these measures.

01 의미

- 캐나다는 민사 절차상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예방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캐나다는 민사 절차상 일방적 잠정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잠정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는 침해 의심 상품 또는 침해 상품을 위한 재료와 도구의 압류를 포함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 FTA에서는 협정상의 의무로 일방적 잠정조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 잠정조치란 상대방의 진술을 듣지 않고 내려지는, 사법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을 말한다. 이런 조치는 절차의 지연으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내려진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FTA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7 형사 처벌



제16.15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영화관에서의 상연으로부터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무단 복제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장래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합치하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2.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unauthorised copying of a cinematographic work, or any part thereof, from a performance in a movie theatre.
3. For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each Party shall provide penalties that include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 sufficiently high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acts of infringement, consistent with the level of penalties applied for crimes of a corresponding gravity.

01 의미

- 캐나다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캐나다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형사 처벌은 고의로,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장래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 FTA는 또한 영화상영관에서 영상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침해물의 압수·몰수



제16.15조

4.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 복제 의심 상품과 위법혐의행위에 사용된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증거, 그리고 침해혐의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혐의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당사국이 제4항에 언급된 명령의 전제조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압수의 목적상 그 품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 품목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몰수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상표위조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상품이 권리자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상품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최소한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또는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재료, 도구, 또는 자산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8.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 가. 침해혐의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혐의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압수, 그리고
 - 나.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몰수

-
4.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alleged offence,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alleged offence, and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alleged infringing activity.
 5. If a Party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items subject to seizure as a prerequisite for issuing an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4, that Party shall not require the items to be described in greater detail than necessary to identify them for the purpose of seizure.
 6.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all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In cases where counterfeit trademark goods and pirated copyright goods are not destroyed,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ose goods are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a manner so as to avoid causing harm to the right holder.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those goods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to the infringer.
 7.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implements predominantly used in the creation of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and, at least for serious offences, of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infringing activ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such materials, implements, or assets shall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to the infringer.
 8.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may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 (a) the seizure of assets,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allegedly infringing activity; and
 - (b) the forfeiture of assets,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infringing activity.

01 의미

- 캐나다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캐나다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와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캐나다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에도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상 이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FTA에서는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고 있다.
 - 당사국은 사법당국에게 압수와 몰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압수 대상은 침해 의심 상품, 침해 의심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이다.
 - 몰수와 폐기 대상은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이다.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은 몰수 대상이다. 몰수와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19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16.16조

1. 이 장에 규정된 범위의 각 당사국의 민·형사 집행 절차는 침해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수단의 불법적인 사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적용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주장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가입자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되게,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업계 내 상호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절차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당한 행위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하면서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1. Each Party's civil and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to the extent set forth in this Chapter shall apply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over digital networks, which may include the unlawful use of means of widespread distribution for infringing purposes.
2. A Party may provide,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with the authority to order an online service provider to disclose expeditiously to a right holder information sufficient to identify a subscriber whose account was allegedly used for infringement, if that right holder has filed a legally sufficient claim f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if that information is being sough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or enforcing those rights.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omote cooperative efforts within the business community to effectively address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while preserving legitimate competition and, consistent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preserving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fair process, and privacy.
4. Each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to curtail copyright and related 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or other digital network.
5. Each Party shall implement these procedures in a manner that avoids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activity,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nd, consistent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preserves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fair process, and privacy.

01 의미

캐나다는 인터넷상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당사국(캐나다)에 대한 의무로,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침해에 사용되는 가입자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하고, 당사국은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FTA에서는 규제 대상 반복침해가 무엇인지, 규제 수단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시사하고 있지만, 분명한 방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 수단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표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규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20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제16.11조 제10호

각 당사국은 다음을 민사 또는 형사 범죄로 한다.

- 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수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 나.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수신 또는 재배포하는 것

각 당사국은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구성된 민사 위법에 대하여 그 신호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make it a criminal or civil offense:

- (a) to manufacture, import, sell, lease, or otherwise make available a device or system that is primarily of assistance in decoding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such signal; and
- (b) to receive, in connection with commercial activities, or further distribute,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 that has been decod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civil offense established under subparagraph (a) or (b) is actionable by any person that holds an interest in the content of the signal.

01 의미

캐나다는 암호화된 위성신호의 복호화용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 무단으로 복호화된 신호를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이에 대해 민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방송사업자는 신호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위성신호와 케이블신호는 암호화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신호의 도용은 이 분야 산업을 크게 위협한다. FTA는 각종 신호 도용과 도용에 사용되는 장치나 시스템의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대상 신호는 암호화된 위성신호에 국한한다.
- FTA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 수입, 판매, 대여, 기타 이용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신호가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신호를 수신하거나(상업 활동과 관련해) 재배포하는 것이다.
- 금지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지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호나 프로그램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XII

뉴질랜드편



한·뉴질랜드 FTA 체결 경과

- 2015. 12. 20. : 한·뉴질랜드 FTA 발효
- 2015. 11. 30. : 한·뉴질랜드 FTA 국회 본회의 통과
- 2015. 03. 23. :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서울)
- 2014. 12. 22. :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웰링턴)
- 2014. 11. 15. :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선언
- 2008. 05. 16. : 한·뉴질랜드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한·뉴질랜드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뉴질랜드 FTA 제11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칙(제11.1~11.3조), 실체규정(제11.5조), 집행규정(제11.6조), 경과 규정(제11.7~11.11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베른협약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복제권 부여, 권리관리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집행규정에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조치를 위해 당사국의 법에 따른 조치, 절차, 구제를 허용하게 했고,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뉴질랜드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1.3조 및 제11.5조

제11.3조

3.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식재산 관련 그 밖의 다자협정들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11.5조

1. 각 당사국은 1971년 7월 24일에 체결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의 제1조부터 제21조까지와 그 부록을 준수한다. 그러나 양 당사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에 따라 부여된 권리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Article 11.3

3.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any other multilateral agree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Article 11.5

1.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Articles 1 through 2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done at 24 July 197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Appendix thereto. However, the Parties shall not have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the rights conferred under Article 6bis of the Berne Convention or the rights derived therefrom.

01 의미

- 양 당사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TRIPS 및 다른 저작권/저작권접권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 뉴질랜드는 베른협약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 설명

- 제11.3조 제3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그럼에도, FTA에서 TRIPS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규정(예를 들어, FTA에서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FTA상의 의무와는 단절된, 단순한 확인에 그치고 있다.
 - 뉴질랜드는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베른협약, TRIPS를, 2019년 10월 기준으로 WCT, WPPT를 비준·가입했다. 뉴질랜드는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고 동의했으므로, FTA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11.5조 제1항은 베른협약 실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일정한 기준들을 정해놓고 저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해 당사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체규정이란 이런 기준들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제11.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 실체규정 준수 의무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뉴질랜드는 베른협약 비준·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협약상의 실체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FTA 발효일 기준으로 이 협약을 비준·가입했으므로 일견 실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 국내법에 협약 실체규정과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으로 FTA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베른협약 실체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FTA 위반이 된다. 단지 조약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뉴질랜드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1.3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며, 이러한 권리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 자체로 적법한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추가적 보호와 집행은 이 장에 불일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 라 한다)의 주관 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들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 그리고
 - 나. WIPO의 주관 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들이 허용한 적절한 유보

1. Each Party shall provide in its territory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ensuring that measures to enforce those rights do not themselves become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2. A Party may provide for more extens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ts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additional protection and enforcemen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4.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by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s derived from such rights.

5. The obli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4 is subject to:

- (a)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provided in the TRIPS Agreement and those multilateral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PO"); and
- (b) the relevant reservations permitted by those multilateral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WIPO.

01 의미

뉴질랜드는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저작권/저작권접권 보호와 보호로 인한 혜택을 우리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뉴질랜드가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뉴질랜드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뉴질랜드는 FTA에서 저작권/저작권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한 바에 따라(우리 권리자에게는 매우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내용의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에서 베른협약 실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협약 실체규정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포함되므로, 뉴질랜드는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베른협약은 협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뉴질랜드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약이므로 그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FTA에는 베른협약, TRIPS, WCT, WPPT에 있는 규정과 같은 취지의 유사한 규정도 있고, 이들 조약에도 없는 규정도 있다. 이런 규정들은 모두 TRIPS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런 규정들에 적용된다.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뉴질랜드)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한편, 뉴질랜드가 비준·가입한 TRIPS, WCT,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뉴질랜드는 이들 조약상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권리의 향유와 행사, 집행 등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권리의 발생과 향유, 권리의 취득과 유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로 인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양자를 병행해 사용하는 듯하다.

03 복제권·배포권



제11.5조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든 그의 저작물,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고정물의 복제를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그러한 고정은 실연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have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 of their work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 any manner or form.
3.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with the right to prohibit the reproduction of a fixation of a performance where such fixation has been made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performer.

01 의미

- 뉴질랜드는 우리 저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 뉴질랜드는 우리 실연자에게 금지권으로서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우리 저작자,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복제권은 배타적인 것으로, 해당 권리자만이 저작물, 음반의 이용을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다.
 - 배타적 권리의 대상인 이용형태는 복제로서, 그것이 유형물에 고정되든 디지털 파일로 고정되든 묻지 않는다. 이런 복제물을 통해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을 지각하게 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 FTA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속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복제도 포함한다고 본다. 아날로그 복제는 인쇄물이나 필름에서 보듯이 영속적인 것이지만, 디지털 복제는 일시적인 것도 있다. 일시적 복제는 컴퓨터 램(RAM)이나 비디오 버퍼와 같은 곳에서 이뤄진다. 기술적으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또는 웹사이트 접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를 이용한 영업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우리 실연자는 배타적인 복제권이 아닌, 금지권으로서 복제권을 가진다. 실연자가 가지는 복제권은 TRIPS에서는 금지권으로,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하고 있다. 이들 조약을 모두 비준·가입한 뉴질랜드가 WPPT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뉴질랜드는 베른협약 실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베른협약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 여기서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05 보호 기간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뉴질랜드는 베른협약 실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 협약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02 설명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약이다. 보호 기간도 저작권 보호 기간에 국한한다. 이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

06 기술조치



제11.5조

5.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권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해당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자국 국내법 및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holder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each Party's domestic laws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which are not authorised by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holder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6. Each Party may provide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 5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it is party.

01 의미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게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이 조항들은 WCT와 WPPT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목적의, 유사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WPPT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한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FTA는 방송사업자도 포함해 보호한다.)가 강구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기술조치란 저작자, 저작인접권자가 각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고(이용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접근 통제 기술조치). FTA 체결 당시의 기술조치 현황을 감안하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FTA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로 이해된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뉴질랜드)에게 강제할 뿐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보호 방법으로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고,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양자를 모두 금지할 수도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07 권리관리정보



제11.5조 제7항

당사국은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knowing, or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by doing so,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y:

- (a) the removal or alteration of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 (b) the distribution, importation for distributi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of works or copies of th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protected under this Chapter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01 의미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게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고 그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FTA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뉴질랜드)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08 권리자 추정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뉴질랜드는 베른협약 실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 협약에서 규정한 저작자 추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베른협약은 입증 편의를 위해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자는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저작자로 추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런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입증 책임의 전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긴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09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11.6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effective enforcement procedures to curtail repetitiv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fringement by means of the internet.

01 의미

뉴질랜드는 인터넷상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디지털 환경에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해 FTA에서는 당사국(뉴질랜드)에 반복침해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정책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 FTA에서는 어떤 성격의 반복침해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표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규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XII

중국편



한·중 FTA 체결 경과

- 2015. 12. 20. : 한·중 FTA 발효
- 2015. 11. 30. :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 08. 31. :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 2015. 06. 01. : 한·중 FTA 정식서명
- 2015. 02. 25. : 한·중 FTA 가서명
- 2014. 11. 10. :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 2012. 05. 02. :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북경)

한·중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중 FTA 제1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규정(제1절), 실체규정(제2절), 집행규정(제10절), 경과 규정(제11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베른협약, 음반조약, WCT 및 WPPT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방송 신호 보호 기간 연장(중국:20년→50년),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강화, 기술적 조치·권리관리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집행규정은 권리자 추정 조항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원칙을 마련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케 하였다. 영화도촬, 인터넷상 반복 침해를 제재하고, 정보제공명령과 비밀 유지명령 권한을 규정하도록 했다.

중국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5.3조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창설된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 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 다.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베른협약)
- 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 자.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 차.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년)

The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s established in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including the following:

- (a) the TRIPS Agreement;
- (c)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the Berne Convention);
- (h)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 (i) the WIPO Copyright Treaty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CT");
- (j)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71);

01 의미

양 당사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조약들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02 설명

- 이 조항에서는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FTA에서 TRIPS 등과 연계하는 규정(“양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 협정에 따라 ...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 그러한 권리의 집행 조치를 규정한다.”)을 두어, TRIPS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FTA에는 이에 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조약들에 없는 새로운 규정도 있다.
 - 중국은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기준으로 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베른협약, TRIPS, WCT, WPPT, 음반협약을 비준·가입했다. 중국은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FTA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중국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5.2조 및 제15.4조

제15.2조

1. 양 당사국은 적절하고, 유효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이 장의 규정과 양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 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침해,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그 당사국이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의 실제적 규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제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15.4조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rticle 15.2

1. The Parties shall grant and ensure adequate, effective,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vide for measures for the enforcement of such rights against infringement thereof,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cceded to by both Parties.

2.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the Parties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Exemptions from this obligation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Articles 3 and 5 of the TRIPS Agreement and Article 4(2)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PPT”).

Article 15.4

Each Party may, but shall not be obliged to,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ts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01 의미

양 당사국은 자신들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에 따라,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당사자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입·비준한 TRIPS, 베른협약, WCT, WPPT, 로마협약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충분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베른협약, TRIPS, WCT에는 모두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한다. 이들 조약은 조약에서 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바, 중국 저작권법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 국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보호는 저작자만이 누릴 수 있다.

- 둘째, 저작권접권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TRIPS(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WPPT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존재한다. 이들 조약에서는 조약에서 부여한 보호에 국한해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중국)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넷째, 중국은 FTA상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TRIPS 플러스 요소일뿐만 아니라 WCT, WPPT에도 없는,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작자든 다른 권리자든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중국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권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체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03 복제권·배포권



제15.6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방식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 any manner or form.

01 의미

- 중국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 중국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에 의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FTA에 따라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진다. 둘째, 우리 저작자는 베른협약, TRIPS, WCT에 따라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지고, 우리 실연자는 로마협약과 TRIPS(금지권), WPPT(배타적인 권리)에 의해 복제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로마협약과 WPPT에 따라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로마협약(배타적인 권리)과 TRIPS(금지권)에 따라 복제권을 가진다. 첫째와 둘째 권리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FTA가 우선 적용될 것이다.
- 일부 조약에서는 배포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하고(WCT),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WPPT). 중국은 이들 조약에 따라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체약국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조약에서 금지권을 부여하더라도 체약국이 이를 배타적 권리로 변경할 수도 있다.
- 복제란 유형의 매체에 담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쇄, 복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종이책에 인쇄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디지털 방식)도 있다.
- 배포란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복제물이 유형의 앨범으로 거래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포권을 주장할 수 있다.

04 저작자의 권리



해당 조항 없음

01 의미

중국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 WCT에 의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가지고, 번역권과 각색권을 포함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베른협약, TRIPS). 또한 방송권뿐만 아니라 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을 향유한다(WCT).
 - 베른협약과 TRIPS상 공중전달이란 저작물의 공연(생공연 및 녹음·녹화 공연)과 무선 방송을 말한다. WCT에서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했다. 첫째, 공중전달의 개념에 유선 송신도 포함시키고 있고, 둘째,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권리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즉 이용 제공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주문형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제공의 예로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이 있다.

05 실연자의 권리



제15.7조 제1항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01 의미

- 실연자는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중국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에 의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우리 실연자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실연자는 WPPT상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 실연자는 재산적 권리로서 로마협약, TRIPS, WPPT에 따라 여러 종류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실연자는 생실연(비고정 실연)의 경우와 고정 실연의 경우에 따라 다른 권리를 향유한다.
- 실연자는 생실연의 경우 고정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TRIPS, WPPT). 로마협약과 TRIPS에서는 권리의 성격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 반면 고정 실연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을 가지고(로마협약, TRIPS, WPPT), 배포권과 이용제공권(WPPT)도 가진다. 로마협약과 TRIPS에서는 복제권을 금지권으로 했으나, WPPT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변경했다. WPPT상으로 배포권과 이용제공권도 배타적인 권리이다. 실연자는 또한 실연이 담긴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FTA에서 특별히 이 보상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규정은 WPPT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바, 중국은 WPPT 규정 적용을 유보했고, FTA에서도 이 유보를 그대로 인정받았다.
- 실연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6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5.7조 제1항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01 의미

- 음반제작자는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중국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로마협약, TRIPS, WPPT에 의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이들 조약은 음반제작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복제권(로마협약, TRIPS, WPPT), 배포권(WPPT), 이용제공권(WPPT)을 가진다. 이들 권리는 모두 배타적인 권리이다.
- 음반제작자는 또한 상업용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로마협약, WPPT). FTA에서 특별히 이 보상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규정은 WPPT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바, 중국은 WPPT 규정 적용을 유보했고, FTA에서도 이 유보를 그대로 인정받았다.
- 음반제작자의 배포권과 이용제공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특히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다.

07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15.7조 제2항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Each Party shall provide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 (a) the re-broadcasting of their broadcasts;
- (b) the fixation of their broadcasts; and
- (c) the reproduction of fixations, made without their consent, of their broadcasts.

01 의미

중국은 우리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권, 고정권,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FTA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재방송권, 고정권, 복제권으로, 로마협약상 같은 성격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들 권리의 내용도 같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재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 방송을 의미한다.

08 보호 기간



제15.6조 제3항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기간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이 방송이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후 5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term of protection of broadcast shall not be less than 50 years after the taking place of a broadcasting, whether this broadcasting is transmitted by wire or over the air, including by cable or satellite.

01 의미

- 중국은 우리 방송사업자를 50년간 보호해야 한다.
- 중국은 FTA에 따라, 자신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 WCT, WPPT에 의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에게 이들 조약들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베른협약, TRIPS, WCT).
- 실연자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실연이나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와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다. WPPT는 계산 기준을 고정으로 단일화했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제작(고정)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고정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간이다(로마협약). TRIPS와 WPPT는 그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늘렸다. WPPT는 계산 기준을 발행 또는 고정으로 변경했다.
- FTA는 방송사업자에 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기간은 방송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이다.

09 기술조치



제15.8조

1. 각 당사국은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네트워크에서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への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법규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든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규와 제15.3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which the person concerned carries out in the knowledge,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such person is pursuing that objectiv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technological measure means any technology, device or component that, in the normal course of its operation, is designed to prevent or restrict acts, in respect of works or performance or phonogram, which are not authorised by the right holder of any copyright or any right related to copyright as provided for by each Party's legislation, including access control measures that prevent or restrict access to works made available in the network.
3. Each Party may provide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s 1 and 2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5.3.

01 의미

중국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기술조치란 저작권자나 저작권접권자가 자기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하는 것으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이런 장치나 수단의 예로는 스크램블링이나 암호화 기술이 있다.
 - 기술조치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는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므로, 기술조치란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수단을 의미한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에 방송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조에서는 기술조치의 정의에서 방송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방송은 기술조치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이런 기술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고(접근 통제 기술조치), 다른 하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이용 통제 기술조치). FTA에서 말하는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
- 기술조치 그 자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비침해적 이용’에 대해서 기술조치 보호를 무조건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FTA에서는 국내법으로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FTA에서는 이와 같은 금지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중국)에게 강제할 뿐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보호 방법으로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고,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양자를 모두 금지할 수도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0 권리관리정보



제15.9조

1. 각 당사국은 이 장 또는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권리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권한 없이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실연,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2.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나 그 밖의 어떠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knowing, or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right covered by this Chapter or the Berne Convention, WCT and WPPT:

(a) to remove or alter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or

(b) to communicat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works, copies of works, performance, copies of fixed performance or phonograms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2.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provided by right holders which identifies the work or performance or phonogram referred to in

this Chapter, the author or any other right holder,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work or performance or phonogram,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3. Paragraph 2 shall apply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a copy of,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work or performance or phonogram referred to in this Chapter.

01 의미

중국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실연, 음반)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자나 해당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권리관리(DRM)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한 데 묶인 것이다.
 - 권리관리정보에 관해서는 WCT와 WPP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WPPT는 실연과 음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므로, 권리관리정보란 실연과 음반과 관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FTA에서는 보호대상에 방송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조항에서는 권리관리정보의 정의에서 방송과 관련한 정보를 제외하고 있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첫째,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고 그 권리관리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FTA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중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국에게 국내법상 재량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수단으로는 잠정조치, 폐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 수단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침해물의 폐기 등 형사 제재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11 권리자 추정



제15.23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in the usual manner is the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as designated.

01 의미

중국은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에 통상적으로 해당 성명·명칭이 표시되는 경우 민사, 행정, 형사 절차상 그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베른협약에도 입증 편의를 위한 추정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저작자 추정에 그친 것이다. FTA에서는 베른협약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추정의 이익 주체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있다. 둘째,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성명·명칭이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단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대상의 권리자로 추정된다. 저작자 추정과 저작(재산)권자 추정은 크게 다르다. 전자는 저작권의 최초 귀속자라는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실제 저작(재산)권자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추정이란 상대방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이 가능한 추정을 말한다. 추정의 이익은 민사 절차에서 누릴 수 있다. 권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2 손해배상



제15.24조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호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법 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 측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i)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or

(ii) the profits of the infringer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which may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and

(b) in determining damag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may consider, inter alia, the value of the infringed goods or services, measured by the market price, the suggested retail price, or other legitimate measure of value submitted by the right holder.

3.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each Party shall, at least with respect to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in case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stablish or maintain pre-established damages, which shall be available on the election of the right holder. Such pre-established damages shall be in an amount sufficient to constitut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and to compensate fully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01 의미

- 중국은 민사 절차상 우리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중국은 권리자의 선택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손해배상은 대표적인 민사 구제 수단이다. FTA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에 갈음해 가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원 등 사법당국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침해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시장가격으로 측정된 가치, 권장 소매가 또는 권리자가 제시하는 가치 측정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 FTA에서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으나 이들 특칙은 모두 실손해배상 제도의 틀 안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무형의 재산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수집이 곤란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FTA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손해액으로 정해놓고(예를 들어, 저작물 1건당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다.) 권리자가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보전하기에 충분하고, 장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이어야 한다. 권리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통상적인 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에 갈음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FTA에서는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법정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방송/방송사업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13 침해물의 압류·폐기



제15.24조

5.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및 그 지배적인 용도가 침해 물품의 생성에 있었던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적절한 상황에서 폐기된다.
 - 나. 그 사법 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allegedly infringing goods and of any materials and implements the predominant use of which has been in the creation of infringing good and, at least for trademark counterfeiting,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6.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at the right holder's request, goods that have been found to be pirated or counterfeit shall be destroyed, under appropriate circumstances;
 - (b)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predominantly used in the manufacture or creation of such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be,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promptly destroyed o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ze the risks of further infringements;

01 의미

- 중국은 민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중국은 민사 절차상 침해가 판정된 상품을 폐기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폐기나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TRIPS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판명된 경우 침해 상품이나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제도는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처분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는 처분의 일종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처분이나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FTA는 TRIPS 플러스 요소로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 TRIPS는 사법당국에 처분이나 폐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협정상의 의무로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재량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FTA에서는 침해 상품으로 판정되면 반드시 폐기하는 국내법 규정을 두도록 하고,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의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폐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TRIPS에서는 침해 상품이나 재료와 도구의 처분과 폐기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FTA에서는 침해 상품의 경우 폐기를 의무화하고, 재료와 도구의 경우(침해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에 한한다.) 폐기나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사법 절차상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압류할 수 있다면 민사 구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FTA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침해 의심 상품이나 이런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TRIPS 플러스에 해당한다.

14 정보청구권



제15.24조, 제15.29조

제15.24조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침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사법 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 영업비밀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5.29조

각 당사국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관계 당국 또는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Article 15.24

7.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when it deem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 to order the infringer to provide any information relevant with the infringement activities, to the judicial authorities, and when necessary and without prejudicing trade secrets, to the right holder.

Article 15.29

Each Party may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 enabling relevant authorities or copyright owners who have given effective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to obtain expeditiously from a service provider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identifying the alleged infringer.

01 의미

- 중국은 민사 절차상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중국은 침해 의심을 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서비스제공자가 관계 당국이나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02 설명

- 무형의 재산으로서 저작권/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에 관한 정보는 통상적인 민사 절차로는 획득하기 어렵다. FTA에서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이른바 정보청구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권리자의 정보청구권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침해자가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FTA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침해자에게 이런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FTA에서는 이런 정보를 단지 '침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하고 있으나, 이런 정보에는 침해에 관여한 사람에 관한 정보와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특히 침해 의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민사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FTA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FTA에서 이 제도는 당사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당사국들 간에 이에 관한 행정·사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15 비밀유지명령



제15.24조 제8항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그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on parties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their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a proceeding.

01 의미

중국은 민사 절차상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내리진 사법명령 위반에 대해 제재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민사 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에는 당사자들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당사자들은 이런 비밀정보를 소송상 공격이나 방어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FTA에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민사 절차상 생산되거나 주고받은 비밀정보를 보호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고, 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6 잠정조치



제15.25조

1.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권한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그 사법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피고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where appropriate, to act on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expeditiously.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et at a level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and so as not to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such procedures.

01 의미

중국은 일방적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FTA에서는 협정상의 의무로 사법당국이 일방적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 잠정조치란 상대방의 진술을 듣지 않고 내려지는, 사법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을 말한다.
 - 일방적 잠정조치는 통상적인 잠정조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FTA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TRIPS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FTA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RIPS는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잠정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 FTA에서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건에 대해서 역시 침묵하고 있으나, TRIPS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TRIPS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절차의 지연으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일방적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FTA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7 형사 처벌



제15.27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 받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1.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2.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willful unauthorized copy of a cinematographic work, or any part thereof, from a performance in a movie theater on a commercial scale.
3. Each Party shall provide:
 - (a) penalties that include sentences of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consistent with a policy of removing the infringer's monetary incentive;

01 의미

- 중국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은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형사 처벌은 고의로,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장래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 FTA는 또한 영화상영관에서 영상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침해물의 압수·몰수



제15.27조 제3항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나. 그 사법 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다. 그 사법 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또는 폐기, 그리고
-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b)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y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any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offense, and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c)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 (i)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all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d
- (ii)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predominately used in the creation of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forfeiture and destruction under this subparagraph shall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kind to the defendant.

01 의미

- 중국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중국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절차상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와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TRIPS에도 침해 상품의 압수와 몰수/폐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상 이 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여 회원국과 사법당국에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FTA에서는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고 있다.
 - 당사국은 사법당국에게 압수와 몰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압수 대상은 침해 의심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 관련 증거 서류, 침해로 인해 얻은 자산이다.
 - 몰수와 폐기 대상은 침해 상품, 침해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이다. 몰수와 폐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19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15.28조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Each Party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curtail repetitive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or other digital network.

01 의미

중국은 인터넷상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디지털 환경에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해 FTA에서는 당사국(중국)에 반복침해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정책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 FTA에서는 어떤 성격의 반복침해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표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규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XIV

베트남편



한·베트남 FTA 체결 경과

- 2015. 12. 20. : 한·베트남 FTA 발효
- 2015. 11. 30. :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 05. 05. :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 2015. 03. 28. : 한·베트남 FTA 가서명
- 2014. 12. 10. : 협상 타결 선언(서울)
- 2012. 08. 06. :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선언(하노이)

한·베트남 FTA의 특징

- 저작권 분야는 한·베트남 FTA 제12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규정(제12.1조~제12.4절), 실체규정(제12.8조), 집행규정(제12.9조), 협력 규정(제12.10조) 정의규정(제12.11조)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WCT 및 WPPT의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실체규정에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복제권·방송보상청구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암호화된 위성신호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 집행규정에는 권리자 추정 조항과 법정 비용·수수료, 변호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 의무 조항 및 법정손해방제도를 규정하였다. 또한, 인터넷상 반복되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베트남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가입 여부	○	○	-	-	○	-	-

01 국제조약 가입·이행 의무



제12.3조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른 지식재산 협정 하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협정 하에서 양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가.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 나. 「WIPO 실연·음반 조약」(1996년)
- 한쪽 당사국이 위의 협정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협정의 가입과 이행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Each Party affirms it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derogate from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that the Parties have to each other under such agreements.
2. Each Party wi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ratify or accede to the following agreements:
 - (a)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PO”) Copyright Treaty (1996); and
 - (b)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When a Party intends to accede to any of the treaties above, it may seek cooperation from the other Party to support its accession to and implementation of such treaties.

01 의미

양 당사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TRIPS 및 다른 저작권/저작인접권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02 설명

- 제12.3조 제1항은 FTA 지식재산권 챕터가 TRIPS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1994년 체결된 TRIPS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조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무척 기여했다. 그럼에도, FTA에서 TRIPS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규정(예를 들어, FTA에서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FTA상의 의무와는 단절된, 단순한 확인에 그치고 있다.

- 베트남은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기준으로 TRIPS뿐만 아니라, 베른협약, 로마협약을 비준·가입했다. 베트남은 비준이나 가입으로 이들 조약의 구속을 받았다고 동의했으므로, FTA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들 조약에서 정한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12.3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은 WCT와 WPPT를 비준·가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아직 이들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을 위해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약 가입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약 이행을 위한 법적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로, 우리 국민은 베트남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02 내국민대우



제12.2조 및 제12.4조

제12.2조

1. 각 당사국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향유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그러한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혜택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제12.4조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rticle 12.2

1.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effective, and non-discriminator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enforcement of such rights.
2.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 derived from such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and 5 of the TRIPS Agreement.

Article 12.4

Each Party may, but shall not be obliged to,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such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01 의미

베트남은 TRIPS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02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는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베트남이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베트남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베트남은 FTA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해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내용의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이 내국민대우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FTA에는 베른협약, TRIPS에 있는 규정과 같은 취지의 유사한 규정도 있고, 이들 조약에도 없는 규정도 있다. 이런 규정들은 모두 TRIPS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런 규정들에 적용된다.

- 둘째, FTA에서는 당사국(베트남)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한편, 베트남이 비준·가입한 베른협약, TRIPS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는바, 베트남은 이들 조약상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베트남의 이들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FTA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조약 위반이 FTA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권리의 향유와 행사, 집행 등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권리의 발생과 향유, 권리의 취득과 유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로 인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다. FTA 지식재산권 챗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둔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상호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보호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국제적 보호가 완성되어간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 FTA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FTA에 권리의 귀속, 내용 및 제한, 행사 및 이전, 집행(민사 구제, 형사 처벌) 등 실제규정을 모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약과 연계(예를 들어, "특정 조약을 이행/준수해야 한다." 또는 "TRIPS에 따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하고 해당 조약에 없는 플러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베트남과의 FTA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 이 FTA에서는 단지 '충분하고,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만을 명시할 뿐으로, TRIPS 등과 연계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의 FTA상의 의무는 FTA 지식재산권 챗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03 복제권·배포권



제12.8조 제1항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방식과 형태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 any manner or form.

01 의미

베트남은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우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복제권은 배타적인 것으로, 해당 권리자만이 저작물, 실연, 음반의 이용을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다.
 - 배타적 권리의 대상인 이용형태는 복제로서, 그것이 유형물에 고정되든 디지털 파일로 고정되든 묻지 않는다. 이런 복제물을 통해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을 지각하게 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 FTA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속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복제도 포함한다고 본다. 아날로그 복제는 인쇄물이나 필름에서 보듯이 영속적인 것이지만, 디지털 복제는 일시적인 것도 있다. 일시적 복제는 컴퓨터 램(RAM)이나 비디오 버퍼와 같은 곳에서 이뤄진다. 기술적으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또는 웹사이트 접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를 이용한 영업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4 실연자의 권리



제12.8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ers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use phonograms already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are not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but must pay remunerations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01 의미

베트남은 우리 실연자에게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실연이 고정된 상업용 음반이 방송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실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성격은 보상청구권으로, 실연자는 실연이 담긴 상업용 음반의 방송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

05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2.8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ers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use phonograms already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are not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but must pay remunerations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01 의미

베트남은 우리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상업용 음반이 방송에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음반제작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성격은 보상청구권으로, 음반제작자는 실연이 담긴 상업용 음반의 방송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

06 집중관리단체



제12.8조

3. 양 당사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집중관리 단체들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우수한 관리 관행의 문맥에서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 fo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order to ensure an effective management of the rights entrusted to them, and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collected remunerations,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utilization of the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in a context of transparency and good management practices,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4.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rrangements between their respective collecting societies for the purposes of mutually ensuring easier access to and delivery of content between the Parties, as well as ensuring mutual transfer of royalties for use of the Parties' works or other copyright-protected subject matters.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improve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of the task of their respective collecting societies.

01 의미

베트남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장려해야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2 설명

-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해 긴요한 조직이다. 이런 단체는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증가할수록 그 필요성이 커진다. 이 조항은 단체의 존재/활동이 미약한 국가에게 설립 장려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FTA에서는 저작물의 유통을 위해, 사용료의 송금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설립을 장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단체의 투명한 경영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사용료 분배를 위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07 집행 일반



제12.9조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특히 동 협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집행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8.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민사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국의 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viding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set out in the TRIP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Articles 41 through 61 thereof.
8. Each Party shall endeavor, as necessary, to improve its judicial system with a view to providing effective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01 의미

양 당사국은 TRIPS상 집행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2 설명

이 조항에서는 양 당사국이 TRIPS 집행규정(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을 국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조항이 양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FTA에서는 당사국(베트남)에게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08 권리자 추정



제12.9조 제2항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과 관련된 민사, 형사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criminal, and if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in the usual manner is the right holder in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as designated.

01 의미

베트남은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에 통상적으로 해당 성명·명칭이 표시되는 경우 민사, 행정, 형사 절차상 그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베른협약에도 입증 편의를 위한 추정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저작자 추정에 그친 것이다. FTA에서는 베른협약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추정의 이익 주체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있다. 둘째,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성명·명칭이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단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대상의 권리자로 추정된다. 저작자 추정과 저작(재산)권자 추정은 크게 다르다. 전자는 저작권의 최초 귀속자라는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실제 저작(재산)권자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추정이란 상대방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이 가능한 추정을 말한다. 추정의 이익은 민사 절차에서 누릴 수 있다. 권리자에게는 매우 긴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09 손해배상



제12.9조

3.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설정된다.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of that pers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an i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engages in infringing activity.
5.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each Party shall, at least with respect to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stablish or maintain pre-established damages. The pre-established damages shall be set out in an amount sufficient to compensate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01 의미

- 베트남은 민사 절차상 우리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베트남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 손해배상은 대표적인 민사 구제 수단이다. FTA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 FTA에서는 위와 같이 실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의 재산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수집이 곤란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FTA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손해액으로 정해놓고(예를 들어, 저작물 1건당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다.) 권리자가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보전하기에 충분하고, 장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이어야 한다. 권리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통상적인 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에 갈음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0 침해물의 압류·폐기



제12.9조 제6항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allegedly infringing goods, materials, and implements relevant to the act of infringement, and, at least for trademark counterfeiting,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01 의미

베트남은 민사 절차상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FTA에는 침해 상품이나 침해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처분이나 폐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사법 절차상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침해 의심 상품이나 이런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TRIPS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11 비밀유지명령



제12.9조 제7항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relation to civi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on parties, their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a proceeding.

01 의미

베트남은 민사 절차상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내려진 사법명령 위반에 대해 제재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민사 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에는 당사자들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당사자들은 이런 비밀정보를 소송상 공격이나 방어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FTA에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민사 절차상 생성되거나 주고받은 비밀정보를 보호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고, 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2 잠정조치



제12.9조

9.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사법당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 절차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0.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on request.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also have the authority to adopt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where appropriate, in particular, where any delay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right holder, or where there is demonstrable risk of evidence being destroyed.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et at a level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and so as not to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such procedures.

01 의미

- 베트남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베트남은 일방적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02 설명

- 잠정조치는 신청에 의해 사법당국이 내리는 잠정명령을 말한다. 잠정조치는 침해의 예방이나 침해의 정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FTA에서는 잠정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FTA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베트남이 비준·가입하고 있는 TRIPS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는 별도의 구제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FTA에서는 잠정조치가 적어도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FTA에서는 협정상의 의무로 사법당국이 일방적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 잠정조치란 상대방의 진술을 듣지 않고 내려지는, 사법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을 말한다.
 - FTA에서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건에 대해서 역시 침묵하고 있으나, TRIPS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TRIPS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절차의 지연으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일방적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잠정조치는 사법당국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FTA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법당국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잠정조치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3 형사 처벌



제12.9조 제14항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여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에 합치되게, 이용 가능한 구제는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Remedies available shall include imprisonment and/or monetary fine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consistently with the level of penalties applied for crimes of a corresponding gravity.

01 의미

베트남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02 설명

형사 처벌은 고의로,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장래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TRIPS 플러스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FTA상의 의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4 인터넷상 반복침해 조치



제12.9조 제15항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provide measures to curtail repeated copyright and related 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01 의미

베트남은 인터넷상 반복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2 설명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디지털 환경에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해 FTA에서는 당사국(베트남)에 반복침해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해당 정책 채택을 의무 사항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노력'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정부와 점검할 수 있다.
 - FTA에서는 어떤 성격의 반복침해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표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규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15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제12.8조 제5항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 조치를 제공한다.

- 가.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또는 재배포하는 행위

Each Party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or crimi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following actions:

- (a) to manufacture, assemble, modify, import, export, sell, lease, or otherwise distribute a device or system,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that the device or system is primarily of assistance in decoding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such signal; and
- (b) willfully to receive, or further distribute, a program-carrying signal that originated as an encrypted satellite signal knowing that it has been decod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01 의미

베트남은 암호화된 위성신호의 복호화용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 무단으로 복호화된 신호를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에 대해 행정 또는 형사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02 설명

- 방송사업자는 신호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위성신호와 케이블신호는 암호화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신호의 도용은 이 분야 산업을 크게 위협한다. FTA는 각종 신호 도용과 도용에 사용되는 장치나 시스템의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대상 신호는 암호화된 위성신호에 국한한다.
- FTA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나 시스템을 제작, 수정, 수출입, 판매, 대여, 기타 배포하는 것이다. 둘째, 신호가 신호 배포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이다. 이런 금지행위는 행정 또는 형사 제재 대상이 된다.

03



용어집



▶ 3단계 테스트

저작권자의 권리의 제한 또는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된 한계를 말함. 베른협약은 '첫째, 복제권의 제한이나 예외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져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3단계 테스트 기준을 회원국의 개별 입법으로 위임함

▶ 고의적 침해

침해자가 저작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침해행위를 행하는 경우 고의침해에 해당됨

▶ 고정권

음악 또는 방송 등 무체물인 저작물을 매개체에 고정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들어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권리, 연주회의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함

▶ 공정이용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즉,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 함. 공정이용의 기준이 되는 것이 3단계 테스트임

▶ 국경조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그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내국민대우 원칙

국제협약의 보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서 베른협약에 의하면 모든 가맹국은 타 가맹국의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의무가 있음. 즉, 조약 동맹국 국민은 저작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

▶ 민사적 구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법정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음

▶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무선 통신에 의한 방송뿐만 아니라 유선 통신에 의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배포권

저작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범죄수익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이익을 의미함

▶ 법정손해배상

실손해 배상의 원칙하에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미국법상의 손해배상 제도. 한·미 FTA 타결로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제125조의2)에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

▶ 불법복제

권리자의 동의없이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을 복제하는 것을 말함

▶ 사진저작물

빛이나 기타 방사선에 감응하는 표면 위에 제작된 실물의 영상을 말하며, 그것이 대상의 구성, 선택 또는 포착방법 등에 있어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 상호주의

권리나 편의 등에 있어서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하여 인정해준다는 원칙

▶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의 운영을 감독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기구.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되며 창설됨.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로 구성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WCT ; WIPO Copyright Treaty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기된 저작권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

▶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 산업재산권과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함.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1979년에 가입. 2019년 현재 WIPO 회원국은 192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

WPPT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기된 저작권자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저작물의 실연과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

▶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피침해자에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배상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시청각실연에 관한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저작물의 실연에 기여하는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체결

▶ 실연

저작물을 연기, 낭송, 노래, 춤 또는 상영 등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로마협약; Rome Convention

저작권자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 저작물의 실연과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체결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최초의 협약으로, 문학·예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

▶ 실연자

일반적으로 민간전송 저작물을 포함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을 연기, 노래, 구술, 낭송 또는 기타 실연하는 사람으로서, 배우, 가수, 연주가, 무용가 등을 의미함.

▶ 음반

음(음성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저작권법 제2조 5호). 실연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대상이며 실연상의 소리나 기타의 소리를 오로지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함. 따라서 디스크나 테이프에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반이 됨. 그러나 소리와 함께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는 음반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이 됨.

▶ OSP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해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함

▶ 입증책임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 이는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잠정조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단시간내에 침해행위를 금지 시키는 조치를 내릴수 있는 법원의 조치임

▶ 저작권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함.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함. 이들을 매개로 저작자와 일반 공중이 연결되어 저작물이 전달, 유통되므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접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방송사업자), 공연권 등을 가짐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짐

▶ TRIPS 플러스 규정

TRIPS 협정의 경우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 최소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 기준을 넘어 더 많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집필 |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장

감수 |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장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상팀장

최혜윤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상팀 선임연구원

유정희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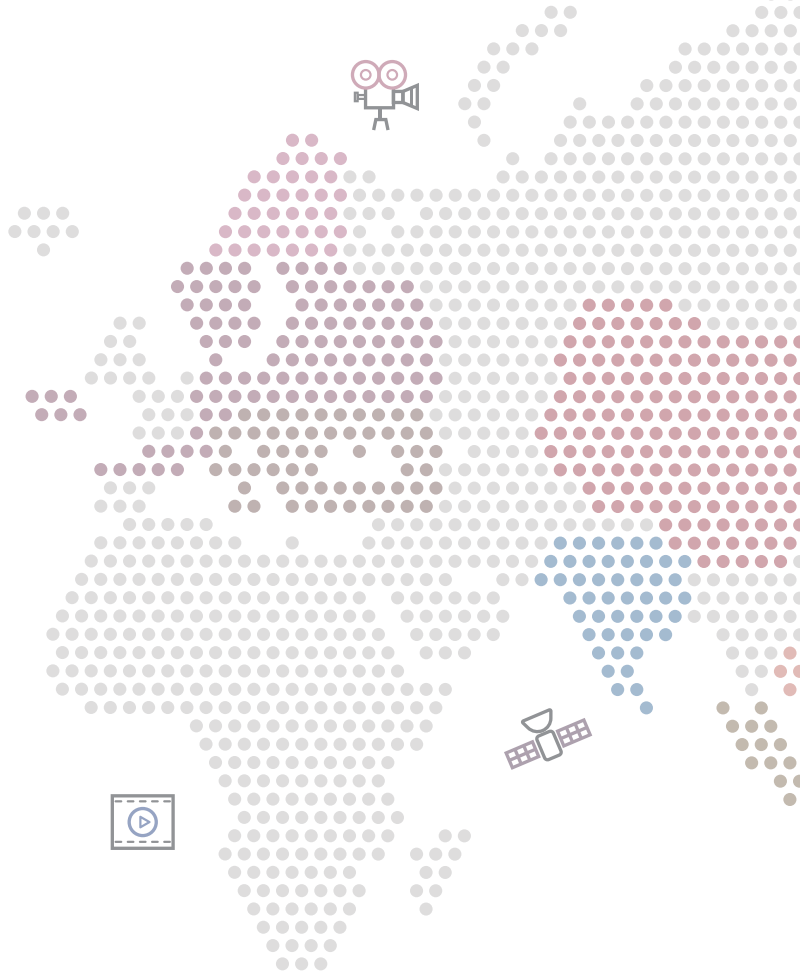
자문위원 | 진달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법무부 사무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이정숙 KOTRA 해외지재권 실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중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FREE TRADE AGREEMENT